

2007년
증권제도동향

2008.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원 이승진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서 언

금융의 통합화·겸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금융상품간 및 금융기관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선진국들은 규제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개선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규제차익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통폐합(integr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호주의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그리고 일본의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8월 마침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투자자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위규정의 입안과정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가 관철되어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상장요건의 유연화 및 퇴출강화 등을 통해 진입 및 퇴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일임형 랩계좌의 집합주문을 허용하였다.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10년국채선물거래와 주식선물거래를 도입하였다.

금융투자업 분야에서는 상장·공모증권회사의 정기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중복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결산서류의 정기적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에 대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

였으며, 간접투자기구가 보험설계사 등에게 취득권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를 확대하였고, 자산운용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와 그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감위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도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선물업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를 허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경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이승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주혜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8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도 성

< 목 차 >

I. 자본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51
3. 선물·옵션시장	60
4. 증권예탁·결제	91
5. 기업공시	104
II. 금융투자업	111
1. 증권회사	111
2. 자산운용회사	138
3. 선물회사	153
4. 종합금융회사	159
5. 신탁회사	162
6. 금융투자회사	164
III. 증권행정감독	169
1. 법적규제기관	169
2. 자율규제기관	182

IV. 상장법인	185
1. 기업경영감시	185
2. 지원·관리제도	186
V. 기업구조조정	187
1. 일반기업	187
2. 금융기관	190
VI. 기타	206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1
2. 증권거래법	225
3. 증권거래법 시행령	227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228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231
6. 선물거래법	232
7. 선물거래법 시행령	234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4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5
10. 금융지주회사법	236
1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37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9
1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41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2
1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243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45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46

18.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개정안)	247
1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개정안)	249
20. 상법 회사편(개정안)	250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254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54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56
3. 증권업 감독규정	256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69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76
6.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82
7. 행정지도 운용규칙	286
8. 선물업 감독규정	287
9.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90
10. 신탁업 감독규정	291
11.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293
12. 은행업 감독규정	295
13.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97
1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03

15.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312
16.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313
17.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14
18.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15
19.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316
20.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318
21. 전자금융 감독규정	320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321
1. 정관	321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25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41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46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1
7. 공정공시 운영기준	352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353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53
10.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7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61
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67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73
1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76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377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6
17. 선물시장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390
18.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91
19.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94
20. 시장감시규정	408
2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408
IV. 증권업협회 규정	412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412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8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20
4.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425
5.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426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428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28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29
3.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431
4.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31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432
6.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433
7.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34
8.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434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436
10.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437
11.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438
1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439
1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441

I. 자본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개념 명확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9조, 68조 : 2007/5/16 개정·시행)

—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정의

- 기존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해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상의 자회사 범위와 차이가 나는 경우, 공시와 자회사 관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음

* 종전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 :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유가증권예탁증서의 전매가능성 여부 명확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조 : 2007/5/16 개정·시행)

— 유가증권예탁증서도 그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전매가능성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

- 기존에는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예탁증서가 전매가능성 기준에 포함·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전매가능성 기준 : 유가증권발행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전매가능성) 유가증권의 모집과 동일하게 간주

-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4조 3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시장조성 이후 14일내 시장조성채권 변경금지를 호가를 제시한 당일에 한해 변경을 금지(호가변경은 가능)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 종목변경시 증권업협회를 통해 사전(직전영업일)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 폐지

— 호가를 제시한 채권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에는 해당일 1일간은 호가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전량 매매체결시 호가 재제시 의무 삭제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4조 2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채권보유 및 확보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전량체결 된 이후 60분 이내에 체결된 채권과 동일한 종목에 대한 호가 재제시 의무 면제

-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 축소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5 4조 4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매매체결이 용이하도록 채권전문딜러의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를 채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축소
 - 거액 및 소액 투자자에 따른 호가수익률 범위의 차이를 폐지하고 국채는 30bp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이내로 축소

나. 유통시장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 176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와 대상의 확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
 - 증권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공개매수신고 관련 공휴일의 범위 확대 (증권거래법 21조의2 2항 : 2007/3/29 개정, 6/29 시행)
 - 공개매수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이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그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불공정거래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3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시장에 주식선물 등 새로운 선물상품을 신규상장함에 따라, 기존 선물옵션에 적용되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식선물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선물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 2007/12/28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을 확대
 - 종래에는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 가능한 해외거래소가 지정되었음

- 신용거래시 연속 매매의 허용 (증권업 감독규정 5-10조 5항 : 2007/1/25 개정, 2/1 시행)
 - 투자자가 보통거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통해서도 연속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식을 매도(T일)한 경우 매도결제일(T+2일) 고객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정된 현금도 신용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에 포함함

-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5-33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대고객RP 거래대상유가증권을 공모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채권,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까지 확대
 -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범위를 시장성(환금성 확보)과 적정성(담보가치의 일일평가 및 예탁관리)이 확보되어 고객보호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유가증권까지 확대

-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5-26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
 - RP거래 수요가 있고 자금운용여력이 있는 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기관간 RP거래 활성화를 도모

- RP거래의 정의 변경 (증권업 감독규정 5-26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수(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도(또는 매수)하는 거래를 환매조건부매매로 정의
 - 기관간 RP 거래대상에 채권 이외에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투자자의 보유 유가증권 활용도 제고 및 자금조달 수단의 확대 도모

○ 외국인 매매거래제도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7-8조, 7-10조, 7-15조 : 2007/12/28 개정·시행)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 국내거래소와 외국거래소에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
- 동일인이 운영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국제예탁결제기구의 명의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의 국내 재예탁 의무면제

- 외국인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할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이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면제

-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계좌(통합계좌)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고객(기관 및 개인)을 위하여 투자국의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등에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로 고객은 이를 통해 유가증권 및 자금을 관리(Omnibus Account)

- 대상채권은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취득한도 및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불편의 해소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도모

○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6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로 상이한 시장조성 채권의 구분을 없애고 종목 수도 기존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

- 다만, 호가가 일부 채권(국채, 통안증권 등)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해서는 각각 1종목 이상의 호가를 반드시 제시

— 종목별 최소호가수량도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 구분 없이 1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 지속적인 호가제시의무도 연중에는 매매일의 2/3 이상, 일중에는 매매 시간(09:00~15:00)의 2/3 이상으로 변경

○ 신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에 대한 보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3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이 신규로 허용되는 장외거래를 실행한 경우 동 거래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외국인 취득한도의 적절한 관리

○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의 시장간 이동시 신고의무 부과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3조, 7-5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복수상장 된 국내기업의 유가증권을 국내시장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시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복수상장되는 유가증권 종목별로 외국예탁기관 등이 투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계산기준 개선(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1조 : 2007/12/28 개정·시행)

—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

- 종래에는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24개 종목에 대해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도를 계산하여 장내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 상대매매 : 매수자 및 매도자 쌍방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내용(유가증권의 종목·수량·가격 등)을 거래소의 대량매매시스템(K-Blox)을 통해 행하는 매매거래

○ 투자등록이 면제된 통합계좌 이용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13조 : 2007/12/28 개정·시행)

— 국제예탁결제기구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을 국내 예탁원(KSD)을 통해 감독원장에게 보고(월별)하도록 함

-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예탁원(KSD)에 예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국제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을 면제함에 따라, 외국환 관리 및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파악을 위한 채권거래 내역 파악수단
- 매수대금 미납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의 의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9조 : 2007/1/19 개정, 5/1 시행)
-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함
 -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0일간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를 의무화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징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매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의 범위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및 신용거래를 통해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9조 1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다른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증권업과 관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위탁자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 징수를 의무화함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내역에 대한 회원간 통보의무의 폐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99조 1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증권회사간 정보공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미수 위탁자에 대한 다른 회원으로의 통보의무를 삭제함

-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07/7/20 개정, 9/3 시행)
 -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 (106조)
 - 시장감시규정은 기존의 ‘이상급등종목’을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원화
 - * 투자위험종목 : 기존 이상급등종목 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금액 전액을 위탁증거금(현금)으로 징수 (89조 5항)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가수요를 방지
 -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대용증권 불인정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 투자위험종목 및 환금성 제한에 따라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을 대용증권에서 제외 (88조 2항)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경우로서 시장감시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가능 (107조)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07/7/20 개정, 2007/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다수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로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조 1항)

— 집합주문의 공정한 배분 등을 위해 집합주문 호가에 대한 주문·매매체결·배분 내역 등의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94조 2항)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 강화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2 2항, 20조의6 1항 : 2007/12/21 개정, 2008/1/2 시행)

— 유동성공급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자격요건을 상장규정에서 주권과 동일하게 업무규정으로 이관하여, 유동성공급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자격에서 거래전문회원을 제외하여 결제회원으로 한정

구 분		기 준(상장규정)	개 정(업무규정)
주 권		자기매매 허가 결제회원	
상 장 지 수 펀 드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주권	지정판매회사	자기매매 허가 결 제회원 중 지정판 매회사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지정판매회사 중 회원증권회사	
주식워런트증권		자기매매 증권거래회원	자기매매 허가 결 제회원 중 장외과 생금융상품거래 인 가증권회사

-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제재,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경과할 것

— 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유동성공급자(LP)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규정에서 업무규정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제도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6조 3항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에 코스닥상장주권이 포함됨에 따라, 동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또는 중단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 코스닥상장주권 :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30개 종목)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 주식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공매도 가격규제의 예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선물의 차익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공매도의 가격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호가공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6조 3항 2호 단서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매매거래시간 이전의 호가접수기간(08:00~09:00)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만 공표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기간중에 호가공표방법과 동일

- 매매체결지연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요건의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0조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종래에는 매매체결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종목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 ①매매체결이 10분 이상 지연되고, 그 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종목, ②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되는 종목으로 변경

- 매매거래 정지요건 변경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근거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종래에는 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가 3일 이상이었으나,
 - 매매체결지연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이 3일 이상으로 변경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의2 : 2007/8/28 개정, 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다수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로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업 감독규정상의 외국인투자자집단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

- 공모도호가의 가격제한 규정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조 : 2007/8/28 개정, 9/17 시행)

- 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시가가 전일종가(기준가격)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전일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도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전일종가가 10,000원이고 당일의 시가가 10,000원으로 결정된 경우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도호가 제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사유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5 : 2007/8/28 개정, 9/3 시행)
 - 회원이 상장주식수 전체를 보유한 경우 매수호가 제출을 면제함
 - 심외가격(deep OTM)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회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이론가격 등을 감안하여 5원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시 가격범위 보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6 : 2007/8/28 개정, 9/3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LP호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제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된 상태에서 다른 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일정범위 이내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출

- 외국인의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의 허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2조~53조 : 2007/8/28 개정, 9/17 시행)
 - 외국인한도 소진종목에 대한 외국인간 매매거래시 대량매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가능
 - 외국인간 바스켓매매시 한도 소진종목을 포함한 매매의 허용

- 이상급등종목의 관할규정이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3조~135조 : 2007/8/28 개정, 9/3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관련내용 삭제
 -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종목 및 당해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외국주(외국주식예탁증서) 매매제도 보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2007/8/28 개정, 9/3 시행)
 - 신규상장시 외국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 가격이 공모가의 50% 미만인 경우 외국시장에서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

- 주가지수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 제한기간 폐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8 3호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금지기간(만기일 1월 전 이후)을 폐지함
 - 개별 주권 및 바스켓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존과 같이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기간을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평가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9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성공급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공표함
 - 5분내 의무 호가 이행도, 호가스프레드(Tick) 크기, 자발호가 비중, 호가수량, 관계법규 준수 여부

-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회원의 공정가격 산정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6 6항~7항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내부절차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기준이 되는 내재변동성 산출·변경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회원이 내재변동성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행후 5거래일 내에 거래소에 통보
 -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의 매도와 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일별로 그 변동현황을 공표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8 1호의2~3, 31조의5 3호·3호의2, 31조의7 4호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 유동성공급회원이 전부 보유(전부 매출)한 경우에는 매수호가(매도호가)의 제출을 제한함
 - 기존 호가제출 면제에서 호가제출 금지로 강화
 - 유동성공급회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일방호가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타방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 저가 종목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6 3항, 31조의7 3호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호가가격단위(1Tick)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예 : 2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초저가인 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 종목의 경우,
 - 1Tick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매도·매수 일방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당해 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 호가와 의 스프레드가 1Tick인 경우 양방향호가 제출의 예외로 인정됨을 명시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10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상장지수펀드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회원을 교체해야 하는 기준을 상장규정 시행세칙 48조에서 이관하여 규정

- 유동성공급업무 책임자 지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3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업무 담당 직원을 정한 경우 주권의 경우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함

- 자기주식 매매시 매매수량등의 신청기한 연장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7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14 시행)
 - 전일 16시까지 신청 → " 18시까지 "

-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관련 문구 및 표현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5조 1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주식회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함

- 현물출자를 동반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07/4/27 개정, 4/30 시행)
 - 현물출자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권 변동시 당해 신주발행에 대한 매각을 제한함 (46조 5항)
 - 현물출자로 인한 지배권 변동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을 폐지함 (80조 18호)
 -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공시 등이 있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함 (95조 1항 9호·11호, 3항 4호·6호)

- 현물출자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권 변경 및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우회상장기업에 대하여 “우회상장기업”임을 공표함 (97조의2)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반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에 “자본변동표”를 포함하고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함 (10조 1호, 32조 1항 5호, 33조 2항 4호, 36조 1항 4호, 36조 6항 3호, 80조 18호)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최대주주 변경제한 예외사유의 합리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13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최대주주변경제한 예외사유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최대주주변경을 추가함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5호 다목, 32조 1항 9호~12호, 34조 2항 6호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유보율 요건의 폐지
 - 양적요건의 유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질적 심사요건으로 대체

 - * 유보율=(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 폐지

- 상장전 자본금의 50~100% 한도로 하고 있는 유·무상증자 제한을 폐지하되 기존 제3자 배정분등에 대한 매각제한은 유지

— 상장전 합병등 제한 완화

-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 합병한 경우 국내기업은 다음연도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신청 허용
-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Pro-forma 재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병등 제한요건 적용배제

○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5조 1항, 32조 1항 1호·7호·8호·15호·16호, 35조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원칙중심의 질적심사로 심사절차 간소화

- 현행 10개 사항, 15개 세부항목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 사항으로 단순화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

- 3개월 → 2개월

— 설립경과연수의 합리적 개선

- M&A(종속회사 편입, 자산양수)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에 의한 실질영업기간을 반영하도록 설립경과연수의 합리적 개선

— 부도 및 소송요건의 삭제

- 상장신청 1년 전에 부도사유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부도요건 및 중요한 소송계류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이 제한되는 현행 소송요건을 양적요건에서 폐지하고 질적심사요건으로 대체

-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 요건의 삭제
 - 양적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 요건을 양적요건에서 삭제하고 제출서류로 대체

- 외국기업 상장저해 요인 해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개선 (2조 17항)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가능하도록 외국자회사 정의 조항 개정
 - 외국지주회사의 재무요건 적용방법 개선 (34조 3항, 34조의2 2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관련 상장요건(매출액, 이익, 자본잠식 등)을 적용
 - 외국지주회사 제출서류 간소화 (14조 3항, 14조의2 2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퇴출제도의 선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80조, 95조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를 통한 즉시퇴출제 개선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을 때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장폐지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및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부실기업 관리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6조 6항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 제3자 배정증자 중 관리종목지정기업(자본잠식, 시가총액관련 관리종목지정사유에만 적용) 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의 증자분에 대해서 상장후 6월간 매각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1조의2 1항 2호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 및 적격외국증권시장을 추가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중 시가총액이 큰 상위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
-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중 세척에서 정하는 주가지수
- 적격외국증권시장의 범위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홍콩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 (세척 22조)
-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그 지수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체결을 상장심사요건에 추가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와 외국시장 중 거래시간이 유사한 일본의 니케이225 및 홍콩의 HSI(Hang Seng Index)를 지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 허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의2 : 2007/12/21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 중 투자 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

-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을 방지하고,

- 추가상장시에도 발행자, 기초자산, 모집·매출, 유동성공급계약체결의 요건은 신규상장시와 동일하게 적용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 예고기간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1조 1항 5호·2항 1호·3항 : 2007/12/21 개정, 2008/1/2 시행)

— 권리행사기간 만료일의 1월 전에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30일 전 → 1월 전

○ 현물출자에 의한 지배권 변동의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의2 3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결과 소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수가 주

권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에 해당

-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일 전 1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어 온 경우는 제외

○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권면액 요건 적용예외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2조 단서 : 2007/10/24 개정, 10/25 시행)

— 외국원주 상장기업의 경우 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원화기준 권면액 적용이 곤란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인 상장주식 권면액 요건의 적용을 배제

- 국내법인의 상장주식 권면액은 6개(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로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 2 : 2007/12/27 개정, 2008/5/6 시행)

— 시장참가자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정함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예비심사청구월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추가
-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에 현행 코스피200 외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추가

- 해외시장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우선 적격외국증권시장 중 거래시간이 유사한 일본의 니케이225(Nikkei225) 및 홍콩의 항셱지수(HSI)를 추가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시 제출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7조의2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신청서는 신규상장신청서(별지 29호 서식)를 준용한 서식으로 함

- 유동성 분산의 방지를 위해 추가상장 종목의 종목명(종목코드) 및 발행가액 등은 기상장 종목과 동일하게 부여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 신청시 제출서류는 예비심사청구 및 신규상장 신청시 제출서류로 하되,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내용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공시 강화 및 발행조건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의2, 별표3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신고사항에 인적분할 등 기초자산(주권)의 권리내용 변동을 초래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를 추가

- 이사회 결의 등 초기 공시사항 발생시부터 투자유의사항 등 예정사항을 공시하고 추후 확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신고 강화

- 신고업무 책임자 지정 및 변경시 거래소 통보

—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분쟁예방을 위하여 주권의 권리내용이 변경(기준가격 변경)되는 경우 등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

-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치가 동일하도록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여 상장 유지
 - 주권의 배당락 · 권리락
 - 주권의 주식(액면)분할 · 액면병합, 자본감소. 다만 만기평가일(5일)이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을 변경
-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즉시 동일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등을 변경하여 조기상환
 - 상장법인간 신설합병에 의한 주권의 재상장, 주권의 상장폐지 : 최종거래일을 주권의 거래정지 초일의 전일로 변경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 최종거래일을 상장폐지일의 전일로 변경
- 기초자산이 주권의 분할(인적분할)로 변경상장되는 경우
 -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존속 · 신설법인의 순자산분할비율에 의한 바스켓으로 변경
 - 그 밖의 경우에는 바스켓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최종거래일을 주권 거래정지 초일의 전일로 변경하여 조기상환
-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의 조정
 - 변경 행사가격 = 변경전 행사가격 × (주권 기준가격 ÷ 전일 주권 종가) : 호가가격단위 최근 가격(2개인 경우 높은 가격)

- 변경 전환비율 = 변경전 전환비율 × [(전일 주권종가 - 변경전 행사가격) ÷ (주권 기준가격 - 변경후 행사가격)] :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5자리에서 절상
- 최종거래일 및 만기평가일 등의 변경
 - 주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기평가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한 15일 이전에 휴장일·정지일로 되는 경우 휴장일·정지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만기평가일을 순차적으로 앞당기고
 - 만기평가 초일부터 소급한 15일 후에 휴장일·정지일로 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을 해당 일수만큼 순연함
 - 만기평가일 변경시 최종거래일은 만기평가 말일로 변경
 - 최종거래일을 앞당겨 조기상환하는 경우 만기평가일을 해당 일수만큼 순차적으로 앞당김
 - 만기평가일·최종거래일(T) 변경시 만기일(T+2), 지급일(T+4)도 해당 일수만큼 순차적으로 변경
- 조기상환으로 인한 잔존기간 급감을 고려하여 만기평가가격 기준 지급액이 발행인 등이 산출한 최종거래일의 이론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론가격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만기평가일(초일 제외)이 권리락 등의 조치일을 포함하여 만기평가 가격 대상(5일 종가)이 추가단층 전·후의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 조치일 전의 주권 종가를 조정하여 만기평가가격 산출
 - 주권의 조정종가 = 조치일 전 각 주권종가 × (주권 기준가격 ÷ 조치일 전일의 주권종가)

- 그 밖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사전에 사업설명서 등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발행조건을 변경 (부칙 3항 단서)
- 매수대금 미납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의 의무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2조 5항~7항 : 2007/1/19 개정, 5/1 시행)
-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함
 -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0일간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를 의무화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징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매도금액의 범위내에서 재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및 신용거래를 통해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2조 5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다른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증권업과 관련된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위탁자에 대해서도 동결계좌로 적용하여 위탁증거금 징수를 의무화함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내역에 대한 회원간 통보의무의 폐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8조 2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미수금을 발생시킨 위탁자에 대한 회원간 정보 공유는 증권업과 관련된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회원간 통보의무를 삭제함

-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 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07/7/20 개정, 9/3 시행)
 -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
 - 시장감시규정은 이상급등종목을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원화
 - 시장감시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경우에 매매거래를 정지 (25조 1항)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수시 매수금액 전액을 위탁증거금(현금)으로 징수 (42조 9항)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07/7/20 개정, 2007/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로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조 1항)
 - 집합주문의 공정한 배분 등을 위해 집합주문의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의 기록·유지의무를 부과 (44조 2항)

○ 유동성 공급자(LP) 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유동성공급회원 (12조의2)

- 유가증권을 발행한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정규시장에서 LP호가를 제출할 수 있음
- 자기매매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으로서,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LP평가가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할 것

— 유동성공급계약 (12조의3)

- 호가스프레드비율 및 호가수량 등을 유동성공급계약 필수사항으로 하여 회원과 상장법인간 계약 체결
- 회원은 LP계약 체결, 해지 및 중요사항 변경시 거래소에 통보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12조의4)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 이내로서 LP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5분 이내에 제출

* 호가스프레드비율 : 호가스프레드/최우선매수호가 가격 × 100(%)

* 호가스프레드 :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12조의5)

- 사전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정정 포함)하며, 호가수량은 세칙에 위임
- LP호가는 양방향 제출이 의무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시 가격(원칙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 매도호가 제출시 : 하한은 '최우선매수호가+1tick', 상한은 $\text{Min}\{\text{Max}[\text{최우선매도호가}, \text{최우선매수호가} \times (1 + \text{호가스프레드비율})], \text{상한가}\}$
 - 매수호가 제출시 : 상한은 '최우선매도호가 - 1tick', 하한은 $\text{Max}\{\text{Min}[\text{최우선매수호가}, \text{최우선매도호가} \times (1 - \text{호가스프레드비율})], \text{하한가}\}$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12조의6)

- LP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원의 유동성공급 제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표
- 유동성공급 실적 평가를 위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회원의 제출의무를 부과

○ 공매도하는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완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3 2항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원활한 호가 제시를 위하여 LP의 공매도시 가격제한을 완화하여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 가능

○ 자사주의 신청시한 확대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0조 3항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기존에는 전일 장종료후부터 1시간 이내이나, 제도 일원화 차원에서 세척으로 위임

- 연말폐장일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근거 삭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 1항 : 2007/6/1 개정, 6/8 시행)
 - 시장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연말폐장일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근거를 삭제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 1항 : 2007/6/1 개정, 6/8 시행)
 - 임의종료 종목으로 인한 투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는 장종료후부터 실시

- 동시호가의 순위 적용례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 : 2007/6/1 개정, 8/6 시행)
 - 시가 등의 결정시의 동시호가 가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까지 배분받지 못한 경우 동 가격결정시에 동시호가 배분원칙에 따라 우선 배분받음

- 최초 매매개시기준가격 적용 종목의 대응증권 사정비율 조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2항 : 2007/6/1 개정, 8/6 시행)
 - 최저호가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정비율을 차등화하여 보수적으로 운영

- 시장감시 경보체제 구축 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7/7/25 개정, 9/3 시행)
 - 이상급등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이상급등종목지정예고를 투자참고사항 공표에서 배제 (52조, 54조~55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시
매매거래정지요청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 (30조 1항)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용증권의
지정을 배제 (44조)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7/7/25 개정, 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일임형
랩계좌의 주문내용을 호가할 수 있도록 함 (7조의2)
 -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집합주문 허용
 - 집합주문 구분 표시의무 부과 (7조 1항)
 -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랩계좌도 구분 표시 의무 부과

- 차입 증권의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완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4 1항 : 2007/7/25 개정, 9/17 시행)
 -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시가가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공매도호가의 제출 직전까지 시가와 다른 가격의 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의 그 직전가 개념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규정
9조의3 1항 단서 적용을 배제
 - * 규정 9조의3 1항 단서: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 가능

○ 외국기업 상장관련 매매거래제도 보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7조 1항~2항, 별표1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기준시세·사정비율”을 “전일종가·70%”로 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시 원주가 보통주(우선주)인 경우에는 보통주(우선주)와 동일한 호가가격범위를 설정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시 평가가격을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환산가격으로 함
 - 2차 상장을 고려하여 1차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환율 고려-환산가격)이 모집 또는 발행시 발행가액의 90%(또는 50%)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기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와 권리내용이 다른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는 경우, 기상장우선주와 권리내용이 다른 우선주를 상장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격을 산출

○ 외국인 취득한도 종목의 제한적 대량거래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 2항: 2007/7/25 개정, 9/17 시행)

- 외국인 취득한도 종목에 대하여 대량거래네트워크시스템(K-Blox)을 이용한 대량거래를 허용

○ 특정사유의 매매거래 정지기간 명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 매매거래 체결지연 종목의 체결지연 기준 단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매매거래 체결지연 기준을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 등의 공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2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규정 25조·26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중단 또는 재개시 이를 공표
 - 매매거래 체결지연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를 공표

-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4/27 개정, 4/30 시행)
 -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코스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를 부과함
 - 경영권이 변동되는 현물출자로서, 비공개기업이 일정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코스닥기업의 상장을 폐지 (19조의3 3항)
 - * 일정요건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등
 - 비공개기업이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당해 코스닥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공표 가능 (19조의4)
 - 비공개법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보유하게 되는 코스닥기업 주식에 대해 상장후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 (22조의3 1항)

- 경영권변동이 있는 경우 2년간, 경영권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
-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한 주식 분산요건 특례의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6조 2항 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프리보드 지정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식 분산요건에 프리보드 지정기간 중의 모집실적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도 인정함
 -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시 거래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모집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분산토록 요구
- 성장형 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지정 유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1조 1항 2호·5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프리보드 지정(1년간)을 거친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Lock-up을 미적용함
 -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장후 1월간 당해 투자지분의 매각을 제한했음
 - * 성장형 벤처기업 : 성장동력업종을 영위하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으로서 수익성요건(경상이익, ROE)을 면제받아 상장한 기업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반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5호, 7조의 2 1항 4호, 17조 4항 2호, 28조 1항 2호의2·8호, 38조 1항 4호의2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상장·퇴출요건상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CB, BW 주식전환분의 보호예수대상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1조 1항 1의2호, 21조 8항, 22조 1항 1의2호, 22조의2 1항 1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한 보호예수 대상에 CB, BW 등의 주식전환분이 포함됨을 명시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최대주주 변경제한 예외사유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15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변경 제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유증에 의한 경우로서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우량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진입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7/20 개정, 7/23 시행)
 - 해외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 2차상장시에도 외국기업 2차상장시와 동일한 상장요건 특례를 도입 (7조 7항, 21조 5항, 28조 12항)
 - 주식분산요건 완화, 상장 전 증자제한 및 상장 후 매각제한 미적용

 -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특례 마련 (6조 1항 3호·8호, 7조의2 1항 2호)
 -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완화, 유상증자한도 제한에서 해외 동시공모분은 적용 제외

 -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법으로 구주매출을 허용(6조 1항 3호·19호 마목)

- 기업경영의 안정성 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시장 관리체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7/20 개정, 7/23 시행)
 - 종전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변경하여, 시장 관리체계를 관리종목으로 일원화 (8조, 35조, 38조, 41조)
 - 추가상장 유예 근거의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8조 5항 : 2007/7/20 개정, 7/23 시행)
 - 신주발행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벤처금융 임직원의 동반투자규제 합리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19호 다목 : 2007/7/20 개정, 7/23 시행)
 - 벤처금융 임직원 등의 동반투자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처분이후 예비 심사청구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요건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12호 다목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8호·12호, 7조의2 1항 2호, 21조 1항 3호, 22조 1항 4호, 22조의2 1항 4호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무상증자 제한 규제 완화

- 무상증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한도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무상증자제한 요건을 완화

- 상장전 합병등 제한 완화

- 결산 전 3월 이내 합병등의 경우 심사청구 제한기간을 “차기 결산 확정시까지”에서 “차기 반기결산 확정시까지”로 단축

- Pro-forma 재무정보 제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은 합병후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 Pro-forma 재무정보 : 당해 합병 등의 재무적 효과를 검증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재무관련서류

-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질적심사기준 체계의 합리적 정비 (6조 1항 19호)

-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질적심사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간소하게 정비

- 설립후 경과년수 요건의 합리적 개선 (6조 1항 1호)

- “설립후 3년경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 등의 경우에 인수 등 이전의 실제 사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질적심사로 대체 가능한 요건인 “중요한 소송 없을 것” 및 “부도사유 해소 후 6월이 경과하였을 것”을 외형요건에서 삭제 (6조 1항 13호, 19조 1항 2호, 19조의2 1항 2호, 19조의3 2항~3항)
- 제출서류로 대체 가능한 요건인 “명의개서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통일규격 유가증권일 것”을 외형요건에서 삭제 (6조 1항 10호~11호)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간을 “예비심사청구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 (8조 3항)

○ 외국기업의 상장편의성 제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외국자회사의 정의를 수정 (2조 29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재무요건을 적용하고 자회사 재무제표등의 제출은 생략 (4조의2, 7조의2, 41조)

○ 퇴출 및 시장관리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대규모손실에 의한 퇴출요건의 실효성 강화 (28조 1항 3호, 38조 1항 4호의2)
 - 대규모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개선
 - 2년 연속 → 3년간 2회(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인 경우는 적용제외)

- 대규모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판단기준 수정
 - 자기자본의 50%이상(&자본금의 50%이상) → " (&10억원 이상)

— 3자배정증자에 대한 관리강화 (23조)

-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변경을 유발하는 3자배정이나 일부 관리종목 지정법인의 3자배정 증자시 당해 증자분을 6월간 보호예수

— 회생절차 개시신청기업에 대한 퇴출절차 개선 (28조 1항, 14조의2, 38조 1항 6호, 41조 1항~2항)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으로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고, 회생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

— 실효성 없는 퇴출요건 폐지 (28조 1항 5호·7호, 38조 1항 12호·19호)

- 주가에 의한 퇴출요건 삭제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에 의한 퇴출요건 삭제

○ 코스닥상장기업 분할관련 주된 영업정지 기준의 특례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2항 4호 : 2007/1/29 개정·시행)

— 코스닥상장기업 분할시 주된 영업정지 간주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에 대하여는 이의 적용을 면제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된 영업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더라도 존속 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정지의 예외로 인정함
 - 기존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주된营业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의 정지로 보아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에 지정했음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권 변동 개념의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19조의3 2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현물출자 관련 신주발행 공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 결과 소유하게 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 관련 신주발행 공시일 1년 이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의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의3 7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우회상장 여부 및 비공개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해 공시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 이의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권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우회상장 절차와 관련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1항 4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경영권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증자 공시일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확인일까지

- 우회상장 관련 3자 배정 신주의 추가상장 신청시 제출서류의 보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8조 1항 5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영업(주식)양수와 연계한 3자 배정이나 현물출자에 의한 3자 배정 증자분의 추가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
 - 우회상장 여부 등을 증자완료 시점에서 다시 확인

- 외국투자가에 대한 매각제한 특례의 도입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조 1항 2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 제3자 배정으로 받은 신주에 대한 매각제한(상장후 1년간)을 적용함에 있어,

- 당해 기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후 1년간 동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각제한의 예외로 인정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의 반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의2 3항, 26조 1항 2의2호·8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우선심사 범위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8조 2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지방벤처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장예비심사 순서 우선권 부여와 관련하여, 심사결과통보 기한(심사청구 후 3월) 내에 결과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을 명시

○ 시장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1항 1호 : 2007/7/23 개정, 2008/1/1 이후에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법인부터 적용)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관리종목 지정일)”로 개선

기 존	개 정
(관리종목) “확인일+2일” (투자유의종목) 미정지 또는 1일 정지	(관리종목) “확인일+1일”

- 해외상장 국내기업의 2차상장 및 국내외 동시공모의 대상이 되는 해외증권시장의 범위 명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7조 1항 : 2007/7/23 개정·시행)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

- 외국기업의 상장폐지요건 등의 적용시 기준환율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4 : 2007/7/23 개정·시행)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실적의 경우에는 반기말) 현재의 환율을 기준환율로 명시

- 상장요건 유연화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외형요건에서 “명의개서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통일규격 유가증권일 것”을 삭제함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의개서대행계약서와 통일규격주권 견양을 명시 (3조 2항, 14조~18조)
 - 외국지주회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명시 (2조 3항)
 - 외국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나 분기종료일 현재의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한 단축 (8조 3항)

- 예비심사 청구 후 “3월” → ” “2월”

— 외국자회사 정의 수정에 따라, 코스닥상장계약서상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유지의무 수정 (상장서식 8-2)

○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회생절차개시 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운영방안 마련 (32조의2)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을 통보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을 심사기준일로 하여 매 1년마다 심사. 단, 심사기준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심사
- 심사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상장위원회 개최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 결정

—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매매거래 정지 기간 설정 (29조)

-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 다만, 경상이익 요건 및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매매거래정지 해제 가능

— 이의신청이 가능한 퇴출사유로서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를 추가 (33조의3)

— 관리종목 지정사유 개선에 따라 지정 및 해제 시기 변경 (26조)

- 추가요건 등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삭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신설
 -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날의 익일에 관리종목 해제
- 주된 영업 정지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26조)
 -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를 주된영업 정지 사유로 추가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의 2, 13조 :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는 경우 예탁계약서 사본을 신규상장시 제출서류에서 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로 변경

-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2항 4호, 38조 : 2007/12/28 개정, 2008/1/14 시행)
 -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시 관리종목 지정 해제
 - 유동성공급기간 동안의 연부과금 면제 조항 신설

- 주거래은행 의견서 서식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서식 15 :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의 금융부실 거래처 분류가 소멸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우회상장 확인서 서식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서식 25~26 : 2007/12/28 개정, 2008/1/14 시행)

—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신고서제출일 6월전 현재의 주주명부요약표를 제출하도록 명시

○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의 확대 및 구체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 2007/8/27 개정, 9/3 시행)

— 기존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요건을 구체화

기 존	개 정
- 증가급변종목	- 증가가 직전가 대비 $\pm 5\%$ 변동
- 상한가잔량상위종목	- 상한가잔량 10만주 이상 & 잔량있는 계좌수 20개 이하
- 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	- 단일계좌 순매수·순매도 상장주식수의 2% 이상

— ‘매수관여 과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를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으로 신설함

○ 투자경고종목 등의 대상 유가증권 규정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2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는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하여 적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추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 2007/8/27 개정, 9/3 시행)

— 단기급등 외에 증장기적 주가상승 등의 경우에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최근 20일간 주가 150% 이상 상승 & 주가상승일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인 종목
- 최근 20일간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5회 이상 지정 & 주가 50% 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인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10일 후 자동해제 대신 별도의 해제요건 마련

○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4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5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보다 높고 직전일 대비 3일 연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요청

- 해당 시장은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업무규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적용 예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6 : 2007/8/27 개정, 9/3 시행)
 -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시장상황의 급변 등이 있는 경우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의 요청을 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사유의 신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2조 2항 3호, 3항 : 2007/8/27 개정, 9/3 시행)
 - 종래 이의신청 각하사유에서 분리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별도로 규정
 - 징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판단누락을 이의신청 사유에 추가하여 피제재자의 구제절차를 강화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1호 나목·다목 : 2007/8/27 개정, 9/3 시행)
 - 프로그램매매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시 KOSPI200지수와 스타지수간 거래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스타지수 관련 부과기준을 변경

기 준	개 정
- 위반금액을 100억 이상, 200억~300억, 300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비율 적용	- 스타지수 관련 프로그램매매 보고의무위반의 경우, 15억 이상, 30억~45억, 45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비율 적용

○ 이사회에 대한 결정요구 삭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 2007/10/16 개정, 11/1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의 제명, 회원의 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이사회에 대한 결정요구”를 삭제

기 준	개 정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 요구	- 회원의 제명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요구	- 회원의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6월 이내의 거래정지 요구	- 회원의 6월 이내의 거래정지

2. 채권시장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2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딜러”라 함은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

- “소매전문딜러”라 함은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거래소의 지정에 의해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하는 소매딜러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라 함은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채권의 수량기준을 적용하여 호가수량 50억 미만인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
- “조성호가”라 함은 채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소매딜러가 제시하는 자기매매 호가
 - 양방의 조성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하는 호가
 - 일방의 조성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하는 일방의 매도 또는 매수호가,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 일방의 매도호가
- “매매호가”라 함은 다음의 호가를 말함
 - 위탁 호가
 - 소매전문딜러의 자기매매 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의 자기매도 호가

○ 호가의 구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3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를 조성호와 매매호가로 구분

○ 호가의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4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는 정규시장에서 채권종류별로 1종목 이상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양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소매전문딜러는 정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각각 5종목 이상의 매도 및 매수 일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소매딜러가 소매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종류별로 1종목 이상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매도 일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매매계약의 체결시 가격 결정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5 1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 가격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함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운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6 1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는 소매전문딜러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6 2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기타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국고채전문딜러(PD)의 기능제고를 위한 Repo신고매매의 도입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 2006/12/20 개정, 2007/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매채거래의 신고매매를 허용
 - 거래기간 : 360일 이내

- 호가의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3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의 양방의 조성호가 및 소매딜러의 일방의 조성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채권의 종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기타 특수채(비금융특수채), 사채권으로 분류
 - 호가 스프레드는 0.2%포인트 이내, 회사채는 0.4%포인트 이내
 - 조성호가의 호가수량은 각각 종목당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거래소는 소매전문딜러 및 소매딜러가 제출한 조성호가의 호가수량중 매매체결된 경우 해당 수량만큼 당일 각각의 호가별로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간주

- 호가의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4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다음의 채권은 호가입력이 제한됨

- 주식관련사채권
- 외화표시채권
- 소액채권 (호가수량이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
- 투자적격등급(BBB-이상) 미만의 사채권
- 변동금리채권
- 옵션부채권

— 다음의 조성호가는 호가입력이 제한됨

-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 매도·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 99조의3 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5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준용

○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6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에 있어 호가폭주는 다음의 종목당 처리가능 호가건 수한도에 근접하여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특정 종목에 접수된 총호가건수의 경우 5,000건

- 모든 종목에 접수된 총호가건수의 경우 10,000건
 - 기타 이에 준하는 호가건수
- 기타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채권의 매매거래의 관련규정을 준용
- 매매수량단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7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00원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8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가 되고자 하는 소매딜러는 매년말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소매전문딜러 지정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거래소는 신청서를 제출한 소매전문딜러에 대하여 다음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재지정하며, 신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매전문딜러는 15개사 이내로 함
- 당해년도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 당해년도의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실적 (개인 및 일반법인이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매매거래실적은 제외)
- 소매전문딜러의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방법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 소매전문딜러로서 지정이 취소된 소매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해 1년 동안 소매전문딜러로서 지정하지 아니함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취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9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매전문딜러의 호가 및 매매거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최근 2분기 연속 60점 이하이거나 최근 4분기 평가점수의 합이 240점 이하인 경우
- 소매전문딜러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10 1항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 채권담당 본부장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

- 증권 및 선물 관련 분야 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 거래소 채권담당 부서장
- 증권업협회 채권담당부서장
- 소매전문딜러 채권담당 부서장 2인

- 소액채권전담회원 평가기준 명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2조 : 2007/12/18 개정, 2008/1/1 시행)
 -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해 지정신청서 제출을 면제
 -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한 평가항목·배점·지정방법 등을 명문화 (별표2의2)
 - 기존 소액채권전담회원은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연간 평가점수가 140점 이상인 회원을 재지정
 - 신규 신청회원은 6개 항목의 필수요건을 충족한 회원 중 연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소액채권전담회원과 결합하여 지정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평가주기를 반년으로 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취소 요건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3조 : 2007/12/18 개정, 2008/1/1 시행)
 - 상반기 평가시 평가점수가 최근 2반기 합산 평가점수가 140점 미만인 경우와 소액채권전담회원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허용

- 호가집중 도입 등에 따른 위임근거 명시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1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증권업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 공시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

- 위임근거 규정 : 장외거래정보의 공시등(5-31조), 현황보고등(5-40조), 세부사항(5-55조)

○ 호가정보 등의 보고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3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 호가정보에 대한 증권업협회에로의 거래내역 집중근거를 명시
-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 증권회사 이외의 겸영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보고로 같음
- 증권업협회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 보고방법 및 시간 변경 가능
- 호가정보 등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증권업협회에 위임

○ 호가정보 등의 공시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4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등의 공시방법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조회권을 신설
- 호가정보 등 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증권업협회에 위임

○ 거래정보 공시범위 확대 등 사후 투명성 공시 강화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5조 : 2007/12/4 개정·시행)

- 15분 Rule 공시 대상기관에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를 추가
- 실거래내역 공시 강화를 위해 보고 유예규정을 삭제

- 호가정보 등의 보고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2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신고근거를 마련
 - 회사별 채권중개팀이 다수인 경우 팀별 신고
 - 호가집중제도가 시장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회 구성

- 호가정보 보고사항 명시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가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호가정보 및 이에 따른 매매·중개거래내역을 명시
 - 제출회사명 및 보고자 고유 식별부호, 호가 제시시간 등
 - 호가정보 보고대상 채권 범위 명시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

3. 선물·옵션시장

- 선물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 유형의 추가 (선물거래법 시행령 7조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를 추가

- 호가유형의 다양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2조 16항~20항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II편(국채선물거래등) 상품의 호가유형을 지정가·시장가호가 이외에도 추가로 기존의 III편(코스피200선물거래등)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정가·시장가의 성격이 복합된 호가(최유리지정가·조건부지정가)를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호가선택의 기회를 부여

- 스프레드거래방식에 의한 포지션 이월(Roll-over) 방법의 채택 (선물시장 업무규정 61조~63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포지션 이월의 방법인 복합주문방식(II편 제도)과 스프레드거래방식(III편 제도)의 중복기능은 단일화하되, 스프레드거래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
 - 복합주문방식은 청산하려는 결제월물과 새로 보유하려고 하는 결제월물에 각각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
 - 스프레드거래방식은 양 결제월물간 가격차이(스프레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스프레드시장이 존재
 - 포지션 이월(Roll-over)은 헤지 또는 장기투자자가 최종거래일에 만료되는 결제월물을 청산하고 다음 결제월물을 재차 보유하는 것으로 2개 결제월을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근월물을 원월물로 이월(Roll-over)하는 것
 - 원월물의 유동성이 낮은 우리시장의 특성상 대량물량이월에 따른 결제월의 가격급등락에 의한 시장충격 방지 및 전산부하의 최소화를 위해 스프레드거래방식을 선택

- 복합주문방식은 이월 대상인 근월물과 원월물이 동시 체결되어야 하나 유동성이 낮은 원월물의 체결곤란으로 포지션 이월이 원활하지 못함
- 복합주문방식은 복잡하여 투자자 이해도가 낮고 전산부하 가중으로 전산의 효율성을 저해

< 복합주문방식과 스프레드거래방식의 이용도 >

구분	일평균거래량('05년)	채택방식	전체거래량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	176,099	스프레드거래	1.9%
스타지수선물거래	2,657	스프레드거래	5%
3년국채선물거래	45,073	복합주문	4.3%
미국달러선물거래	10,711	복합주문	6.6%
Nikkei225선물거래	73,100	스프레드거래	2.2%
Nikkei300선물거래	578	스프레드거래	49.4%

* 코스피200선물 스프레드거래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200선물 결제월 자체를 이용한 Roll-over가 많기 때문임

* 유동성이 낮아 선물 결제월 자체를 이용하기 곤란한 스타지수선물, Nikkei300선물의 경우 스프레드거래를 많이 이용

○ 단일가매매에 의한 종가 결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72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Ⅱ편 및 Ⅲ편 상품의 종가를 단일가매매로 단일화하여 이를 정산가격으로 사용

- 기존에는 Ⅱ편 상품의 종가는 접속매매로 결정하고 정산가격은 장 종료전 1분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반면, Ⅲ편 상품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이를 정산가격으로 사용했음

- 상·하한가 단일가호가의 다단계 배분 (선물시장 업무규정 71조 3항 2호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II편 및 III편 상품을 상품별 특성을 감안한 다단계(9단계) 배분으로 단일화하여 소액투자자와 대형투자자간에 배분의 공평성을 도모
 - 기존에는 II편 상품의 경우 상·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에 대해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1단계 배분하는 반면, III편 상품은 수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다단계(9단계) 배분했음

- 위탁자간 착오거래 정정 불허 (선물시장 업무규정 80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비실명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 타인의 위탁자산을 이용한 증거금의 일시 충당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간 착오매매의 정정을 단일제도에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기존에는 II편 상품의 경우 위탁자간 착오매매 정정을 허용하는 반면, III편 상품은 허용하지 않았음

- 동일종목의 매도·매수 포지션의 상계 (선물시장 업무규정 95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동일종목의 매도·매수 포지션을 자동상계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함
 - 기존의 II편 상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동상계하거나 양건을 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III편 상품은 자동상계만 허용했음
 - 3월물 매도 100계약, 3월물 매수 100계약 보유를 허용(양건)하는 대신 자동으로 상계시킴(3월물: 0)

○ 10년국채선물거래의 도입 (선물시장 업무규정 32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5% 및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 표준물로 함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는 액면 5천만원, 거래승수는 50만으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기초자산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표준물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8%,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표준물
거래단위	5천만원	1억원
거래승수	50만	100만

— 결제월 (33조 2항)

- 10년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3개로 하고,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9개월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결제월의 수	3개	2개
거래기간	9개월	6개월

— 호가가격단위 (34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02(10,000원)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호가가격단위	0.02	0.01
호가가격단위당 금액	10,000원 (50,000,000/100×0.02)	10,000원 (100,000,000/100×0.01)

— 최종결제일 (35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T+2)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최종결제일	T+2일	T+1일

— 최종결제방법 등 (36조, 36조의2)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실물인수도결제)으로 함
 - 국채수량: 액면 5,000만원×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대금: 【최종결제가격×거래승수×전환계수+경과이자】×최종결제수량
 - * 전환계수 : 인수도시점의 “국고채권 표준물의 가치”에 대한 “인수도적격국채의 가치”의 교환비율로, 표준물과 인도물 간의 발행조건 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계수
 - * 경과이자 : 최종결제일 기준으로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최종결제일까지 발생한 인도대상 국고채권의 경과이자금액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 인수도적격채권 : ① 원화로 표시된 국고채권, ② 기타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최종결제방법	실물인수도결제	현금결제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결제수익률 기준의 현물가격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112조 1항 2호)

-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000계약

— 여타 제도는 기존 3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 (3조~4조, 32조, 34조~35조)

- 스프레드거래제도 도입
- 거래시간, 1계약금액, 가격의 표시, 최종거래일

— 10년국채선물의 거래개시 방법 및 거래개시일 (부칙 2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상장일에 세척에서 정하는 3개 결제월을 동시에 거래 개시함

○ 주식선물거래의 도입 (선물시장 업무규정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주식선물거래의 대상 (21조의2)

- 주식선물거래의 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초주권으로 함
- 기초주권은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종목(15개)으로 함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도입 (3조)

- 기존 선물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프레드거래제도를 주식선물에도 동일하게 도입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 주식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 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와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종목수 : 최근월물과 여타 각 결제월물 간 3개로 구성
- 가격 : 원월물가격-최근월물가격
- 체결방법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는 스프레드호가만의 경쟁으로 체결되고, 이 경우 스프레드거래의 체결수량과 동일 수량이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에 체결된 것으로 봄

— 거래승수 (21조의3)

- 주식옵션과의 연계거래 용이 및 편의성 제고하고자, 주식선물의 거래승수를 주식옵션과 동일하게 10으로 함
- 기초주권의 분할, 주식병합 등에 따라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로 주식선물의 기준가가 변경되는 경우, 선물의 매수·도자 간 체결한 계약의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거래승수 조정하고,
- 다만, 기초주권 1주가 1주의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 승수를 조정하는 대신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고, 미결제약정이 없는 결제월종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만 조정

— 호가가격단위 (21조의5)

-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현물주식에 대한 헤지의 정밀도를 높이고 세밀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호가가격단위의 1/2로 하되, 거래편의를 위하여 1만원 미만은 5원으로 단일화함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기초주권의 가격	주식선물시장	주식시장
1만원 미만	5원	5원,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5원	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0원	1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0원	500원
50만원 이상	500원	1,000원

* 5천원 미만 : 5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 10원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종목의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중 낮은 가격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가격 (21조의6~7)

- 주식선물의 최종거래일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함
- 주식선물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증가로 하고, 증가가 없는 경우 세척에서 최종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함

— 가격제한폭 (69조)

- 주식선물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주권의 가격제한폭과 동일하게 기준가격의 15%로 정함

— 호가공개범위 (81조)

-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기초주권의 1/2)와 기초주권(10단계)의 호가공개범위를 감안하여 주식선물의 호가는 10단계 우선호가를 공개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112조)

- 결제불이행위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정하되, 구체적인 수량은 기초주권의 상장주식수, 거래승수 등을 감안하여 세척에서 정함
- CD선물 및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3조~4조, 9조, 32조~42조, 100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CD선물 폐지
 - 은행간 신용도 및 발행금리의 차이로 인한 표준화의 곤란으로 대표성이 없고, 유사한 단기금리시장인 통안증권선물이 존재
 - 3년국채선물옵션 폐지
 - 2002/5/10 상장 이후 지속적인 거래부진 및 선물옵션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참여 부진으로 상장폐지
- 투자위험종목 대응증권 제외 (선물시장 업무규정 88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추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응증권 제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2007/7/20)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엔·유로선물의 증거금기준가격 산출 대상환율의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5 : 2007/2/5 개정, 2/7 시행)

- 엔·유로선물의 증거금기준가격 산출시 이용되는 대상환율을 Reuter, Bloomberg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변경
 - 기존에는 일본은행이 고시하는 15시 기준 환율(해당 환율이 없는 경우 호주준비은행이 고시하는 자국시간 16시 기준 환율)을 이용

< 환율간 차이비교 >

구 분	BOJ-RBA		BOJ-국제시세		RBA-국제시세	
	\$/¥	€/\$	\$/¥	€/\$	\$/¥	€/\$
차이(평균)	0.01	0.0001	0.01	0.0001	0.01	0.0001

* 대상기간 : '06.10.1~'06.12.31 (RBA 환율의 경우 '06.10.1~10.27)

- 금선물의 거래증거금률 조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2항 3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국제금시세의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5%)을 상회하고 있어 증거금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거래증거금률을 상향 조정
 - 금선물 거래증거금률 인상 : 5% → 6%

<금선물 거래대상 가격변동성>

최근 1년	이전 1년	증감
5.32%	3.37%	1.95%

* 기준일 : 2006. 12. 31

- 금선물거래 결제회원의 통지항목 추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4조 1항 2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거래 최종거래일에 결제회원은 인도물품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무관세인지 여부도 거래소에 통지

- 무관세 금괴 인도자의 교부서류 보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1조 2항 : 2007/3/23 개정, 3/27 시행)
 - 무관세 금괴의 인도의사를 통지한 자는 관세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분할증명서")를 인수자에게 인도할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호가입력 내용 중 국적란에 국적코드를 추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7/5/28 개정, 5/29 시행)
 -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78, 네덜란드령 안틸레스:79, 맨섬:80, 쿡아일랜드:81, 사이프러스:82, 지브롤터:83, 몰타:84, 모리셔스:85, 세인트빈센트 그레다닌:86, 슬로베니아:87, 우즈베키스탄:88, 모나코:89, 마셜:90, 말레이시아 라부안:91

- SK주식회사를 SK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2 : 2007/7/24 개정, 7/26 시행)
 -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식회사가 SK에너지주식회사와 SK주식회사로 회사분할됨에 따라 주식옵션 기초주권을 분할비율 및 주요사업을 감안하여 SK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함

- SK에너지주식회사 분할 지분 : 71%
 - SK에너지주식회사 주요사업 : 석유·화학 등
- 주식옵션 행사가격의 추가설정방법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조 2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주식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의 간격(표준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내가격 또는 외가격의 행사가격(종목)이 4개가 되도록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
- 기존에는 추가설정 여부 확인시 기초주권의 배당락 등으로 조정된 모든 행사가격을 제외하여,
 - 조정된 행사가격이 표준행사가격인 경우에는 비표준행사가격만 제외하고 내가격 또는 외가격 종목이 4개를 초과하여 추가로 설정될 수 있음
- 협의대량거래의 공표사항 명확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8조 1항 2호 : 2007/8/13 개정, 8/27 시행)
- 당사자간의 상대거래인 협의대량거래의 성질상 약정수량만 표시
- 선물정산가격에서 최종거래일의 이론가격 제외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3조 1항 4호, 3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최종거래일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수렴하여 같아지므로 최종거래일의 선물정산가격에서 이론가격을 제외

- 최종거래일에 약정가격, 의제약정가격 및 기세가 없는 종목의 정산가격은 전일 정산가격과 이론정산가격의 괴리율과 관계없이 전일의 정산가격으로 함

* 정산가격: 최종의 약정가격 → 최종의 의제약정가격(스프레드가격) → 기세 → 전일 정산가격 → 이론가격(전일 정산가격과 이론가격의 괴리율이 거래증거금률의 50% 초과시)

- 통화선물 이론가 산정방식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2007/11/16 개정, 11/26 시행)

— 1일물 콜금리 대신 외환스왑 포인트에 내재된 1개월, 3개월, 6개월 원화금리를 사용하여 CRS 금리(1년물)와 선형 보간하여 산출된 금리를 이론가 산출에 사용

- 스왑포인트 내재금리는 로이터가 고시하는 스왑포인트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 내재금리를 사용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 상장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조, 34조, 43조, 45조~48조, 73조, 81조~84조, 86조~87조, 93조~94조, 별표1, 별표5, 별표7, 별표9, 별표14, 별표16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 상장폐지와 관련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을 정비함

- 옵션증거금 산출방법 개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6항, 84조 5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옵션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당해 종목의 연 내재변동성 대신 평균 내재변동성 사용

- 엔·유로선물의 현물가격 산출 대상환율의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별표 : 2007/2/5 개정, 2/7 시행)
 - 엔·유로선물의 이론가격 산출시 현물가격으로 이용되는 대상환율을 Reuter, Bloomberg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변경
 - 기존에는 일본은행이 고시하는 15시 기준 환율(해당 환율이 없는 경우 호주준비은행이 고시하는 자국시간 16시 기준 환율)을 이용

- 국채선물 등의 전용계좌에 대해 기본예탁금제도의 적용 면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0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하되, 국채선물 등의 전용계좌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
 - 기본예탁금제도는 상품특성과 관계가 적고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도모장치이므로 제도취지상 국채등 모든 상품에 적용함이 바람직함
 - 다만, 기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II편(국채선물거래등) 상품 투자자가 국채 등을 전용으로 거래한다는 신청을 할 경우, II편 상품 전용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동 계좌에 대해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

- 위탁증거금산출방법의 단일화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5조~31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위탁증거금산출방법을 국내 개발의 코스피200증거금(COMS)으로 단일화되, 상품별 납부수준은 기존을 유지
 - 국내 개발의 COMS는 세계적 유동성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결제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
 - 다만, COMS로 단일화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불리함이 없도록 상품별로 기존의 징수 수준을 그대로 유지

- 10년국채선물거래의 도입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17조, 19조, 36조, 45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하여 국채등 전용계좌에서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승수는 50만으로 함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함
 - 국채수량 : 액면 5,000만원×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대금 : 【최종결제가격×거래승수×전환계수+경과이자】 × 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000계약

○ 주식선물시장 개설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6조, 45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최종결제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증가(기세 포함)
- 최종결제차금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선물가격)-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주식선물승수(10)

— 미결제약정 보유حد

- 결제불이행위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보유حد를 정하되, 구체적인 수량은 기초주권의 상장주식수, 거래승수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함
- 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حد는 증거금액, 명목가액, ELW 헤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함(상장주식수의 0.3% 수준)

○ CD선물 및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19조, 36조, 39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CD선물 상장폐지

- 은행간 신용도 및 발행금리의 차이로 인한 표준화가 곤란으로 대표성이 없고, 유사한 단기금리시장인 통안증권선물이 존재하여 상장폐지

—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 2002/5/10 상장 이후 지속적인 거래부진 및 선물옵션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참여 부진으로 상장폐지

○ 투자위험종목 대응증권 제외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1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추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응증권 제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2007/7/20)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금선물의 위탁증거금률 조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9조 1항 3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을 조정함에 따라 그에 연동(1.5배 수준)되는 위탁증거금률도 조정

구 분	위탁증거금률		거래증거금률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금선물	7.5%	9.0%	5.0%	6.0%

○ 금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조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조 1항 1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의 위탁증거금률을 조정함에 따라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계약당 주문증거금 수준도 조정

- 금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인상 : 100만원 → 180만원

○ 관세가 면제되는 금피에 대한 인수도절차 보완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1호·8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종목의 순매도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통지 사항을 추가

- 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관세가 면제되는 금괴인지 여부도 통지

— 수입물품 중 분할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하는 대상을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으로 함

- 무관세 수입물품 인도자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분할증명서 인도대상에서 제외

○ 수탁의 조건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조 4항 : 2007/5/3 개정, 8/27 시행)

— 동일 회원이 추가로 계좌개설시, 위탁자에 대한 약관·위험고지서의 교부를 생략 가능

- 약관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

○ 선물·옵션계좌의 구분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5조 7호~8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사전위탁증거금계좌	사후위탁증거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매수전용계좌 • 국채등전용계좌 • 사전위탁증거금일반계좌 - 옵션매수전용계좌 및 국채등전용계좌를 제외한 사전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 할인계좌는 주식상품에만 적용

○ 주문내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6조 7호~8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 국채선물거래 등에도 비회원선물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거래와 자기거래를 구분
- 코스피선물거래 등에도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주문제도를 도입

○ 수탁의 거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9조 1항 2호~3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예탁총액만 부족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총액증거금을 감소시키고 예탁현금의 범위내에서 현금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을 허용
- 예탁현금만 부족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증거금을 감소시키고 예탁총액의 범위내에서 총액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을 허용

○ 위탁증거금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1항 : 2007/5/3 개정, 8/27 시행)

구 분	최저율	비 고
주식상품거래	15%	기존 동일
3년국채선물거래, 3년국채선물옵션거래	1.5%	
5년국채선물거래	1.8%	
통안증권선물거래, CD선물거래	0.3%	
미국달러선물거래, 미국달러옵션거래	3%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3.75%	3.5% → 3.75%
금선물거래	9%	기존 동일

○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5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위탁증거금 구간수치는 각 기초자산별로 31개(이상)로 함

장중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장종료후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 전일 현물증가를 기준으로 설정 - 전일 현물증가 : 1개 - 전일 현물증가 ± (전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2개 - 전일 현물증가 ± (전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1/15) 간격 : 28개(이상)	○ 당일 현물증가를 기준으로 설정 - 당일 현물증가 : 1개 - 당일 현물증가 ± (당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2개 - 당일 현물증가 ± (당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1/15) 간격 : 28개(이상)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이론가격 등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6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구간수치별 이론가격 : 장중의 경우 전일의 장종료를 기준으로, 장종료 후의 경우에는 당일의 장종료를 기준으로 구간수치별 이론가격을 산출

— 옵션거래의 최대 위탁증거금 이론가격 : 풋옵션의 경우 최저 위탁증거금 구간수치의 이론가격, 콜옵션의 경우에는 최대 위탁증거금 구간수치의 이론가격

— 매도옵션 조정위탁증거금 이론가격 (SOA)

장중 SOA	장종료 후 SOA
$(\text{전일 현물증가} \times \text{위탁증거금률} \times \text{SOA율}) + \text{전일 옵션증가}$	$(\text{당일 현물증가} \times \text{위탁증거금률} \times \text{SOA율}) + \text{당일 옵션증가}$

• SOA의 최저율 : 25%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기준가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7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위탁증거금 기준가격은 옵션거래의 각 종목별로 장중에는 전일의 옵션종가(당일의 기준가격), 장종료 후에는 당일의 옵션종가(당일의 거래증거금 기준가격)로 함

- 결제이행전 손익금액의 위탁증거금 반영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중)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28조)
 - 당일에 체결된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반대거래의 순손실과 옵션거래의 순매수금액의 합계를 장중 위탁증거금에 반영 (장종료 후에는 29조 2호의 수수일전 순손실금액에 반영)
 - 선물거래의 종목별 반대거래 순손실 : (거래량가중 평균매수가격 - 거래량가중 평균매도가격) × 반대거래수량 × 거래승수
 - 수수일전 순손실 결제금액 (29조)
 - 거래의 성립 및 일일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시한 전의 결제 순손실금액(인수도결제금액은 제외)을 위탁증거금에 반영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 수수일이 도래한 수수시한 전의 결제 순손실금액
 - 장종료후 수수일전 순손실금액 : 수수일 도래 전일의 결제 순손실금액

-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0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사전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음의 합계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함

- 신규주문 위탁증거금액 (선물스프레드거래는 제외)

선물거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옵션거래 매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옵션거래 매도의 신규주문시	위탁수량 × 거래승수 × (최대 이론가격과 조정 이론가격중 높은 이론가격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선물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신규 및 반대거래 여부를 불문) :
위탁수량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
- (현재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의 장종료 기준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150만원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75만원
그 밖의 선물스프레드거래	50만원

* 미결제약정에 대한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과 동일 (31조 6항)

○ (전일기준)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1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중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 장종료 기준 순위험증거금은 상품군별 순위험증거금의 합계로 함

— 상품군 순위험증거금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에 대한 옵션가격증거금,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 선물스프레드증거금 및 인수도증거금의 합계와 최소(순위험)증거금중 큰 금액으로 함

- 옵션가격증거금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의 합계 -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의 합계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 : 기초자산의 가격이 위탁증거금률만큼 변동할 경우에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의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중 적은 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 인수도증거금 :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인수도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
- 최소(순위험)증거금
 -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액
 - * 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수량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액
 - * 옵션거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액
 - * 옵션거래의 인수도결제수량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액
 -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의 최소액 : 5만원(스타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1만원)
 -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의 최소액 : 1만원(3년국채선물옵션거래의 경우에는 5만원)

— 상품군의 구분 및 상품군별 가격상관율

상품군	기초자산	가격상관율
주가지수상품군	코스피200, 스타지수	50%
기초주권상품군	개별주식(업종별 구분)	10~30%
국채상품군	3·5년국고채권표준물	80%
금리상품군	통안증권, CD	40%
통화상품군	미국달러·엔·유로	30%

○ (상품군) 선물·옵션 가격변동 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2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상품군의 가격변동증거금은 동일 기초자산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구간수치별 증거금(이익구간은 가격상관율을 적용)과 동일 상품군내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구간수치별 증거금(이익구간은 가격상관율을 적용)의 합계중 최대액으로 함

- 동일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한 구간수별 증거금
 -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 구간수치와 (전일)현물종가의 차
 - *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 : (동일 구간수치) 구간수치별 이론가격과 (전일)옵션종가의 차
- 최고 구간수치에서의 콜매도 미결제약정과 최저 구간수치에서의 풋매도 미결제약정 : 최대이론가격과 조정이론가격(SOA)중 높은 가격 적용

○ 인수도 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3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상품군의 인수도결제수량(선물옵션거래는 제외)에 대한 증거금은 최종 거래일의 거래종료 후부터 인수도결제시한(T+2일 12시 이내)까지 적용

— 인수도 가격증거금

- 선물 인수도결제수량 : 최종결제가격과 (전일)현물종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옵션 인수도결제수량 : 권리행사가가격과 (전일)현물종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인수도 가격변동증거금

- 선물매수, 콜행사, 풋배정 수량 : (전일) 현물종가와 최저 구간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선물매도, 콜배정, 풋행사 수량 : (전일) 현물종가와 최대 구간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결제불이행 위탁자에 대한 증거금 증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4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위탁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으로 할 수 있음

- 순위험증거금 할증 방식 : 상품군 순위험증거금 × 증거금조정률 (100% 이상)
- 총위험증거금 방식 : 다음중 큰 금액
 - * 기초자산 가격 하락시 손실 포지션(선물 매수, 풋옵션 매도, 인수도결제 선물매수, 인수도결제 콜옵션행사, 인수도결제 풋옵션배정 수량) × 계약당 증거금률(0% 이상)
 - * 기초자산 가격 상승시 손실 포지션(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인수도결제 선물매도, 인수도결제 콜옵션배정, 인수도결제 풋옵션행사 수량) × 계약당 증거금률(0% 이상)

○ 사전 현금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5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신규주문 현금위탁증거금액

선물거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 현금 위탁증거금률
옵션거래 매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전액현금)
옵션거래 매도의 신규주문시	0(결제불이행 우려 위탁자의 경우 현금증거금 징수 가능)

- 현금위탁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의 1/3 ~ 위탁증거금률

— (현재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 장종료 기준 순위험 현금 위탁증거금액

- 인수도결제수량을 제외한 모든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과 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중 적은 금액에 선물현금비율을 곱한 금액
- 결제불이행 우려 위탁자의 경우 옵션 미결제약정에 대한 현금증거금 징수 가능
- 선물현금비율 : 1/3 ~ 100%

—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전액 현금)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전액 현금)

- 국제선물거래 등에도 현금 위탁증거금을 적용

○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007/5/3 개정, 8/27 시행)

— 신규거래가 있는 사후증거금계좌의 경우 당일의 장종료 기준 순위험 증거금액에 수수일전순손실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함 (36조 1항~3항)

- 당일중 반대거래만 있거나 거래가 없는 사후증거금계좌의 경우에는 추가증거금 발생 여부를 확인 (40조~41조 참조)
- 주식상품거래만 적용되는 사후증거금할인계좌의 경우에는 20% 수준을 할인한 순위험증거금액에 수수일전순손실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36조 3항~4항, 37조)

— 사후 현금증거금을 국채선물거래 등에도 적용 (38조)

- 사후일반계좌 : 당일기준 순위험 현금증거금 + 장종료후 순손실금액(전액 현금)
- 사후할인계좌(주식상품에 한정) : 당일기준 순위험 할인현금 증거금 + 장종료후 순손실금액(전액 현금)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9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예탁총액초과액 또는 예탁현금초과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증거금에 충당 가능 (1항 2호~3호)

- 예탁총액초과액 : 예탁총액에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사전증거금방식(장종료후에는 사후증거금방식)으로 산출된 증거금액(지급시에는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예탁현금초과액 : 예탁현금에 대응증권 매도대금(결제일 2일 전의 대금은 제외)을 더한 금액이 현금증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지급은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을 한도로 지급 가능

○ 추가 위탁증거금의 예탁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0조~41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종료 후의 예탁총액(예탁현금)에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증거금(유지현금증거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증거금(추가현금증거금) 예탁 (40조 1항, 41조 1항)

- 유지증거금액 : 당일 장종료 후의 유지증거금률 수준 순위험증거금 + 수수일전 순손실 금액 (40조 2항~5항)

- * 결제불이행 우려자에 대한 유지증거금액 증액 가능 (40조 6항~7항)

- 유지현금증거금액 : 0 + 수수일전 순손실 금액 (41조 2항~3항)

- * 사후증거금계좌는 당일중 반대거래만 있거나 거래가 없는 경우에 추가증거금 적용 (신규거래시에는 사후증거금 예탁)

- *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전의 자율 반대거래 등에 의한 추가증거금 예탁 간주

— 기초자산별 유지증거금 구간수치(21개 이상) (41조 3항)

- 당일 현물종가 (1개)

- 당일 현물종가 ± (당일 현물종가 × 유지증거금률) (2개)

- (당일 현물종가 × 유지증거금률 × 10%) 간격 (18개 이상)

— 유지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 최저율의 2/3 ~ 위탁증거금률 (41조 4항)

— 계약당 스프레드 유지증거금의 최저금액 (41조 5항)

- 코스피200선물 : 100만원, 스타지수선물 : 50만원, 기타 선물 : 30만원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3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 결제월종목의 가장 나중의 약정가격으로 함(선물옵션거래에 의한 가격은 배제)

- 최종 약정가격 → 최종 의제약정가격 → 기세 → 전일의 정산가격 (이론정산가격과의 괴리가 거래증거금율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론정산가격)
- * 미국달러선물 원월종목과 엔·유로선물의 종목은 상기 가격과 이론정산가격의 차가 0.3원 이상인 경우 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사용

○ 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시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8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권리행사 신고시한은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1시간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15:15~16:15 이내)

- 통화옵션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 후부터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11:30~16:15 이내)

○ 옵션거래의 자동권리행사기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9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현금결제방식인 주식상품옵션의 권리행사신고 의제수치

-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 0.01P
- 주식옵션의 경우 : 5원

— 실물인수도방식의 달러옵션과 3년국채선물옵션의 경우는 종래와 같이 회원이 정하는 수치로 함

- 스프레드주문의 위탁증거금 합리화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0조 1항 2호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위험의 증가가 없는 청산 및 결제일 이전(롤오버, 롤백)을 위한 스프레드거래 주문의 경우, 회원의 자율에 따라 스프레드주문증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국채선물 등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 징수유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부칙 1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기존에 현금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채·통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2007년 12월까지 현금 위탁증거금의 징수를 유예
 - 제도단일화의 근간 유지, 현금증거금의 미징수 근거규정 부재 등을 고려하여 부칙 개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유예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의 상장폐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4조, 31조, 33조, 40조, 43조, 49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세칙 개정

- 옵션증거금 산출방법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6조 3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옵션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당해 종목의 연 내재변동성 대신 평균 내재변동성 사용

- 지급·충당금액 산출방법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9조 1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장종료 후 지급·충당금액 산출시 위탁증거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 유지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산출

4. 증권예탁·결제

- 기관투자자결제에의 결제대상에 주식예탁증서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5 1호 : 2007/6/18 개정·시행)
 - 기관투자자결제에의 결제대상에 주식예탁증서를 추가

- 주식예탁증서의 의결권행사절차 정비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4조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행사를 신청
 - 의결권행사를 신청받은 예탁원은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신청

- 주식예탁증서의 해지절차 정비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6조 1항 : 2007/6/18 개정·시행)
 - 원주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해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예탁원이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도록 함

- 해지신청이 접수된 주식예탁증서의 유통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주식예탁증서의 거래안정성을 강화
- 외국통화 표시 유가증권에 대한 액면금액 산정기준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2007/7/20 개정·시행)
- 예탁수수료의 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 표시 채권에 한하여 마련한 액면금액 산정기준을 주식 등으로 확대
 - 액면금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직전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펀드결제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 2007/7/20 개정·시행)
-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자산 매일의 원본액의 연 0.0625/10,000을 펀드결제수수료로 징수
 - 징수대상은 수탁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일임고객·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중 예탁원에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고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 근거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12조의3 : 2007/2/13 개정·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등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로부터 고객 인수채권의 예탁청구 통지업무를 위임받아 예탁자에게 예탁을 청구
 - 증권회사(예탁자)는 동 통지내역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계좌부에 채권을 예탁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

-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 기한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3조의2 : 2007/6/21 개정, 6/2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당해 주식예탁증서 청약 마감일의 오후 4시까지” 예탁원에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

- 주식예탁증서의 해지청구 기한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3조의3 : 2007/6/21 개정, 6/2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해지하고 해외에서 원주식을 반환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원 소정의 주식예탁증서 해지신청서에 의하여 “해지신청일 오후 4시까지” 예탁원에 신청

- 채권자 신청에 의한 등록기관으로부터의 예탁처리 근거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12조의2 3항 : 2007/11/19 개정, 12/1 시행)
 -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원이 유가증권을 예탁자의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 당해 예탁자(채권자)가 예탁 청구한 것으로 봄

- 주식예탁증서 보호예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20조 1항 2호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로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1증서당 0.01원을 징수

- 외국통화 표시 유가증권에 대한 액면금액 산정기준 마련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20조 1항 : 2007/7/20 개정·시행)
 -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가 고시하는 직전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예수수료를 징수

-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탁계약 근거 마련 등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16조 2항 3호, 3항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외국법인을 위탁회사로 하는 수탁계약 체결시 대행업무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계약시 수탁대상법인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조 3호, 7호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유가증권의 종류에 외국증권을 추가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동조 7호의 “외국채권”을 “외국증권”으로 변경하고, “외국증권”은 증권거래법 2조 1항 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정의

- 외국법인 용어정의 신설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조 8호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외국법인”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증권의 발행인으로 정의

-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시 발행원인 증빙서류의 명시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16조 5호 : 2007/7/4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신규발행사유 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시 증권예탁결제원이 위탁회사에 징구하는 발행원인 증빙서류를 명시

- 외국법인의 발행원인 증빙서류 명시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16조 3호 : 2007/8/23 개정·시행)
 - 외국법인의 경우 발행원인 증빙서류로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에 준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주식예탁증서 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조 6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주식예탁증서를 추가

- 주식예탁증서의 대차거래기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4조 1항 5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대차거래기간을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정함

- 주식예탁증서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5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증서”로 정함

- 대차증권 익일인도 거래제 도입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 1항 : 2007/11/22 개정, 2008/1/1 시행)
 - 대차증권을 대차거래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 대차증권의 인도시한은 인도일의 16시까지로 함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조의2 : 2007/6/25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대차수수료를 호가단위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8조의2 : 2007/6/25 개정, 7/2 시행)
 - 호가단위는 “0.1%”로 함

- 담보대상 범위의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7/6/25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담보대상에 추가

-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명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 업무 : 09:00~16:00
 - 그 밖의 예탁기관업무 : 09:00~17:00

- 실질소유자 등에 대한 예탁계약의 구속시기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5조 4항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소유자 및 실질소유자는 당해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 해당 예탁계약의 내용에 구속

- 주식예탁증서 발행신고서의 제출의무 폐지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기존 11조 삭제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에의 발행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의 제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1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를 제한할 수 있음

- 불행사에 따른 신주인수권 처리방법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22조 2항 : 2007/6/18 개정·시행)
 - 행사기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탁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 마련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기관업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3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기관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제비용을 발행회사 또는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정의 추가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2조 3항 : 2007/6/18 개정·시행)
 - 실질소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 근거 마련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 2007/2/13 개정·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등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로부터 고객 인수채권의 예탁청구 통지업무를 위임받아 예탁자에게 예탁을 청구
 - 증권회사(예탁자)는 동 통지내역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계좌부에 채권을 예탁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 2007/2/13 개정·시행)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용실적에 따라 “예탁자예의 예탁청구 대행” 수수료를 징수

- 변동금리부채권의 적용금리 결정방법 및 통지시점의 명확화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 2007/2/13 개정·시행)
 - 일괄예탁되는 변동금리부 채권인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원리금 확정
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금리가 확정되도록 발행조건을 정함
 - 발행자는 변동금리가 확정되는 이를 즉시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함
 -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제한이 원리금지급일(D) 2영업일전부터이고,
원리금 청구가 교환청구(D-1) 방식이므로 채권금리는 사전에 확정
되어야 함

- 신청에 의한 채권자의 지정계좌 예탁처리 근거 마련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의2 : 2007/11/19 개정, 12/1 시행)
 - 채권자가 이전등록 또는 질(담보)권 말소 등의 사유로 채권등록부에
등록을 청구한 경우 예탁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당해 채권을
예탁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채권자에게 등록필증 및 본인 계좌가 표시된 증표 또는 서
면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

- 담보콜거래의 거래기간 중 중도상환제도 신설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11조의2 1항~3항 : 2007/11/22 개정, 12/1 시행)
 - 담보콜거래의 거래기간 중 상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를 중도상환으로 정의하고, 중도상환결제를 위한 방법 및 효력을 명시
 - 결제자료 확정 후 납부가 완료된 중도상환할 금액과 담보를 동시결
제의 방법으로 결제

- 상환금액의 일부를 중도상환 결제한 경우는 기존의 담보콜거래는 소멸하고, 새로운 담보콜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담보콜거래의 결제근거 신설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11조의2 4항~5항 : 2007/11/22 개정, 12/1 시행)
 - 거래금액·이자와 담보를 동시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중도상환결제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

- 중도상환자료의 통지시한 및 기재사항 명시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의2 1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참가자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중개회사는 해당 담보콜거래, 중도상환일, 중도상환할 금액 등을 기재한 중도상환자료를 중도상환일 오후 2시까지 예탁원에 통지

- 수탁기관 변경시 변경자료의 통지시한 및 기재사항 명시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의2 2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참가자가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중개회사는 해당 담보콜거래, 수탁기관 변경일, 새로운 수탁기관내역 등을 기재한 자료를 변경일 오후 2시까지 예탁원에 통지

-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업무의 구분 명확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2조 1항 1호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를 “조건부매매결제등”으로 새롭게 용어정 의하고,

- “조건부매매결제등”을 “기관간 조건부 매매결제” 및 “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로 명확히 구분
- 규정의 명칭 및 용어를 변경

기 존	개 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업무 규정	환매조건부매매결제등에 관한 규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조건부매매
환매채권예탁계좌 환매채권예탁자계좌부	환매예탁계좌 환매예탁자계좌부
매입채권, 매도채권	매입증권, 매도증권

○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확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3조 1~2항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기관간 RP의 거래대상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등 채권 ▪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 기업어음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대고객RP의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업무 대상 유가증권을 감독규정상의 매매대상과 일치시킴

기 준	개 정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공모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공모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공모한 채권 ▪ 공모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회사채 BBB) 이상으로 제한

- 매도증권 대체 이후 매도증권의 적정담보 유지비율 인상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20조의2 1항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매도채권 대체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5-37조의3~4)

- 중개회사수수료 폐지 (19조 및 별표 : 2007/10/2 개정·시행)
 - 수수료에서 중개회사수수료를 삭제하고,
 - 수수료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결제수수료”, “대고객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관리수수료”로 구분

-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 규정 삭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3조 : 2007/11/09 개정, 12/1 시행)
 - 대고객 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이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매도증권 적정담보 유지비율의 상향 조정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 : 2007/11/09 개정, 12/1 시행)
 - 100% → 105%
 - 매도증권의 일일정산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와 환매가의 105%를 비교하여 부족분 및 초과액을 산정

- 시행세칙 명칭 및 관련 용어 변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7/11/09 개정, 12/1 시행)

기 준	개 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업무규정	환매조건부매매결제등에관한규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조건부매매 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환매채권예탁계좌	환매예탁계좌
매입채권, 매도채권	매입증권, 매도증권

5. 기업공시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8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 특별손익 수시공시의무의 폐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2항 7호, 31조 1항 20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제정에 따른 '특별손익' 수시공시 의무 폐지
 - '특별손익' 수시공시 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불성실공시(금액 50% 이상 변경) 삭제

- 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2조 1항 2~3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을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조 11항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로 정의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지침상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기업만 상장이 가능
 - 종래에는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정의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5조 1항 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개정

-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고의무사항 >

신고의무사항 자회사의 비중	부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여타 주요경영사항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	당일 공시	익일 공시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미만	익일 공시	공시의무 없음

* 기업존폐 관련사항은 개정후에도 기존과 같이 모든 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

- 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공정공시 운영기준 3조 2항~3항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제정에 따라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3조 2항~3항, 8조 3항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 용어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를 변경

- 특별손익의 수시공시의무 폐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30조 2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특별손익 관련 수시공시의무 및 공시 변경 사항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내용 중 손익계산서 구조가 변경되어 '특별손익' 항목이 폐지됨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상손익(실)' 용어의 변경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6조 1항 2호, 21조 1항 2호~3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를 변경
 -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경상손실'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로 변경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조 24항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정의
 - 대상이 되는 자회사 범위와 실제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기준상의 자회사 범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에 대비하여 개선함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

기 존	개 정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 1항 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

- 종래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기준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사항 >

공시의무사항 자회사 비중	부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여타 주요경영사항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 10% 이상	당일 공시	익일 공시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 10% 미만	익일 공시	공시의무사항 아님

<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

기 존	개 정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외국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변동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공시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변동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공시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상손실' 용어 변경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2호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실' 용어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로 변경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 변경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관련 매매거래정지 사유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5호 : 2007/5/14 개정, 5/17 시행)
 - 자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 시 매매거래를 정지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및 자회사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신고 의무 개정에 맞춰,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관련 매매거래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

○ 외국기업의 공시를 위한 환율환산 기준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5 : 2007/8/2 개정, 8/6 시행)

— 환율환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공시금액 화폐단위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 적용환율 기준 >

구 분		적용환율* 기준
수시공시상 공시발생금액		○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직전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공시 기준 금액	자기자본	○ 연도 중 증감분이 없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 연도 중 증감분이 있는 경우 - 최근 증감분 발생일(증자 납입일 또는 감자기준일 등 기준)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자산총액, 매출액,생산액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수시공시상 손익구조변경공시		○ 최근(직전) 사업연도 재무사항 - 최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 외국환거래규정 1-2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율

II. 금융투자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금산법에 의한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1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증권회사가 감독규정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다만,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 재무건전성 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 금산법에 의한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2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증권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증권업 허가기준도 준용

○ 한도초과 주식소유에 대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1-17조 5항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초과소유요건의 정기적 심사절차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7조 6항~7항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3의3 : 2007/6/28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증권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
 - 증권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로인 300% 이하로 완화
 - * 증권거래법령상 증권회사의 합병인가 요건에는 주요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없음

나. 영업 · 상품규제

-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증권회사의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36조의2 5항 : 2007/6/28 개정, 7/1 시행)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51조 1항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포함
 - 다만, 동법 2조 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동법 시행령 15조 2항 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
 - 기존에도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없었음

○ 신용거래시 연속 매매의 허용 (증권업 감독규정 5-10조 5항 : 2007/1/25 개정, 2/1 시행)

— 투자자가 보통거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통해서도 연속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식을 매도(T일)한 경우 매도결제일(T+2일) 고객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정된 현금도 신용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에 포함함

○ 대고객RP 대상증권의 특정화 및 거래내역 통지 의무화 (증권업 감독규정 5-37조의2·4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본점에서 영업점별·고객별·종목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업점에서 통장·원장에 매도종목명을 기재하지 않고 “환매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거래원장에 거래대상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도록 함으로써 고객개인별로 RP거래상황을 기록·관리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과 RP거래 성립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

- 고객이 RP매수증권 내역(매도가액,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거래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목명, 표면이율, 시장가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거래대상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보충 또는 인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

○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증권 대체시 사전동의 의무화 (증권업 감독규정 5-37조의4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종목대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유가증권보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대체 후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시장성 또는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증권으로의 대체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도시 고객의 원리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대고객RP 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비율의 설정 및 관리 (증권업 감독규정 5-37조의3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의 조건부매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동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매도기관의 부도시 고객의 원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부보대상 금융상품의 취약점을 보완

○ 거래대상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증권업 감독규정 5-33조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우량채권 또는 우량채권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RP형 CMA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3개 등급 이내로 함

○ 예탁기관에 의한 제3자 점검체계 구축 등 안전성 감시 인프라 구축 (증권업 감독규정 5-37조의4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조건부매도 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를 통하여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유지 여부 등에 대한 증권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변동내역 통지의무를 면제

- 취급 금융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하여 RP거래내용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RP 담보의 충분성에 대하여 제3자(증권예탁결제원)의 점검을 통해 RP거래의 안전성이 상시 모니터링 되도록 유도

○ 표준약관 수정사용시 사전보고 의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4-40조 : 2007/11/28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사용하는 경우 사후보고 하도록 규제를 완화

-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 보고의무를 시행일 즉시 보고로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약관변경 수요를 신속히 반영

○ 증권회사 신용공여제도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5-2조의2, 5-4조, 5-10조, 5-11조, 5-17조, 5-20조, 별표 11 : 2007/12/28 개정·시행)

—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은 매수대금의 40%

-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2일 연속 하한가로 하락(30% 하락) 하여도 감내할 수 있도록 140%로 정하고,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예탁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등에도 적용
- 고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예방이 기대됨
 - * 증권회사 신용공여 :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주식청약자금대출

—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 신용공여에도 'Know-your-customer-rule'이 적용되도록 증권회사가 융자금액, 조건 등을 정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의 적정화

-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 산정시 고객계좌 담보금액에 대한 차감률을 50%로 적용
 - * 신용공여의 위험액 = [대출금액-(담보금액 × (1-차감률))] × 위험율(8%)
- 종래에는 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아(차감률 0%) 고객계좌의 담보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위험액을 산정
- 신용공여 잔액이 많은 증권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영업용순자본을 유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향상이 기대됨

— 증권회사별 한도 및 위임 근거 마련

- 증권회사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 신용공여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감위 위원장이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요구방법의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5-1조 : 2007/1/25 개정, 2/1 시행)

— 증권회사가 담보부족계좌에 대하여 담보확보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가담보 요구방법을 개선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 또는 통화내용 녹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에는 내용증명우편과 통화내용 녹취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었음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가능하도록 함

○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6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로 상이한 시장조성 채권의 구분을 없애고 종목 수도 기존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

- 다만, 호가가 일부 채권(국채, 통안증권 등)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해서는 각각 1종목 이상의 호가를 반드시 제시

— 종목별 최소호가수량도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 구분 없이 1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 지속적인 호가제시의무도 연중에는 매매일의 2/3 이상, 일중에는 매매시간(09:00~15:00)의 2/3 이상으로 변경

-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4조 3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시장조성 이후 14일내 시장조성채권 변경금지를 호가를 제시한 당일에 한해 변경을 금지(호가변경은 가능)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 종목변경시 증권업협회를 통해 사전(직전영업일)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 폐지
 - 호가를 제시한 채권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에는 해당일 1일간은 호가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전량 매매체결시 호가 재제시 의무 삭제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5 4조 2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채권보유 및 확보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전량체결 된 이후 60분 이내에 체결된 채권과 동일한 종목에 대한 호가 재제시 의무 면제

-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 축소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4조 4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매매체결이 용이하도록 채권전문딜러의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를 채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축소
 - 거액 및 소액 투자자에 따른 호가수익률 범위의 차이를 폐지하고 국채는 30bp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이내로 축소

- 증권회사등의 대고객 응대의무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4조 5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한 실제거래는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의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된 수익률로 매매
 - 호가를 직접 제시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거액투자자의 매도주문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고수익간접투자기구” 용어의 정의 삭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9항~10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고수익간접투자기구”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자산운용회사 통합청약으로 제도를 개선

- 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9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포함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의 면제범위의 확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면제대상에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포함
 - 기존에는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인정했었음

- 인수회사의 제한적 수요예측 참여 허용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5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회사가 주식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 주식 주관회사 자격 제한의 완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가 될 수 없음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1% → 5%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기존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자격 제한

- 지분을 산정시 PEF를 통한 간접투자분 합산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시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분을 합산

- 증권회사 보유지분 등의 처분 제한 신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3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 공모를 위한 주 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상장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예탁받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

- 대량지분 보유법인에 대한 주관업무 수행시 공동주관의 의무화 신설 (유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주관
 - 다른 증권회사 : 당해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서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증권회사

-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자금 대출금지 신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8조 6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는 당해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용자를 할 수 없음

- 풋백옵션의 폐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1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도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 규정을 삭제

- 무보증사채 인수주관회사 자격 제한의 완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4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
 - 기존에는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

- 주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의 의무화 신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

- 인수업무조서 작성 및 보관의 의무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관련 사항
 -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조서와 관련 자료를 상당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을 이관
- 당해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상
 - 기존에는 동 규칙 18조에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었음

○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사항의 협회 통보 의무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7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
- 공시항목은 동 서식으로 이관

- 협회의 인수실적 공시의 의무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7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실적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기존에는 게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 불성실 수요예측 대상범위의 확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7조 3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에 대해서도 협회에 통보
 - 기존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일부만 청약한 자의 경우로 제한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7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당해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없음
 - 기존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 등을 제한할 수 있었음

○ 신용거래설명서의 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5 : 2007/1/26 개정, 2/1 시행)

— 신용거래설명서 중 신용거래 대상종목 및 추가담보 요구방법 관련 부분을 개정된 증권업 감독규정(5-8조) 및 동 시행세칙(5-1조)과 일치하도록 변경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5-3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여성의 세금우대생계형저축의 가입연령을 인하

- 만60세 이상 → 만55세 이상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

- 만 20세 이상인 자
-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복지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기존에는 만 2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 저축자별 저축한도 조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5-5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저축자별 저축한도를 조정

- 만 20세 이상인 자 : 2,000만원 이하
- 5-3조 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6,000만원 이하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감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6조 : 2007/7/25 개정 · 시행)

— 영업보고서 제출의무를 감경하는 「증권업 감독규정」의 개정내용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

-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감독규정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 2007/7/25 개정 · 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변경된 재무제표 항목을 영업보고서 서식에 반영

—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에 동일하게 기재되는 항목 중 보고서간 작성기준이나 서식이 다른 항목을 통일

○ 신탁 경영공시의 분리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5조의2 : 2007/7/25 개정·시행)

— 영업보고서에서 '신탁 경영공시' 사항을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분리하여 공시

- 사업보고서에는 고유부분에 대해서만 항목을 정하고 있어 영업보고서와 공시내용에 통일성이 없고,
- 신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12개사)의 대부분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임에 따라 신탁관련 공시항목을 영업보고서에 포함시킬 경우 개정된 증권업 감독규정과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 신용거래약관의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5 : 2007/1/26 개정, 2/1 시행)

— 신용거래약관 중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 용도제한 폐지,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신용거래 상황시한 자율화 및 신용거래계좌에서의 연속재매매 허용 조항을 증권업 감독규정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4 3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여성의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의 가입연령을 인하

- 만60세 이상 → 만55세 이상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

- 만 20세 이상인 자

-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복지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기존에는 만 2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 저축자별 저축한도 조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4 4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저축자별 자축한도를 조정

- 만 20세 이상인 자 : 2,000만원 이하
- 5-3조 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6,000만원 이하

○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34조 1항, 40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2조의2 시행 후부터 2008/12/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함

-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내용 반영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8 : 2007/8/29 개정, 8/30 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의 대고객 RP거래의 정의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서 ‘환매조건부매매’로 변경됨에 따라,
 -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관」을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으로 변경

- 수정약관의 보고기한 연장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3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표준약관 수정사용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 보고의무를 시행일 즉시 보고로 완화

- 고객통지 사항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5 12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는 항목에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추가

- 조건부매매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3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조건부매매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요건을 지정

- 조건부매매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록법인의 모집·매출된 사채권과 보증사채권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의 모집·매출된 채권
 - ABS, MBS 등으로서 모집·매출된 증권
- 신용등급요건 (국채 등은 제외)
 - Moody's의 Baa3 이상, S&P의 BBB- 이상, 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BBB 이상) 판정을 받은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보증한 채권

○ 개방형거래의 환매가격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6조 2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의 산정방식을 마련

-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 × {1+경과일수/365×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이율}

- 조건부매매시 매매이율의 고객고지 의무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7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또는 변경전)에 고지하여야 함

- 조건부 매매거래의 성립내용 통지 의무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8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 통지방법은 사전에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
 -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으로 통지

- 보관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유지 의무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9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의 조건부 매도 유가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시장가액이 105% 미달시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시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음

- 매도유가증권 종목의 대체시 고객사전동의 의무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10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보관·관리중인 매도유가증권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대체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고객의 환매청구권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7 11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일정한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고객
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환매수 또는 증권회사가 보관·관리중인 유가증
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재무건전성규제

○ 상장·공모 증권회사의 정기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2-67조 : 2007/5/3 개정·시행)

—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보
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다만, 사업연도말에는 기존과 같이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
고, 90일 이내에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
- 기존에는 모든 증권회사(54사)는 분기별(연 4회)로 영업보고서를 분
기말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고, 본·지점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시하여야 했음
- 또한 상장·공모 증권회사(27사)는 분기별로 사업(반기·분기)보고
서를 작성하여 분기말 종료 후 45일(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에 금
감위에 제출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여야 했음

- 이에 대해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는 제출시한이 동일하고, 포함되는 내용도 상당부분 유사하여 이중 제출 및 공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

○ 증권회사 결산서류의 정기적 제출의무 면제 (증권업 감독규정 2-66조, 2-69조 : 2007/5/3 개정, 2007회계 연도부터 시행)

— 증권회사(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 포함)가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금감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

- 금감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결산서류 요청 가능
- 기존에 증권회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결산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했음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점의 결산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했음
- 이로 인해 증권회사 결산서류에 포함되는 자료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과 중복되어 업무부담이 발생하였음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의 단축 (증권업 감독규정 2-67조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와 제출시한을 단축

	기 존	개 정
작성주기	분기별(연 4회)	월별(연 12회)
제출시한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다음 달 말일 이내

- 기존에는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이 늦음에 따라 감독 당국이 증권회사 영업활동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곤란하였음
-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3의2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 실적이 우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및 경영실태평가지 시장조성 실적 등 평가결과를 반영
- 출자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의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6-8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출자승인 신청을 서면에 의해서만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허용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가동(2006/8/1)으로 금융기관은 대다수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있음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내용 세분화 및 항목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13개 영업으로 세분화하는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제도를 도입
 - 영업부문별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은 추진 중인 '증권회사 리스크중심 감독(RBS)'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기존에는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거나 타 보고서와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총 46개 항목을 정비
 -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이사회·감사위원회 현황 등 활용도가 낮거나 타 보고서와 중복되는 총 35개 항목을 삭제
 - 투자자문업의 계약자산현황, 자산부채비율 등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던 총 11개 항목을 정비
- 증권회사의 재무제표 서식 개정 등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2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증권회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
 -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분류를 ‘유동성 배열’에서 ‘특성별 배열’로 변경하고, 손익계산서의 ‘특별이익(손실)’을 삭제
 -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일부 계정과목을 신설·조정
 - ‘지분법 자본변동’ 등 8개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미수금’을 ‘자기매매미수금’과 ‘위탁매매미수금’으로 분리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증권거래법 52조의5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비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증권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 (증권거래법 54조의3 3항~5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마련 (1-17조 2항~4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 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과 합산
- 증권저축수수료 징수 관련 규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5-58조 : 2007/11/2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 영위와 관련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가 필요 없는 수수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2. 자산운용회사

가. 진입규제

-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55조 1항 : 2007/12/28 개정·시행)
-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최소 운용자산규모를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향조정

- 금감위의 합병인가 심사기준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3년간 수익전망과 영업전략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재무건전성 기준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금감위의 전환인가 심사기준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조 : 2007/5/3 개정·시행)
 - 전환은 증권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자산운용업 허가요건을 적용함
 - 다만,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하여는 합병인가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 방법 명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조의2 1항~3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자산운용회사(동일 계열 금융기관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유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의 명시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7조의2 4항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동일계열 금융기관 포함)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조의2 5항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함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의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8-2호 : 2007/6/2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금융기관 또는 내국법인)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요건을 완화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함

나. 영업·상품규제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 확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61조의2~4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들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가 확대됨

- 판매회사로부터 취득권유 업무를 수탁받은 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 취득권유자의 취득권유 업무시 준수사항

- 업무수탁사실과 위탁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함
-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판매대금이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됨

— 취득권유자가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발생시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허용(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9조 6호 : 2007/12/2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장내파생상품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

- 종래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내파생상품의 범위가 국내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한정

○ MMF에 대한 당일 기준가격 매입·환매의 일부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58조 1항, 61조 2항 : 2007/12/28 개정·시행)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환매 청구일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투자자가 유가증권 등의 매도·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등 투자자가 거래 당일의 시장상황을 활용하여 선행매매(front-running)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
- 투자자의 청구 당일에 매입·환매가 가능해짐
 - * 미래가격 : 매입·환매 청구시점 이후에 산출되는 기준가격

○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비율 조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20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운영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을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50% → 10%

○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66조 : 2007/3/22 개정·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 투자일임계약의 개별성 유지 요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8조 1항~2항 : 2007/8/30 개정, 11/1 시행)

—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그 자산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
 - 고객은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투자자문회사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함
 -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이 그 자산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 투자자문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함
 -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해 고객의 조회가 가능
 - 자산운용상품간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하고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 감독규정에서 구분기준을 마련
- 자산운용회사의 편익 등의 범위·한도 등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22조 : 2007/12/28 개정, 2008/2/29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 등의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 간접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광고·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 판매회사의 임·직원 1인에 대한 동일회계연도의 편익 등의 제공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산운용협회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내로 정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편익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편익 등의 내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 부득이한 사유시 사후보고 가능
 - 편익 등의 범위와 제공범위 및 한도, 절차 등이 금감위 규정화됨에 따라 과도한 편익 등의 제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 고지의 강화 및 투자정보 제공의 확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및 사업 진행일정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
 - 부동산펀드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동 시공사의 신용등급, 총 지급보증·채무인수 내역을 함께 기재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개수와 규모를 기재

- 펀드매니저의 운용자산 규모가 관리 폭(span of control)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
- 특수한 구조의 펀드(모자형·종류형펀드)에 대해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 모자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모펀드의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
 - 종류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종류(class)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예 : 기준가격, 수익률)은 펀드 전체 및 종류별 내역을 함께 기재
 - * 모자형 펀드 :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 자펀드 자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의 펀드
 - * 종류형펀드 : 수수료·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투자설명서 관련 핵심설명서제도의 도입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설명서 ‘요약’을 ‘요약(핵심설명서)’으로 변경
- 핵심설명서제도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랑용지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기
-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

-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설명서 관련 기타 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비교지수(Bench mark)의 계속 사용
 - 다만, 비교지수를 파악하기 곤란(가격지표 변경 또는 공시중단 등)하거나, 주요 투자전략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식·주식관련상품(예 :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수익률을 그대로 사용
 - 기존에는 연 환산 수익률을 사용했음

다. 재무건전성규제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FOF의 투자한도 폐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70조 3항 : 2007/12/28 개정·시행)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E)는 분산투자 원칙에 기초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한도 등 재간접투자기구(FOF)의 분산투자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 재간접투자기구(FOF, Fund of Fund) :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의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별지 10-2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 위험률 차등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화함

- 펀드 규모별 위험률의 범위를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하여 펀드 규모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

○ 펀드의 탄소배출권 투자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조의2 : 2007/9/13 개정·시행)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에 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킴으로써 탄소펀드의 설정을 허용

- 탄소배출권 : 국제기구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내지 법인에게 부여하는 배출권

* 탄소펀드 :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펀드의 투자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펀드의 투자 대상에 배출권을 포함

— 탄소펀드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로서 금융회사는 탄소펀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자에게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투자수단을 제공

-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68조 : 2007/12/28 개정·시행)
 -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범위에 무보증사채가 발행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local credit agency)도 인정하여, 간접투자기구에 서 투자 가능한 외국무보증사채의 범위를 확대
 - 해외투자 국내간접투자기구의 다양한 투자 가능

-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 및 서식 개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3호~5호, 7호, 26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서』 24호)을 반영하여 자산 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정기보고서의 서식을 개정
 - 대차대조표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
 -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을 폐지하고, 유가증권관련 손익을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

- 자산운용보고서상 요약정보의 제공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정보'(요약)와 '상세정보'로 이원화
 - '기본정보'는 펀드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펀드성과 및 개괄적인 보유자산 현황 위주로 기술

○ 자산운용보고서에 상세한 운용정보의 제공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의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중 매매수수료비율을 별도 기재

•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매매수수료 비율 대신 '부동산 유지관리 보수비용 비율'을 기재

* 매매수수료비율 : 펀드가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회사(증권사등)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펀드 순자산 대비 비율

* 부동산 유지관리 보수비용 비율 :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부동산펀드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

— 외화자산의 평가금액은 작성 기준일 현재 원화환율로 환산하고, 원화로 환산하였음을 명시

○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의 단순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매매회전율 등의 전문용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 매매회전율 :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 펀드 보유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손익만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20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투자자가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보고서의 제공 목적을 쉽게 설명
 -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가 펀드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6조 2항~4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6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대주주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비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자산운용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94조 2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으로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
-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 → " 15% 이하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매입 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를 방지
- 영업인가 신청절차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8조 : 2007/10/15 개정·시행)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전에 예비인가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설립인가제도가 설립 후 영업인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절차 등을 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영업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

-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위탁계획의 적정성, 자산의 투자·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확인

○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3조 2항 : 2007/10/15 개정·시행)

—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로 제한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

-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의 조달과 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발행주식총수의 30%(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가 허용됨

3. 선물회사

가. 진입규제

○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5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선물업자가 감독규정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재무건전성 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 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주요출자자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것
 - 다만,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5 : 2007/5/3 개정·시행)
-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선물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선물업 허가기준도 적용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명시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유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의 명시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선물업 감독규정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함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선물업 감독규정 별표1의2 : 2007/6/28 개정·시행)

— 선물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선물회사의 대형화 및 선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

른 선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선물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선물거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완화

* 선물회사의 경우 선물거래법령상 합병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영업·상품규제

- 직무상 취득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선물거래법 시행령 12조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다. 재무건전성규제

-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선물업 감독규정 24조 : 2007/6/28 개정·시행)

— 선물업자의 기초위험액이 실제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 모든 고객의 미결제약정 유지증거금필요액에 대하여 기초위험액산정율을 10%로 적용하던 것을 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 유지증거금에 대하여는 이를 5%로 완화하여 적용

* 기초위험액 : 사고, 착오, 위법부당행위 및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물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며, 현재 선물업자 총위험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선물업 재무제표 서식 개정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4호 : 2007/6/28 개정·시행)

—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금융업)가 시행됨에 따라 선물업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동 기준서에 부합하도록 정비

< 서식 비교 >

	기존 시행세칙상 서식	기준서 제24호의 서식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를 유동성에 따라 유동과 고정으로 분류	자산·부채를 특성에 따라 분류*
손익계산서	특별이익·손실	특별이익·손실 항목을 삭제하고 중단사업이익·손실 항목 등을 신설

* 자산의 경우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유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분류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선물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선물거래법 38조의3 1항~4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원칙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해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등을 금지

- 예외적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

○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선물거래법 38조의4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해 정보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선물업자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선물거래법 40조
의2~3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선물업자에 대해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
회의 설치를 의무화

-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1/2 이상
-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감사위원 중 1인
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
-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선물업자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종합금융회사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전문가로 선임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6조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6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종합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6조의3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종합금융회사의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명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2항 : 2007/6/28 개정, 7/1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증권거래법」 51조 1항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포함
 - 다만, 동법 2조 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동법 시행령 15조 2항 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
 - 기존에도 종합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없었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5조의2 1항~3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펀드, 특정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한도초과 주식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5조의2 4항 : 2007/5/3 개정·시행)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수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검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5조의2 5항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5. 신탁회사

-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신탁업 감독규정 신탁업인가지침 13조~14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3년간 수익전망과 영업전략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합병후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장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신탁업 감독규정 신탁업인가지침 13조~14조 : 2007/5/3 개정·시행)
 - 전환은 기존 금융업의 폐지인가와 새로운 금융업의 신규인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신탁업 폐지 인가기준과 신탁업 영위 인가기준을 준용

- 다만, 재무건전성 및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합병인가 심사기준을 준용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신탁업 감독규정 35조의3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신탁업 감독규정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신탁업 감독규정 35조의5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6. 금융투자회사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조~5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조~8조, 10조 1항, 2편, 5편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4개의 인가업무와 2개의 등록업무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
- 인가업무(4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등록업무(2개):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를 나누어 규정

-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5항~6항, 46조~50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그 보호 수준을 달리함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조~21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조, 419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조~45조, 64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의 거래를 금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
해상충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조~
52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
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으로서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1조~282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으
로 기존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이외에,
 -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등 현행
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회사를 허용

-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1조,
5조~6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
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
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III. 증권행정감독

1. 법적규제기관

-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증권거래법 54조의3 6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했음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의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90조의6 3항~4항 : 2007/5/16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 발행인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감독분담금)을 합산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 분담금의 한도 산정방법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기존에는 각각의 법령에서 별도로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 산정방법을 정하여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분담금의 한도 산정방법도 다소 모호했음
-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6조 6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했음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선물업자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선물거래법 38조의3 5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심사시 증선위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의 반영의무 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조의2 3항 : 2007/3/29 개정, 9/29 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신용공여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기존의 의무적 반영제도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기업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 금융기관의 여신공여심사는 회사의 채무상환능력, 수익구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의2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의3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

-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6조의3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5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인수 회사채에 대한 시장조성시 가점 부여
 - 채권전문딜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조성효과를 제시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해당 체결수량을 1.2배로 환산하여 시장조성실적을 평가
 - * 시장조성실적 :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실적이 채권전문딜러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의 1%~2.5% 이상이어야 함
 -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의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채권전문딜러를 선정하여 금감원에서 반기별로 시장조성실적 우수 채권전문딜러를 대외 발표
 -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 감독원장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및 경영실태평가지 시장조성 실적 등 평가결과를 반영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요건 및 평가방법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8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지정요건 중 "시장조성자금 규모" 는 기존 채권딜링부서의 시장조성을 위한 할당자금에서 채권전문딜러 담당부서의 상품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월평균)채권잔고로 기준을 명확화
 - 항목별 점수 부여방식으로 평가방법 변경
 - 시장조성 활동 등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부여(반기별 100점 만점)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미달시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평가방법 변경
 - 2반기 연속 60점미만 또는 연간총점 120점미만인 경우 지정 취소

- 행정지도 일몰제(존속기한) 도입 (행정지도 운용규칙 8조 1항~2항·6항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한을 명시
 - 존속기한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2007/9/30까지 존속기한 설정
 - 일몰제 적용으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멸되므로, 사후 관리 현황 보고주기를 1년 단위로 실시

- 존속기한 연장시 사전보고 제도 도입 (행정지도 운용규칙 8조 3항~5항 : 2007/7/26 제정, 8/1 시행)
 - 감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기한(1년 이내) 연장 가능

- 다만, 존속기한 연장의 남용방지를 위해 존속기한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감위에 사전보고
- 중요 행정지도의 금융감독위원회 사전보고 (행정지도 운용규칙 6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중요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보고 가능
-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규정 (행정지도 운용규칙 3조~4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는 금융관련 법규상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행정지도시 취지, 내용, 행하는 자의 신분을 명시토록 하고 상대방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 불이행 사유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의견수렴, 전산등록 및 대외공개 등 규정 (행정지도 운용규칙 5조, 7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시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모든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전산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대외공개토록 함
 - 예외적인 경우 행정지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허용

- 금융감독원장의 서식제정 근거 명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7조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금감위 보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금감위 보고사항 : 임원변경, 최대주주·주요출자자(은행지주회사) 변경, 상호변경 등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변경시 사전예고 의무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2조~3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소관 과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는 규정안을 사전예고하여야 함
 - 사전예고 주체 : 금감위 소관 과와 금감원 소관 부서
 - 사전예고 내용 : 규정안 취지,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규제 신설·강화시 첨부) 등
 - 사전예고 방법 : 문서, 인터넷, 신문·방송 등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 내용을 반영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예고 생략이 가능
 - 규정변경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규정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변경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 등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4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사전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규정안에 대한 합동 간담회 종료 후에 「행정절차법」 43조에서 정하는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43조의 예고기간 : 20일 이상
 -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가능
- 제출의견의 처리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5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
- 감사원 제척제도 확대운용 근거 마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조의2 : 2007/7/20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의 운용이 가능함
 - 기존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감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

- 금융영역별 검사대상기관의 분류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조, 별표1 : 2007/6/28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 영역 : 은행, 중금사, 상호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 신탁회사, 여전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증권 영역 :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
 - 보험 영역 :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 감독분담금 산정 세부기준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조의2 : 2007/6/28 개정·시행)
 -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하여 금융영역별 투입 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은행·비은행 : 총부채 비율 100%로 산정
 - 증권 : 총부채 비율 60% 및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 보험 : 총부채 비율 70% 및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산정

- 감독분담금 면제기준 변경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4조, 별표2 4호 : 2007/6/28 개정·시행)
 - 감독분담금 면제기준을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으로 변경

○ 감독분담금 증가율 상한제(30%) 한시 적용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조 : 2007/6/28 개정·시행)

— 2006년 대비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면제

-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규 부과회사는 제외하고 2007년에 한하여 적용

○ 금융영역별 2007년도 분담요율 및 감독분담금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4조, 별표2 : 2007/6/28 개정·시행)

금 용 영 역	분 담 요 율	감독분담금
은행·비은행	총부채의 0.902355/1만	1,081억원
증 권	총부채의 4.211596/1만 및 영업수익의 7.558633/1만	330억원
보 험	총부채의 1.516966/1만 및 보험료 수입의 1.752673/1만	520억원
계	-	1,931억원

*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법시행령 12조) : 총자산의 15/10,000

○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근거의 마련 (정관 9조의3 : 2007/4/11 개정, 일반 공모증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신주공모,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DR 발행 및 긴급 자금조달 경우 등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

— 외국거래소와 제휴·협력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증권선물거래소법 21조 1항 (1인당 소유한도의 예외)

- 제3자 배정방식의 CB/BW 발행 근거의 마련 (정관 10조의2~3 : 2007/4/11 개정, 해외 CB/BW 발행의 경우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 부터 시행)
 - 일반공모, 해외 CB/BW 발행 및 긴급 자금조달 경우 등
 - 상장회사 표준정관 14조, 15조
 - 외국거래소와 제휴·협력을 위해 CB/BW를 발행하는 경우
 - 증권선물거래소법 21조 1항
 - * CB/BW 발행한도는 각 1,500억원(자기자본의 약10%), 행사가격/신주발행가격은 주식의 액면가격 이상으로 제한

- 우선주 발행근거의 마련 (정관 9조의2 : 2007/4/11 개정·시행)
 - 무의결권 주식, (배당)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발행
 - 상장회사 표준정관 8조의2
 - * 발행한도 : 4,000만주(수권주식의 25%), 최저배당율 : 10%(액면기준)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근거의 마련 (정관 9조의5 : 2007/4/11 개정,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부여방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 부여대상 : 회사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 기여 임직원
 - 행사가격/요건 등 : 증권거래법상 제한을 그대로 수용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의3
 - 증권거래법(189의4조) 및 시행령(84의6조)의 제한과 동일하게 반영
 -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Min[3%, 60만주](이사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근거의 마련 (정관 9조의6 : 2007/4/11 개정 · 시행)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여방법 :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 행사가격/요건 등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제한을 그대로 수용
 - 근로자복지기본법(32의2조)의 제한과 동일하게 반영
 -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20%(주주총회), 10%(이사회)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근거의 마련 (정관 9조의8 : 2007/4/11 개정 · 시행)
- 주식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
 - 상장회사 표준정관 11조
 - 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함 (상장규정 35조 1항 15호)
- 신주의 배당기산일 의제 (정관 9조의7 : 2007/4/11 개정 · 시행)
-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의제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의4
 -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다른 경우 신주상장을 제한함 (상장규정 103조 1항 2호)
- 공고에 의한 주총 소집통지 생략 근거의 마련 (정관 11조 : 2007/4/11 개정·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1% 이하 주주에게는 주총소집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 19조
- 집중투표제 적용 배제근거의 마련 (정관 19조 : 2007/4/11 개정·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
 - 상장회사 표준정관 30조
 -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자동으로 적용 (상법 382조의2 1항)
- 주식양도 제한의 폐지 (정관 58조 : 2007/4/11 개정·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상장전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
 - 상장전 주주구성 변경 방지를 위하여 상장전까지는 양도제한규정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둠
 - 주식양도제한이 없을 것을 상장요건으로 규정 (상장규정 32조 1항 14호)

- 수권자본금의 증액 (정관 6조 : 2007/4/11 개정 · 시행)
 - 납입자본금 증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증액
 - 4천억원(8천만주) → 8천억원(1억6천만주)
 - * 납입자본금(2천억원, 증자후 기준)의 4배

- 구분계리의 폐지 (정관 56조 : 2007/4/11 개정 · 시행)
 - 영업에 관한 수익과 비용의 본부별 구분계리 규정을 삭제
 - 단일 주식회사인 증권선물거래소에 적합하지 않고, 본부별 수익/비용 산출이 무의미함

- 배당평균적립금의 신설 (정관 54조 : 2007/4/11 개정 · 시행)
 - 안정적 배당정책의 수행을 위해 배당평균적립금을 신설
 - 보유자금 용도의 명확화 및 향후 순익 감소시에도 배당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타기관 사례 : KOGAS 2,193억원, 포스코 3,777억원, 한전 2,100억원

2. 자율규제기관

-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조, 부칙 3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기존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인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
 -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호가정보의 집중 및 협회 보고의무 부과 (증권업 감독규정 5-31조의2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채권 장외거래시 호가정보의 집중 및 공시업무를 증권업협회가 수행하도록 규정
 - 종래에는 증권업협회가 장외 채권거래수익률 등 장외거래 정보 공시업무를 금감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에 대하여 호가정보,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에 대한 증권업협회 보고의무 부과
 - * 증권회사등 : 증권업감독규정 5-26조 8항에서 정하는 채권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호가정보 및 매매거래 내역 등의 공시근거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5-31조 2항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호가집중 및 공시업무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및 매매·중개거래내역 등 관리·공시근거를 신설
 - 종래 증권회사등의 거래체결 내역 보고의무는 증권업협회의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그 시행근거를 규정에 반영

-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이행 확보수단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5-31조 3항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채권 장외거래시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에 대하여 호가정보를 사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 일원화 (시장감시규정 22조 1항 : 2007/10/12 개정, 11/1 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이상의 회원제재권을 이사회에서 시장감시위원회로 이관

- 업무관련규정 위반의 회원제재사유 조항 정비 (시장감시규정 21조 2호 : 2007/10/12 개정, 11/1 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제재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업무관련규정 위반”의 회원제재사유 조항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맞춰 정비
 - “시장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IV. 상장법인

1. 기업경영감시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8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2. 지원 · 관리제도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재무관리 기법 · 관행의 선진화로 직접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
 - 종래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율적 재무관리에 애로 발생

V. 기업구조조정

1. 일반기업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
 - * 채권금융기관 : 해당 기업(신용공여 합계액 500억 이상)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방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5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한해서는 서면의결도 가능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6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자산운용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각 1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업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7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9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 주식보유 제한의 예외를 인정

- 신용공여의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3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정함

- 다만, 법 적용 대상기업 및 주채권은행의 선정 시에는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에 집중되는 계정과목 및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금액을 산정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4~5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80조 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최근 월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
 - 매반기 정기(2월말 및 7월말) 신용위험평가 기준시점 → 가장 최근의(최근 월말) 신용위험평가 기준시점
-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6조 1~2항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와 필요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7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금융관련법상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완료·중단된 날부터 2년까지)을
연장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감위에 그
승인을 신청

2. 금융기관

- 소규모 회사에 대한 인가제도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3조 1항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지주회사를 제외
 -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배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7조 1항
3호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를 허용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2조 1항
2호~3호, 43조의2, 70조 2항 1호의2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5조의2, 7조 2항, 58조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가 되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위법관계를 해소하도록 함
 - 법 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인 자산총액 기준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3조의4 : 2007/11/12 개정·시행)
 -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없었음

- 금융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의4 : 2007/11/12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않을 것

-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지배관계 허용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의5 : 2007/11/12 개정·시행)
 -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PEF 출자총액의 30% 미만일 것
 - 금융기관이 PEF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PEF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의 구체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의6~7 : 2007/11/12 개정·시행)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주식소유의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설정 요건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3조 1항 4호 나목, 15조 1항 1호 : 2007/11/12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대출자자이고, 해당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며 해당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회사의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전체로 확대

-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사후승인제도의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4항~5항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명시

-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의 승인요건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6항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함에 있어 그 심사요건을 명시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의2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의3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

-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 2년간의 유예기간 마련
 -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 규정을 적용

-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5조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본 법 시행당시까지 24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본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림

- 금산법에 의한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1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증권회사가 감독규정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다만,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 재무건전성 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 금산법에 의한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12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증권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증권업 허가기준도 준용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인가시 심사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 1항, 별표1 2호 : 2007/5/3 개정·시행)

— 영업계획의 적정성

-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재무건전성

- 합병 후에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건전성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 (금융기관)
- 추가출자예상액이 자기자본 이내 (금융기관, 내국법인, 외국법인)
- 추가출자예상자금 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공통)

- 부채비율이 200% 이하 (금융기관, 내국법인)
-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한 것이 아닐 것 (공통)

○ 금융지주회사의 전환 인가시 심사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0조 6항 : 2007/5/3 개정 · 시행)

— 금산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가시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설립 인가 요건 등을 준용

- 다만,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해서는 합병인가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

○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11조의2 : 2007/12/13 개정 · 시행)

—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해당 자회사의 주주권 변동사유 : 해당자회사 주식의 “이익소각”
- 해당 자회사주식 취득사유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
- 금융기관이 긴급하게 해당 자회사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3항 5호)상 타법인 주식취득시 사후승인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위임례와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하여 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5 1항 : 2007/12/13 개정·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

- 당해 본국 금융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이상일 것

○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요건 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5 2항 : 2007/12/13 개정·시행)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계열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제에 적합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6 : 2007/12/13 개정·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권 변동사유 :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이익소각”
- 금융지주회사주식 취득사유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
- 금융기관이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3항 5호)상 타법인 주식취득시 사후승인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위임례와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변경승인의 세부요건 및 신청방법등 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7, 별표 1-3 : 2007/12/13 개정·시행)

- 비은행지주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대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의 세부요건 및 승인의 신청방법·절차 등을 규정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
 - 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등 국가기관의 수사·조사·검사 등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유예
 - 금감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

- 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완료 후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 보고
 - 승인 신청서 서식은 감독원장이 제정
- 금융지주회사 임원으로 선임가능한 제재 후 기간경과 기준 설정(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3조의6 : 2007/12/13 개정·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제재 후 경과기간을 규정
 - 임원제재 : 해임권고 5년·업무집행정지(종료일) 4년·문책경고 3년
 - 직원제재 : 면직 5년·정직(종료일) 4년·감봉(종료일) 3년
-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인정을 위한 경영투명성 등 요건 마련(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3조의7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조언·시정 권고 및 업무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 금융지주회사는 상기 권한 행사시 완전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소비자권익·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비밀을 유지할 것
 -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것
- 주권상장으로 인정되는 해외시장의 범위 설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4조의2 : 2007/12/13 개정·시행)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이상 미국)
 - 동경증권거래소(일본), 홍콩증권거래소(중국), 싱가포르증권거래소(싱가포르)
 - 런던증권거래소(영국), 도이치거래소(독일), 유로넥스트 파리(프랑스)
 -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 외국자회사 주식소유기준 완화 소명과 관련한 요건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4조의3 1항 : 2007/12/13 개정·시행)
-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기준 완화 소명과 관련하여 경영 관리가 가능한 방법의 규정
 - 자회사·손자회사의 현직 임직원을 외국자회사 임원으로 선임(겸직)하는 방법
 -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퇴임 임직원을 외국자회사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 과반수 선임권을 보유하는 방법
-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4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시 금감위 사후보고 대상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법령 제·개정내용 반영, 인허가 내용 반영 또는 기타 단순 자구수정 등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공고해야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설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3조 2항 : 2007/12/13 개정·시행)
 - 공고대상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결대차 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 요건 정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1 2호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이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인 경우 대주주등 요건 충족 여부를 그 업무집행사원·30%이상 유한책임사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비

- 은행지주회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시한 정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2조 6항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6조의7)에서 은행지주회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 동 주주가 적격성심사를 위해 금감위에 제출하는 심사서류 제출시한(1개월)의 기산점도 “매분기 말”에서 “매반기 말”로 정비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5조 3항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LOPECM평가방식에서 RFI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평가 부문 등을 정비

기 존	개 정
① 주력자회사(L) ② 여타자회사(O) ③ 금융지주회사(P) ④ 수익성_연결(E) ⑤ 자본적정성_연결(C) ⑥ 경영관리능력(M)	① 리스크관리(R : Risk Management) - 세부평가부문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내부통제 ② 재무상태(F : Financial Condition) - 세부평가부문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③ 잠재적 충격(I : Impact) - 세부평가부문 : 금융지주회사, 여타자회사등, 내부거래

—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 부문에 대한 분기별 간이계량평가 (CAEL평가)제도를 도입

- 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권역에서도 실시 중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보고시한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8 3항 : 2007/12/13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 50대 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시한(1개월)의 기산점 조정

- 정기주주총회일 →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

○ 개인신용정보 업무지침서 보고제도 정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4조의2 3항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업무지침서 제·개정시 보고주체를 금융지주회사로 일원화하고 제출시한도 개선

- 금융감독원장의 서식제정 근거 명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7조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금감위 보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금감위 보고사항 : 임원변경, 최대주주·주요출자자(은행지주회사) 변경, 상호변경 등

- 금융지주회사그룹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의 세부사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12조 2항~5항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LOPECM평가방식에서 RFI(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평가방식으로 변경되고, 재무상태(F) 부문에 대한 분기별 간이계량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평가항목·평가비중·등급별 정의 등을 정비
 - 분기별 간이계량평가방법 설명

-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 2호가목·3호 나목(1)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유동성비율 산정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자산·부채에 난외 파생상품거래를 포함

- 업무보고서 정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8호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및 금융지주회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된 업무보고서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업무보고서를 정비
 - 2개 항목 폐지(유사내용 통합) 및 41개 항목 개정

VI. 기타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8조의2 : 2007/12/21 개정, 2008/6/22 시행)

— 동법을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따른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 자산양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금감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5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가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6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다수의 행정부처간 및 금융업종간 효율적인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경영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7조, 9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정부는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하며,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 금융시장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짐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0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3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
 -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에 대한 지원과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자자금이체한도 하향 조정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표 1 : 2007/9/13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
 - 다만, 1회 현금 인출한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한도축소 폭은 최근거래 현황, 주요국의 사례 및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기 존	개 선
1회 인출한도	100만원	100만원
1일 인출한도	1,000만원	600만원
1회 이체한도	1,000만원	600만원
1일 이체한도	5,000만원	3,000만원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은행업 감독규정 54조의2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펀드, 특정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은행업 감독규정 54조의3 : 2007/5/3 개정·시행)

— 긴급한 타회사 주식 소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고시하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은행업 감독규정 54조의4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 관련 내용 추가 (은행업 감독규정 30조 1항, 5항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금융기관은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운영리스크 추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운영리스크를 별도의 리스크로서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추가

-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초과 투자지분의 차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지분을 15% 이상)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 다만,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차감의 예외로 인정
 - * ex. 산업은행의 한국전력 주식 초과보유분

- 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 사용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하한의 설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개시일 이후 소요자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간 신소요자기자본이 구소요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미달시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자산을 분모에 가산
 - 1차년도 : 90%, 2차년도 : 80%

-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2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감독원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신용평가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 요건 :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 익스포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 기존의 별도 구분 없는 기업, 소매, 상업용부동산 담보, 고위험, 연체 익스포저를 익스포저 유형에 추가하고,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실질 리스크 크기에 대응해서 위험가중자산이 산출되도록 함
 - 은행의 신용회피 노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
 - 적격담보 및 적격 보증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난내자산상계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추가로 인정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3장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은행이 자체 추정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승인신청
 - 감독원장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 부도시손실률의 업무활용여부, 내부등급법 적용전 신용평가시스템 사전 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리스크 측정요소 :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자체 추정하는 리스크 측정요소의 범위에 따라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

• 기본내부등급법 : 부도율만 자체 추정

* 소매 익스포저의 경우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하여 자체 추정

• 고급내부등급법 :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저 등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하여 자체 추정

— 내부등급법을 사업부문별·익스포저 유형별로 3년 이내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부문별·익스포저 유형별 신용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전체의 15% 이하인 경우 동 익스포저를 표준방법으로 산출 가능

— 내부등급법 사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정함

• 내부등급법 사용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운영, 통제구조 및 감시, 내부신용등급의 활용, 리스크의 계량화,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유동화익스포저의 처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4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유동화익스포저 해당여부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여부 등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특수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화익스포저에서 제외

- 기초익스포저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트렌치로 재구성되어 있고, 해당 트렌치의 원리금상환이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
- 전통적 유동화 및 합성 유동화에서 리스크이전 인정요건을 구체화함
- 전통적 유동화에서의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 * 기초 익스포저의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 * 양도인은 양도된 익스포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 * 양도자산은 법적으로 양도인과 분리될 것 등
 - 합성 유동화에서의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 *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감기법 요건을 충족할 것
 - * 기초 익스포저의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 *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한 상품 또는 계약이 신용리스크의 이전을 제한하지 않을 것 등
-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유동화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
- 표준방법의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 내부등급법에서의 유동화익스포저의 소요자기자본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내부평가법 또는 합수법에 의해 산출
 - * 표준방법에 비하여 신용등급 및 선순위 여부 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

—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익스포저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한도로 함

- 표준방법의 경우에도 2007/12/31 현재 보유중인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기초익스포저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한도로 유동화익스포저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정

○ 운영리스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운영리스크는 총이익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 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으로 산출 (5장)

-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하위방법으로 산출방법 변경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급측정법은 사전에 고급측정법 최소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할 수 있음

— 최소요건 (3장)

-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구조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운영표준방법 적용은행에 대해 해당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함
-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기간 및 측정시스템, 내·외부 손실데이터, 시나리오 분석, 적합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6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함
-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운영토록 함
- 이사회에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부과하고, 경영진에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운영과 관련정책 및 절차 마련의 책임을 부과
- 은행은 중요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여야 함
- 은행은 적절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부칙 4조 7항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신BIS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장치를 마련
 - 기존기준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은행에 대하여는 2008년 중 기존기준 잔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 2008년 중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으로 기존기준과 신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중 은행에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가능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의 보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 등을 추가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사항의 신설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등록요건 관련 현황을 영업보고서 내용에 신설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현황 항목의 보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항목에 모든 상품이 포함되도록 국채, 특수채, 주식, 외국발행 채권·주식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상품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를 추가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운용지시 현황 항목의 보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업무보고서 아직 운용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대기성자금을 표시하기 위해 '기타'란 항목을 추가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지시 세부내역의 수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종류와 분류기준 등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내용에 맞게 수정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성과 총괄기능 강화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적립금 운용손익 서식이 적립금 운용성과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작성 되도록 하기 위해 각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표를 수정하고, 보험상품 관련 표를 신설

- 자산관리보고서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항목의 보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급여 지급현황 양식에 '중도인출' 항목을 추가

- 기타 공통사항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개인퇴직계좌를 기업형 및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로 구분
 - 보고서 서식의 금액작성 기준단위를 '천원'으로 통일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3조~5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6조~8조, 10조 1항, 2편, 5편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4개의 인가업무와 2개의 등록업무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
- 인가업무(4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 등록업무(2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를 나누어 규정

○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 (9조 5항~6항, 46조~50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그 보호 수준을 달리함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

(12조~21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

(40조, 419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44조~45조, 64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의 거래를 금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51조~52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74조, 176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와 대상의 확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

— 증권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181조~282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이외에,

-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 · 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등 현행 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 · 회사를 허용

○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

(283조, 부칙 3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기존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인 한국증권업협회 ·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

-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 승계

○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 (부칙 1조, 5조~6조 : 2007/8/3 제정, 2009/2/4 시행)

—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증권거래법

○ 공개매수신고 관련 공휴일의 범위 확대

(21조의2 2항 : 2007/3/29 개정, 6/29 시행)

— 공개매수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이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그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52조의5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비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증권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
(54조의3 3항~5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54조의3 6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했음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3. 증권거래법 시행령

○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의 개선 (90조의6 3항~4항 : 2007/5/16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 발행인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감독분담금)을 합산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 분담금의 한도 산정방법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기존에는 각각의 법령에서 별도로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 산정방법을 정하여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분담금의 한도 산정방법도 다소 모호했음

○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증권회사의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명시

(36조의2 5항 : 2007/6/28 개정, 7/1 시행)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51조 1항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포함
 - 다만, 동법 2조 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동법 시행령 15조 2항 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

- 기존에도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없었음

○ 불공정거래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2조의3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시장에 주식선물 등 새로운 선물상품을 신규상장함에 따라, 기존 선물옵션에 적용되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식선물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선물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
(16조 2항~4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16조 6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했음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6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대주주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비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자산운용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 확대 (61조의2~4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들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가 확대됨
- 판매회사로부터 취득권유 업무를 수탁받은 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 취득권유자의 취득권유 업무시 준수사항

- 업무수탁사실과 위탁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함
- 투자자로부터 증권에의 판매대금이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됨

— 취득권유자가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발생시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94조 2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

-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 → " 15% 이하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매입 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를 방지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허용

(9조 6호 : 2007/12/2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장내파생상품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

- 종래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내파생상품의 범위가 국내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한정

○ MMF에 대한 당일 기준가격 매입·환매의 일부 허용

(58조 1항, 61조 2항 : 2007/12/28 개정·시행)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환매 청구일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투자자가 유가증권 등의 매도·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등 투자자가 거래 당일의 시장상황을 활용하여 선행매매(front-running)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
- 투자자의 청구 당일에 매입·환매가 가능해짐

* 미래가격 : 매입·환매 청구시점 이후에 산출되는 기준가격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FOF의 투자한도 폐지
(70조 3항 : 2007/12/28 개정 · 시행)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E)는 분산투자 원칙에 기초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한도 등 재간접투자기구(FOF)의 분산투자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 재간접투자기구(FOF, Fund of Fund) :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 완화 (155조 1항 : 2007/12/28 개정 · 시행)
 -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최소 운용자산규모를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향조정

6. 선물거래법

- 선물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38조의3 1항~4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원칙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해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등을 금지
 - 예외적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

○ 선물업자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38조의3 5항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38조의4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해 정보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선물업자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자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40조의2~3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선물업자에 대해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1/2 이상

-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
-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선물업자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선물거래법 시행령

- 선물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 유형의 추가 (7조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를 추가
- 직무상 취득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12조 : 2007/12/20 개정·시행)
 -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38조의2 : 2007/12/21 개정, 2008/6/22 시행)

- 동법을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따른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 자산양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금감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심사시 증선위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의 반영의무 폐지
(16조의2 3항 : 2007/3/29 개정, 9/29 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신용공여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기존의 의무적 반영제도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기업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 금융기관의 여신공여심사는 회사의 채무상환능력, 수익구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10. 금융지주회사법

- 소규모 회사에 대한 인가제도 완화 (3조 1항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지주회사를 제외
 -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배 허용
(7조 1항 3호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를 허용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2조 1항 2호~3호, 43조의2, 70조 2항 1호의2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5조의2, 7조 2항, 58조 : 2007/8/3 개정, 2007/11/4 시행)

-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가 되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위법관계를 해소하도록 함
 - 법 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1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인 자산총액 기준 신설

(3조의4 : 2007/11/12 개정·시행)

-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없었음

○ 금융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요건

(5조의4 : 2007/11/12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않을 것

○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지배관계 허용요건

(5조의5 : 2007/11/12 개정 · 시행)

—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PEF 출자총액의 30% 미만일 것
- 금융기관이 PEF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PEF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의 구체화 (5조의6~7 : 2007/11/12 개정 · 시행)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주식소유의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설정 요건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

(13조 1항 4호 나목, 15조 1항 1호 : 2007/11/12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대출자자이고, 해당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며 해당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회사의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전체로 확대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사후승인제도의 신설

(24조 4항~5항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명시

○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의 승인요건 신설

(24조 6항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함에 있어 그 심사요건을 명시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 신설 (24조의2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24조의3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

-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4조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 2년간의 유예기간 마련
 -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 규정을 적용

-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5조 : 2007/1/26 개정, 4/27 시행)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본법 시행당시까지 24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본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림

1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5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전문가로 선임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
(16조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6조의2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
 - 종합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16조의3 : 2007/7/19 개정, 2008/1/19 시행)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종합금융회사의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명시

(6조의4 2항 : 2007/6/28 개정, 7/1 시행)

— 종합금융회사가 「증권거래법」 51조 1항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포함

- 다만, 동법 2조 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동법 시행령 15조 2항 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
- 기존에도 종합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독립된 규정이 없었음

1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5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가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 (6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다수의 행정부처간 및 금융업종간 효율적인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

(7조, 9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정부는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하며,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 금융시장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짐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조 : 2007/12/21 제정, 2008/3/22 시행)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

-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에 대한 지원과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2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

* 채권금융기관 : 해당 기업(신용공여 합계액 500억 이상)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방법 (5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한해서는 서면의결도 가능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6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자산운용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각 1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업무 (7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9조 : 2007/10/31 제정, 11/4 시행)
 -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 주식보유 제한의 예외를 인정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영업인가 신청절차 등 (8조 : 2007/10/15 개정·시행)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전에 예비인가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설립인가제도가 설립 후 영업인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절차 등을 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영업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

-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위탁계획의 적정성, 자산의 투자·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확인

○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13조 2항 : 2007/10/15 개정·시행)

—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로 제한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

-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의 조달과 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발행주식총수의 30%(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가 허용됨

18.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제정안)

○ 사외이사의 선임 (3조 : 2007/2/23 입법예고)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 감사위원회의 설치 (4조 : 2007/2/23 입법예고)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 상근감사의 선임 (6조 : 2007/2/23 입법예고)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

- 소수주주권의 행사 (9조 : 2007/2/23 입법예고)
 -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9조 : 2007/2/23 입법예고)
 -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10조 : 2007/2/23 입법예고)
 -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12조 : 2007/2/23 입법예고)
 - 상장법인에 대해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

- 일반공모증자 (18조 : 2007/2/23 입법예고)
 - 상장법인의 경우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이익배당의 특례 (21조 : 2007/2/23 입법예고)
 - 상장법인의 경우 정기·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배당을 할 수 있음

1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개정안)

- 상장심사기능의 자율규제위원회 이관 (17~20조 : 2007/10/12 입법예고)
 - 상장심사기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
 - 자율규제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거래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24조의2 : 2007/10/12 입법예고)
 - 상장 후 거래소 수수료 인상을 통한 독점이윤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심의를 위한 공익위원회로서 “거래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설치

20. 상법 회사편(개정안)

-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간소화 (318조 3항 : 2007/8/27 입법예고)
 -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363조 5항~8항 : 2007/8/27 입법예고)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생략을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 절약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 (542조의6~7 : 2007/8/27 입법예고)
 -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지분율은 낮추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 주주의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명문화
 - 단, 6개월 보유요건은 미적용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져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권의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542조의13 : 2007/8/27 입법예고)
 -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마련

-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확대 (542조의3 : 2007/8/27 입법예고)
 - 당해 회사 이외에도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
 -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10% 이하 범위에서 부여 허용

-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방법 등 완화 (542조의4 : 2007/8/27 입법예고)
 - 상장회사는 신탁업자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부여

-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542조의5 : 2007/8/27 입법예고)
 - 지분을 1%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542조의8 : 2007/8/27 입법예고)
 -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도입 또는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의결할 경우, 3% 이상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불인정
 -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원할 경우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 사외이사의 선임 (542조의9 : 2007/8/27 입법예고)

- 소규모 상장회사를 제외한 일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 소규모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542조의10 : 2007/8/27 입법예고)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예외를 허용
- 대규모 상장회사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

○ 상장회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542조의11~12 : 2007/8/27 입법예고)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 선임,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상장회사 재무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 (542조의14~20 : 2007/8/27 입법예고)

-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액면 미만의 주식 발행을 허용
-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가격산정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면 감사인의 검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면제
-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간배당 이외에도 3월, 6월, 9월 말에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상증자, 배당, 기타 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방법을 따르도록 함
-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및 양수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556조 1항, 571조 2항, 607조 1항 등 : 2007/8/27 입법예고)

-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원총회의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이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개념 명확화 (49조, 68조 : 2007/5/16 개정·시행)
 -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정의
 - 기존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해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상의 자회사 범위와 차이가 나는 경우, 공시와 자회사 관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음
 - * 종전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 :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유가증권예탁증서의 전매가능성 여부 명확화 (12조 : 2007/5/16 개정·시행)
 - 유가증권예탁증서도 그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전매가능성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
 - 기존에는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예탁증서가 전매가능성 기준에 포함·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 전매가능성 기준 : 유가증권발행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전매가능성) 유가증권의 모집과 동일하게 간주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69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56조 : 2007/12/28 개정·시행)
 - 재무관리 기법·관행의 선진화로 직접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
 - 종래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율적 재무관리에 애로 발생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59조의2 : 2007/12/28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을 확대

- 종래에는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 가능한 해외거래소가 지정되었음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영 (6조~8조 : 2007/5/16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삭제
 -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

3. 증권업 감독규정

- 신용거래시 연속 재매매의 허용 (5-10조 5항 : 2007/1/25 개정, 2/1 시행)
 - 투자자가 보통거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통해서도 연속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식을 매도(T일)한 경우 매도결제일(T+2일) 고객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정된 현금도 신용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에 포함함

○ 금산법에 의한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1-11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증권회사가 감독규정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다만,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 재무건전성 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 금산법에 의한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1-12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증권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증권업 허가기준도 준용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마련 (1-17조 2항~4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 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과 합산

○ 한도초과 주식소유에 대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 명시

(1-17조 5항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초과소유요건의 정기적 심사절차 마련 (1-17조 6항~7항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상장·공모 증권회사의 정기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2-67조 : 2007/5/3 개정·시행)
 -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다만, 사업연도말에는 기존과 같이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
 - 기존에는 모든 증권회사(54사)는 분기별(연 4회)로 영업보고서를 분기말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고, 본·지점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시하여야 했음
 - 또한 상장·공모 증권회사(27사)는 분기별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말 종료 후 45일(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여야 했음
 - 이에 대해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는 제출시한이 동일하고, 포함되는 내용도 상당부분 유사하여 이중 제출 및 공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

○ 증권회사 결산서류의 정기적 제출의무 면제

(2-66조, 2-69조 : 2007/5/3 개정, 2007회계 연도부터 시행)

— 증권회사(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 포함)가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금감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

- 금감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결산서류 요청 가능
- 기존에 증권회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결산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했음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점의 결산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했음
- 이로 인해 증권회사 결산서류에 포함되는 자료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과 중복되어 업무부담이 발생하였음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의 단축

(2-67조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와 제출시한을 단축

	기 존	개 정
작성주기	분기별(연 4회)	월별(연 12회)
제출시한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다음 달 말일 이내

- 기존에는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이 늦음에 따라 감독 당국이 증권회사 영업활동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곤란하였음

○ 대고객RP 대상증권의 특정화 및 거래내역 통지 의무화

(5-37조의2·4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본점에서 영업점별·고객별·종목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업점에서 통장·원장에 매도종목명을 기재하지 않고 “환매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거래원장에 거래대상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도록 함으로써 고객개인별로 RP거래상황을 기록·관리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과 RP거래 성립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
 - 고객이 RP매수증권 내역(매도가액,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거래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목명, 표면이율, 시장가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거래대상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보충 또는 인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

○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증권 대체시 사전동의 의무화

(5-37조의4 : 2007/6/28 개정·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종목대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유가증권보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대체 후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시장성 또는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증권으로의 대체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도시 고객의 원리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대고객RP 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비율의 설정 및 관리

(5-37조의3 : 2007/6/28 개정 · 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는 고객의 조건부매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동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

- 매도기관의 부도시 고객의 원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부보대상 금융상품의 취약점을 보완

○ 거래대상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5-33조 : 2007/6/28 개정 · 시행)

— 대고객RP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우량채권 또는 우량채권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RP형 CMA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3개 등급 이내로 함

○ 예탁기관에 의한 제3자 점검체계 구축 등 안전성 감시 인프라 구축

(5-37조의4 : 2007/6/28 개정 · 시행)

— 대고객RP 매도 금융회사가 조건부매도 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를 통하여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유지 여부 등에 대한 증권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변동내역 통지의무를 면제

- 취급 금융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하여 RP거래내용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RP 담보의 충분성에 대하여 제3자(증권예탁결제원)의 점검을 통해 RP거래의 안전성이 상시 모니터링 되도록 유도

-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5-33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대고객RP 거래대상유가증권을 공모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채권,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까지 확대
 -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범위를 시장성(환금성 확보)과 적정성(담보가치의 일일평가 및 예탁관리)이 확보되어 고객보호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유가증권까지 확대

-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 확대 (5-26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기관간RP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
 - RP거래 수요가 있고 자금운용여력이 있는 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기관간 RP거래 활성화를 도모

- RP거래의 정의 변경 (5-26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수(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도(또는 매수)하는 거래를 환매조건부매매로 정의
 - 기관간 RP 거래대상에 채권 이외에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투자자의 보유 유가증권 활용도 제고 및 자금조달 수단의 확대 도모

- RP거래의 정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용어 정비 (2-5조, 2-24조, 5-25·26조, 5-33·34조, 5-38조, 별표11, 5-40조 : 2007/6/28 개정, 12/1 시행)
 - RP거래의 정의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서 “환매조건부매매”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상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등에 동 사항을 반영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별표3의3 : 2007/6/28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증권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
 - 증권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완화
 - * 증권거래법령상 증권회사의 합병인가 요건에는 주요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없음

- 호가정보의 집중 및 협회 보고의무 부과
 - (5-31조의2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채권 장외거래시 호가정보의 집중 및 공시업무를 증권업협회가 수행하도록 규정
 - 종래에는 증권업협회가 장외 채권거래수익률 등 장외거래 정보 공시업무를 금감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에 대하여 호가정보,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에 대한 증권업협회 보고의무 부과

* 증권회사등 : 증권업감독규정 5-26조 8항에서 정하는 채권자기매
매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호가정보 및 매매거래 내역 등의 공시근거 신설

(5-31조 2항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호가집중 및 공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및 매매·중개거래내역 등 관리·공시근거를 신설

- 종래 증권회사등의 거래체결 내역 보고의무는 증권업협회의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그 시행근거를
규정에 반영

○ 호가정보의 정의 신설 (5-26조 11항 : 2007/11/28 개정·시행)

— 호가정보란?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가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위하
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이행 확보수단 마련

(5-31조 3항 : 2007/11/28 개정,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

— 채권 장외거래시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에 대하여 호가
정보를 사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
검이 가능하도록 함

○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별표3의2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 실적이 우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및 경영실태평가지 시장조성 실적 등 평가결과를 반영

○ 표준약관 수정사용시 사전보고 의무 완화 (4-40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사용하는 경우 사후보고 하도록 규제를 완화

-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 보고의무를 시행일 즉시 보고로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약관변경 수요를 신속히 반영

○ 증권저축수수료 징수 관련 규제 폐지 (5-58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 영위와 관련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가 필요 없는 수수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 출자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의무 완화 (6-8조 : 2007/11/28 개정 · 시행)

— 출자승인 신청을 서면에 의해서만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허용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가동(2006/8/1)으로 금융기관은 대다수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인용법령 변경

(5-26조 : 2007/11/28 개정·시행)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2007/2/28) 17조가 삭제되고 17조의2가 신설되면서 기관투자자를 정함에 따라 관련된 인용법령을 개정 내용으로 변경
 - 종래 소매채권매매를 개인 및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정의하면서 일반법인의 범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제외하였음

○ 증권회사 신용공여제도 개선 (5-2조의2, 5-4조, 5-10조, 5-11조, 5-17조, 5-20조,

별표 11 : 2007/12/28 개정·시행)

-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은 매수대금의 40%
 -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2일 연속 하한가로 하락(30% 하락) 하여도 감내할 수 있도록 140%로 정하고,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예탁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등에도 적용
 - 고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예방이 기대됨
 - * 증권회사 신용공여 :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주식청약자금대출
-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 신용공여에도 'Know-your-customer-rule'이 적용되도록 증권회사가 융자금액, 조건 등을 정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의 적정화

-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 산정시 고객계좌 담보금액에 대한 차감률을 50%로 적용

$$* \text{신용공여의 위험액} = [\text{대출금액} - \{\text{담보금액} \times (1 - \text{차감률})\}] \times \text{위험율}(8\%)$$

- 종래에는 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아(차감률 0%) 고객계좌의 담보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위험액을 산정
- 신용공여 잔액이 많은 증권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영업용순자본을 유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향상이 기대됨

— 증권회사별 한도 및 위임 근거 마련

- 증권회사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 신용공여 규모가 과다하게 증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감위 위원장이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매매거래제도 개선 (7-8조, 7-10조, 7-15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 국내거래소와 외국거래소에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
-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국제예탁결제기구의 명의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의 국내 재예탁 의무면제

- 외국인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할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이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면제

-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계좌(통합계좌)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고객(기관 및 개인)을 위하여 투자국의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등에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로 고객은 이를 통해 유가증권 및 자금을 관리(Omnibus Account)

- 대상채권은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취득한도 및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불편의 해소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도모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요구방법의 완화 (5-1조 : 2007/1/25 개정, 2/1 시행)

— 증권회사가 담보부족계좌에 대하여 담보확보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가담보 요구방법을 개선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 또는 통화내용 녹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에는 내용증명우편과 통화내용 녹취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었음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가능하도록 함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내용 세분화 및 항목 정비

(별지 1호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13개 영업으로 세분화하는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제도를 도입

- 영업부문별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은 추진 중인 ‘증권회사 리스크중심 감독(RBS)’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기존에는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거나 타 보고서와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총 46개 항목을 정비

-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이사회·감사위원회 현황 등 활용도가 낮거나 타 보고서와 중복되는 총 35개 항목을 삭제
- 투자자문업의 계약자산현황, 자산부채비율 등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던 총 11개 항목을 정비

○ 증권회사의 재무제표 서식 개정 등

(별표12 : 2007/5/3 개정,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

— 증권회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

-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분류를 '유동성 배열'에서 '특성별 배열'로 변경하고, 손익계산서의 '특별이익(손실)'을 삭제
 -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일부 계정과목을 신설·조정
 - '지분법 자본변동' 등 8개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미수금'을 '자기매매미수금'과 '위탁매매미수금'으로 분리
- RP거래의 정의 변경에 따른 관련 세칙 용어 정비
(별표12, 별지 1호 서식, 별지 15호 서식 : 2007/6/28 개정, 12/1 시행)
- RP거래의 정의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서 “환매조건부매매”로 변경됨에 따라 세칙상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등에 동 사항을 반영
-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제한 완화 (별표15 6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로 상이한 시장조성 채권의 구분을 없애고 종목 수도 기존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
 - 다만, 호가가 일부 채권(국채, 통안증권 등)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해서는 각각 1종목 이상의 호가를 반드시 제시
 - 종목별 최소호가수량도 거액 및 소액 투자자별 구분 없이 1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 지속적인 호가제시의무도 연중에는 매매일의 2/3 이상, 일중에는 매매시간(09:00~15:00)의 2/3 이상으로 변경

○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 완화 (별표15 4조 3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시장조성 이후 14일내 시장조성채권 변경금지를 호가를 제시한 당일에 한해 변경을 금지(호가변경은 가능)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 종목변경시 증권업협회를 통해 사전(직전영업일)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 폐지
- 호가를 제시한 채권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에는 해당일 1일간은 호가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전량 매매체결시 호가 재제시 의무 삭제

(별표15 4조 2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채권보유 및 확보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전량체결 된 이후 60분 이내에 체결된 채권과 동일한 종목에 대한 호가 재제시 의무 면제

○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 축소

(별표15 4조 4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매매체결이 용이하도록 채권전문딜러의 매수 및 매도호가간 수익률 범위를 채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축소
 - 거액 및 소액 투자자에 따른 호가수익률 범위의 차이를 폐지하고 국채는 30bp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이내로 축소

○ 증권회사등의 대고객 응대의무 개선

(별표15 4조 5항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한 실제거래는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의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된 수익률로 매매
 - 호가를 직접 제시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거액투자자의 매도주문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별표15 5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인수 회사채에 대한 시장조성시 가점 부여
 - 채권전문딜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제시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해당 체결수량을 1.2배로 환산하여 시장조성실적을 평가
 - * 시장조성실적 :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실적이 채권전문딜러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의 1%~2.5% 이상이어야 함
-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의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채권전문딜러를 선정하여 금감원에서 반기별로 시장조성실적 우수 채권전문딜러를 대외 발표
-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 감독원장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및 경영실태평가지 시장조성 실적 등 평가결과를 반영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요건 및 평가방법 개선

(별표15 8조 : 2007/11/28 개정, 2008/1/1 시행)

- 지정요건 중 "시장조성자금 규모" 는 기존 채권딜링부서의 시장조성을 위한 할당자금에서 채권전문딜러 담당부서의 상품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월평균)채권잔고로 기준을 명확화
 - 항목별 점수 부여방식으로 평가방법 변경
 - 시장조성 활동 등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부여(반기별 100점 만점)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미달시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평가방법 변경
 - 2반기 연속 60점미만 또는 연간총점 120점미만인 경우 지정 취소
- 신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에 대한 보고 (7-3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이 신규로 허용되는 장외거래를 실행한 경우 동 거래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외국인 취득한도의 적절한 관리
-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의 시장간 이동시 신고의무 부과
(7-3조, 7-5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복수상장 된 국내기업의 유가증권을 국내시장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시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복수상장되는 유가증권 종목별로 외국예탁기관 등이 투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 계산기준 개선 (7-1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
 - 종래에는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24개 종목에 대해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도를 계산하여 장내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 * 상대매매 : 매수자 및 매도자 쌍방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내용(유가증권의 종목 · 수량 · 가격 등)을 거래소의 대량매매시스템(K-Blox)을 통해 행하는 매매거래

- 투자등록이 면제된 통합계좌 이용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
(7-13조 : 2007/12/28 개정 · 시행)
 - 국제예탁결제기구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을 국내 예탁원(KSD)을 통해 감독원장에게 보고(월별)하도록 함
 -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예탁원(KSD)에 예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국제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을 면제함에 따라, 외국환 관리 및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파악을 위한 채권거래 내역 파악수단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의 개선 (별지 10-2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 위험률 차등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화함

- 펀드 규모별 위험률의 범위를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하여 펀드 규모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

○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비율 조정

(별지 20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운영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을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50% → 10%

○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66조 : 2007/3/22 개정·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 금감위의 합병인가 심사기준 마련 (7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3년간 수익전망과 영업전략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재무건전성 기준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금감위의 전환인가 심사기준 마련 (7조 : 2007/5/3 개정·시행)
 - 전환은 증권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자산운용업 허가요건을 적용함
 - 다만,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하여는 합병인가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 방법 명시 (7조의2 1항~3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자산운용회사(동일 계열 금융기관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유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의 명시

(7조의2 4항 : 2007/5/3 개정 · 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동일계열 금융기관 포함)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7조의2 5항 : 2007/5/3 개정 · 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함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의 완화 (별지 8-2호 : 2007/6/28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금융기관 또는 내국법인)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요건을 완화
 -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함

- 투자일임계약의 개별성 유지 요건 (88조 1항~2항 : 2007/8/30 개정, 11/1 시행)
 -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그 자산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
 - 고객은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투자자문회사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함
 -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이 그 자산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 투자자문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함
-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해 고객의 조회가 가능
- 자산운용상품간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하고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 감독규정에서 구분기준을 마련

○ 펀드의 탄소배출권 투자 허용 (2조의2 : 2007/9/13 개정·시행)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에 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킴으로써 탄소펀드의 설정을 허용
 - 탄소배출권 : 국제기구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내지 법인에게 부여하는 배출권
 - * 탄소펀드 :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펀드의 투자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펀드의 투자 대상에 배출권을 포함
- 탄소펀드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로서 금융회사는 탄소펀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자에게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투자수단을 제공

○ 자산운용회사의 편익 등의 범위·한도 등 마련

(22조 : 2007/12/28 개정, 2008/2/29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 등의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 간접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광고·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 판매회사의 임·직원 1인에 대한 동일회계연도의 편익 등의 제공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산운용협회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내로 정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등에게 편익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편익 등의 내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 부득이한 사유시 사후보고 가능
- 편익 등의 범위와 제공범위 및 한도, 절차 등이 금감위 규정화됨에 따라 과도한 편익 등의 제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68조 : 2007/12/28 개정·시행)

-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범위에 무보증사채가 발행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local credit agency)도 인정하여, 간접투자기구에 서 투자 가능한 외국무보증사채의 범위를 확대
 - 해외투자 국내간접투자기구의 다양한 투자 가능

6.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 및 서식 개정

(별지 3호~5호, 7호, 26호 : 2007/3/22 개정, 4/1 시행)

—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서』 24호)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정기보고서의 서식을 개정

- 대차대조표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
-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을 폐지하고, 유가증권관련 손익을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

○ 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 고지의 강화 및 투자정보 제공의 확대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및 사업 진행일정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

- 부동산펀드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동 시공사의 신용등급, 총 지급보증·채무인수 내역을 함께 기재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개수와 규모를 기재

- 펀드매니저의 운용자산 규모가 관리 폭(span of control)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
- 특수한 구조의 펀드(모자형·종류형펀드)에 대해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 모자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모펀드의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
 - 종류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종류(class)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예 : 기준가격, 수익률)은 펀드 전체 및 종류별 내역을 함께 기재
 - * 모자형 펀드 :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 자펀드 자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의 펀드
 - * 종류형펀드 : 수수료·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투자설명서 관련 핵심설명서제도의 도입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설명서 '요약'을 '요약(핵심설명서)'으로 변경
 - 핵심설명서제도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랑용지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기
-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

-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설명서 관련 기타 사항 (별지 17호~18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비교지수(Bench mark)의 계속 사용
 - 다만, 비교지수를 파악하기 곤란(가격지표 변경 또는 공시중단 등)하거나, 주요 투자전략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식·주식관련상품(예 :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수익률을 그대로 사용
 - 기존에는 연 환산 수익률을 사용했음

- 자산운용보고서상 요약정보의 제공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정보'(요약)와 '상세정보'로 이원화
 - '기본정보'는 펀드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펀드성과 및 개괄적인 보유자산 현황 위주로 기술

- 자산운용보고서에 상세한 운용정보의 제공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펀드투자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의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중 매매수수료비율을 별도 기재
 -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매매수수료 비율 대신 '부동산 유지관리 보수비용 비율'을 기재

- * 매매수수료비율 : 펀드가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회사(증권사등)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펀드 순자산 대비 비율
- * 부동산 유지관리 보수비용 비율 :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부동산펀드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
- 외화자산의 평가금액은 작성 기준일 현재 원화환율로 환산하고, 원화로 환산하였음을 명시

○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의 단순화 (별지 19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매매회전율 등의 전문용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 매매회전율 :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 펀드 보유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손익만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 (별지 20호 : 2007/5/7 개정, 5/27 시행)

- 투자자가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보고서의 제공 목적을 쉽게 설명
 -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가 펀드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7. 행정지도 운용규칙

○ 행정지도 일몰제(존속기한) 도입

(8조 1항~2항·6항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한을 명시

- 존속기한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2007/9/30까지 존속기한 설정

— 일몰제 적용으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멸되므로, 사후 관리 현황 보고주기를 1년 단위로 실시

○ 존속기한 연장시 사전보고 제도 도입

(8조 3항~5항 : 2007/7/26 제정, 8/1 시행)

— 감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기한(1년 이내) 연장 가능

- 다만, 존속기한 연장의 남용방지를 위해 존속기한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감위에 사전보고

○ 중요 행정지도의 금융감독위원회 사전보고 (6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중요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보고 가능

-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규정 (3조~4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는 금융관련 법규상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행정지도시 취지, 내용, 행하는 자의 신분을 명시토록 하고 상대방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 불이행 사유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의견수렴, 전산등록 및 대외공개 등 규정 (5조, 7조 : 2007/7/26 제정, 8/1 시행)
 - 행정지도시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모든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전산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대외공개토록 함
 - 예외적인 경우 행정지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허용

8. 선물업 감독규정

-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2조의15 : 2007/5/3 개정 · 시행)
 -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선물업자가 감독규정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재무건전성 기준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 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주요출자자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것
 - 다만,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
일 것 등
-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2조의15 : 2007/5/3 개정·시행)
-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선물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선물업 허가기준도 적용
-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명시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유시 사후승인이 가능한 사유의 명시
(2조의17 : 2007/5/3 개정·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2조의17 : 2007/5/3 개정 · 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함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24조 : 2007/6/28 개정 · 시행)

- 선물업자의 기초위험액이 실제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 모든 고객의 미결제약정 유지증거금필요액에 대하여 기초위험액산

정율을 10%로 적용하던 것을 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 유지증거금에 대하여는 이를 5%로 완화하여 적용

* 기초위험액 : 사고, 착오, 위법부당행위 및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물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며, 현재 선물업자 총위험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배주주변경의 승인요건 완화 (별표1의2 : 2007/6/28 개정·시행)

— 선물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선물회사의 대형화 및 선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선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선물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에 대해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선물거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완화

* 선물회사의 경우 선물거래법령상 합병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9.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선물업 재무제표 서식 개정 (별지 1호, 4호 : 2007/6/28 개정·시행)

—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금융업)가 시행됨에 따라 선물업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동 기준서에 부합하도록 정비

< 서식 비교 >

	기존 시행세칙상 서식	기준서 제24호의 서식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를 유동성에 따라 유동과 고정으로 분류	자산·부채를 특성에 따라 분류*
손익계산서	특별이익·손실	특별이익·손실 항목을 삭제하고 중단사업이익·손실 항목 등을 신설

* 자산의 경우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유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

10. 신탁업 감독규정

○ 합병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신탁업인가지침 13조~14조 : 2007/5/3 개정·시행)

- 합병 후 3년간 수익전망과 영업전략이 실현가능할 것
- 존속·신설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합병후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장예상금액이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전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 (신탁업인가지침 13조~14조 : 2007/5/3 개정 · 시행)

— 전환은 기존 금융업의 폐지인가와 새로운 금융업의 신규인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신탁업 폐지 인가기준과 신탁업 영위 인가기준을 준용

- 다만, 재무건전성 및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합병인가 심사기준을 준용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35조의3 : 2007/5/3 개정 · 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2조의17 : 2007/5/3 개정 · 시행)

—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현물상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35조의5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11.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5조의2 1항~3항 : 2007/5/3 개정·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펀드, 특정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한도초과 주식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5조의2 4항 : 2007/5/3 개정·시행)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수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검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5조의2 5항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12. 은행업 감독규정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의 구체화

(54조의2 : 2007/5/3 개정 · 시행)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상법 3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정의
-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 다만, 공·사모단독 펀드, 특정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수익자인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산정

○ 부득이한 한도초과주식 소유시 사후승인 사유의 구체화

(54조의3 : 2007/5/3 개정 · 시행)

- 긴급한 타회사 주식 소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고시하는 경우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54조의4 : 2007/5/3 개정·시행)

— 금감위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 다만,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 관련 내용 추가

(30조 1항, 5항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금융기관은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13.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운영리스크 추가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운영리스크를 별도의 리스크로서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추가

○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초과 투자지분의 차감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지분율 15% 이상)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 다만,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차감의 예외로 인정

* ex. 산업은행의 한국전력 주식 초과보유분

○ 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 사용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하한의 설정 (별표3 1장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개시일 이후 소요자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간 신소요자기자본이 구소요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미달시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자산을 분모에 가산
 - 1차년도 : 90%, 2차년도 : 80%

○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별표3 2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감독원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신용평가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 요건 :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 익스포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 기존의 별도 구분 없는 기업, 소매, 상업용부동산 담보, 고위험, 연체 익스포저를 익스포저 유형에 추가하고,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실질 리스크 크기에 대응해서 위험가중자산이 산출되도록 함
- 은행의 신용회피 노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
 - 적격담보 및 적격 보증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난내자산상계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추가로 인정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별표3 3장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 까지 승인신청

- 감독원장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 부도시손실률의 업무활용여부, 내부등급법 적용전 신용평가시스템 사전 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 리스크 측정요소 :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자체 추정하는 리스크 측정요소의 범위에 따라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

- 기본내부등급법 : 부도율만 자체 추정

- * 소매 익스포저의 경우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하여 자체 추정

- 고급내부등급법 :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저 등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하여 자체 추정

— 내부등급법을 사업부문별·익스포저 유형별로 3년 이내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부문별·익스포저 유형별 신용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전체의 15% 이하인 경우 동 익스포저를 표준방법으로 산출 가능

— 내부등급법 사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정함

- 내부등급법 사용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운영, 통제구조 및 감시, 내부신용등급의 활용, 리스크의 계량화,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유동화익스포저의 처리 (별표3 4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유동화익스포저 해당여부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여부 등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특수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화익스포저에서 제외

- 기초익스포저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트렌치로 재구성되어 있고, 해당 트렌치의 원리금상환이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

— 전통적 유동화 및 합성 유동화에서 리스크이전 인정요건을 구체화함

- 전통적 유동화에서의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 * 기초 익스포저의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 * 양도인은 양도된 익스포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 * 양도자산은 법적으로 양도인과 분리될 것 등
- 합성 유동화에서의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 *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 요건을 충족할 것
 - * 기초 익스포저의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 *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한 상품 또는 계약이 신용리스크의 이전을 제한하지 않을 것 등

—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유동화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저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

- 표준방법의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 내부등급법에서의 유동화익스포저의 소요자기자본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에 의해 산출

* 표준방법에 비하여 신용등급 및 선순위 여부 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

—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익스포저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한도로 함

- 표준방법의 경우에도 2007/12/31 현재 보유중인 유동화익스포저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기초익스포저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한도로 유동화익스포저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정

○ 운영리스크 (별표3 : 2007/6/28 개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1/1 시행)

— 운영리스크는 총이익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 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으로 산출 (5장)

-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하위방법으로 산출방법 변경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급측정법은 사전에 고급측정법 최소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할 수 있음

— 최소요건 (3장)

-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구조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운영표준방법 적용은행에 대해 해당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함
-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기간 및 측정시스템, 내·외부 손실데이터, 시나리오 분석, 적합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별표3 6장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함

-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음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함

—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운용토록 함

— 이사회에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부과하고, 경영진에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운용과 관련정책 및 절차 마련의 책임을 부과

- 은행은 중요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여야 함
-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부칙 4조 7항 : 2007/6/28 개정, 2008/1/1 시행)

- 신BIS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장치를 마련
 - 기존기준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은행에 대하여는 2008년 중 기존기준 잔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 2008년 중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으로 기존기준과 신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중 은행에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가능

1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인가시 심사기준 마련

(11조 1항, 별표1 2호 : 2007/5/3 개정 · 시행)

- 영업계획의 적정성
 -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재무건전성

- 합병 후에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건전성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 (금융기관)
- 추가출자예상액이 자기자본 이내 (금융기관, 내국법인, 외국법인)
- 추가출자예상자금 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공통)
- 부채비율이 200% 이하 (금융기관, 내국법인)
-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한 것이 아닐 것 (공통)

○ 금융지주회사의 전환 인가시 심사기준 마련 (10조 6항 : 2007/5/3 개정·시행)

— 금산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가시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설립 인가 요건 등을 준용

- 다만,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해서는 합병인가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

○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

(11조의2 : 2007/12/13 개정 · 시행)

—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해당 자회사의 주주권 변동사유 : 해당자회사 주식의 “이익소각”
- 해당 자회사주식 취득사유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
- 금융기관이 긴급하게 해당 자회사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3항 5호)상 타법인 주식취득시 사후승인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위임례와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하여 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 마련

(11조의5 1항 : 2007/12/13 개정 · 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

- 당해 본국 금융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이상일 것

○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요건 규정

(11조의5 2항 : 2007/12/13 개정 · 시행)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계열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제에 적합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

(11조의6 : 2007/12/13 개정 · 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권 변동사유 :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이익소각”
- 금융지주회사주식 취득사유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
- 금융기관이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3항 5호)상 타법인 주식취득시 사후승인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위임례와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

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변경승인의 세부요건 및 신청방법등 규정

(11조의7, 별표 1-3 : 2007/12/13 개정·시행)

— 비은행지주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대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의 세부요건 및 승인의 신청방법·절차 등을 규정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
- 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등 국가기관의 수사·조사·검사 등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유예
- 금감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
- 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완료 후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 보고
- 승인 신청서 서식은 감독원장이 제정

○ 금융지주회사 임원으로 선임가능한 제재 후 기간경과 기준 설정

(13조의6 : 2007/12/13 개정·시행)

— 시행령에서 위임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제재 후 경과기간을 규정

- 임원제재 : 해임권고 5년·업무집행정지(종료일) 4년·문책경고 3년
- 직원제재 : 면직 5년·정직(종료일) 4년·감봉(종료일) 3년

○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인정을 위한 경영투명성 등 요건 마련

(13조의7 : 2007/12/13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조언·시정 권고 및 업무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 금융지주회사는 상기 권한 행사시 완전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소비자권익·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비밀을 유지할 것
-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것

○ 주권상장으로 인정되는 해외시장의 범위 설정

(14조의2 : 2007/12/13 개정 · 시행)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이상 미국)
- 동경증권거래소(일본), 홍콩증권거래소(중국), 싱가포르증권거래소(싱가포르)
- 런던증권거래소(영국), 도이치거래소(독일), 유로넥스트 파리(프랑스)
-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 외국자회사 주식소유기준 완화 소명과 관련한 요건 마련

(14조의3 1항 : 2007/12/13 개정 · 시행)

-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기준 완화 소명과 관련하여 경영 관리가 가능한 방법의 규정

- 자회사·손자회사의 현직 임직원을 외국자회사 임원으로 선임(겸직)하는 방법
-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퇴임 임직원을 외국자회사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 과반수 선임권을 보유하는 방법

○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규정

(11조의4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시 금감위 사후보고 대상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법령 제·개정내용 반영, 인허가 내용 반영 또는 기타 단순 자구수정 등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공고해야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설정

(33조 2항 : 2007/12/13 개정·시행)

- 공고대상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결대차 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 요건 정비

(별표1 2호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이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인 경우 대주주등 요건 충족 여부를 그 업무집행사원·30%이상 유한책임사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비

○ 은행지주회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시한 정비

(12조 6항 : 2007/12/13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6조의7)에서 은행지주회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 동 주주가 적격성심사를 위해 금감위에 제출하는 심사서류 제출시한(1개월)의 기산점도 “매분기 말”에서 “매반기 말”로 정비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35조 3항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LOPECM평가방식에서 RFI(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평가 부문 등을 정비

기 준	개 정
① 주력자회사(L) ② 여타자회사(O) ③ 금융지주회사(P) ④ 수익성_연결(E) ⑤ 자본적정성_연결(C) ⑥ 경영관리능력(M)	① 리스크관리(R : Risk Management) - 세부평가부문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내부통제 ② 재무상태(F : Financial Condition) - 세부평가부문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③ 잠재적 충격(I : Impact) - 세부평가부문 : 금융지주회사, 여타자회사등, 내부거래

-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 부문에 대한 분기별 간이계량평가(CAEL평가)제도를 도입

- 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권역에서도 실시 중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보고시한 개선

(11조의8 3항 : 2007/12/13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 50대 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시한(1개월)의 기산점 조정

- 정기주주총회일 →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

○ 개인신용정보 업무지침서 보고제도 정비

(24조의2 3항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업무지침서 제·개정시 보고주체를 금융지주회사로 일원화하고 제출시한도 개선

○ 금융감독원장의 서식제정 근거 명확화 (47조 : 2007/12/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금감위 보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금감위 보고사항 : 임원변경, 최대주주·주요출자자(은행지주회사) 변경, 상호변경 등

15.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그룹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의 세부사항

(12조 2항~5항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LOPECM평가방식에서 RFI(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평가방식으로 변경되고, 재무상태(F) 부문에 대한 분기별 간이계량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등급별 정의 등을 정비
- 분기별 간이계량평가방법 설명

○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개선 (별표1 2호 가목 · 3호 나목(1) : 2007/12/13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유동성비율 산정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자산 · 부채에 난외 파생상품거래를 포함

○ 업무보고서 정비 (별지 18호 : 2007/12/13 개정, 2008/1/1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및 금융지주회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된 업무보고서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업무보고서를 정비

- 2개 항목 폐지(유사내용 통폐합) 및 41개 항목 개정

16.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변경시 사전예고 의무화

(2조~3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소관 과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는 규정안을 사전예고하여야 함

- 사전예고 주체 : 금감위 소관 과와 금감원 소관 부서
- 사전예고 내용 : 규정안 취지,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규제 신설·강화시 첨부) 등
- 사전예고 방법 : 문서, 인터넷, 신문·방송 등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 내용을 반영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예고 생략이 가능

- 규정변경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규정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변경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 등 (4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사전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규정안에 대한 합동 간담회 종료 후에 「행정절차법」 43조에서 정하는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43조의 예고기간 : 20일 이상
 -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가능

- 제출의견의 처리 (5조 : 2007/7/26 개정, 8/1 시행)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

17.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감사원 제척제도 확대운용 근거 마련 (3조의2 : 2007/7/20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검사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의 운용이 가능함
 - 기존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감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

18.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금융영역별 검사대상기관의 분류 (3조, 별표1 : 2007/6/28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 영역 : 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 신탁회사, 여전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증권 영역 :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
 - 보험 영역 :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 감독분담금 산정 세부기준 (3조의2 : 2007/6/28 개정·시행)
 -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하여 금융영역별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은행·비은행 : 총부채 비율 100%로 산정
 - 증권 : 총부채 비율 60% 및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
 - 보험 : 총부채 비율 70% 및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산정

- 감독분담금 면제기준 변경 (4조, 별표2 4호 : 2007/6/28 개정·시행)
 - 감독분담금 면제기준을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으로 변경

○ 감독분담금 증가율 상한제(30%) 한시 적용

(부칙 2조 : 2007/6/28 개정·시행)

— 2006년 대비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면제

-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규 부과회사는 제외하고 2007년에 한하여 적용

○ 금융영역별 2007년도 분담요율 및 감독분담금

(4조, 별표2 : 2007/6/28 개정·시행)

금 융 영 역	분 담 요 율	감독분담금
은행·비은행	총부채의 0.902355/1만	1,081억원
증 권	총부채의 4.211596/1만 및 영업수익의 7.558633/1만	330억원
보 험	총부채의 1.516966/1만 및 보험료 수입의 1.752673/1만	520억원
계	-	1,931억원

*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법시행령 12조) : 총자산의 15/10,000

19.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의 보완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를 추가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사항의 신설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등록요건 관련 현황을 영업보고서 내용에 신설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현황 항목의 보완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항목에 모든 상품이 포함되도록 국채, 특수채, 주식, 외국발행 채권·주식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상품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를 추가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운용지시 현황 항목의 보완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업무보고서 아직 운용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대기성자금을 표시하기 위해 '기타'란 항목을 추가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지시 세부내역의 수정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종류와 분류기준 등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내용에 맞게 수정

- 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적립금 운용성과 총괄기능 강화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적립금 운용손익 서식이 적립금 운용성과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작성 되도록 하기 위해 각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표를 수정하고, 보험상품 관련 표를 신설

○ 자산관리보고서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항목의 보완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퇴직급여 지급현황 양식에 '중도인출' 항목을 추가

○ 기타 공통사항 (별책서식 : 2007/2/23 개정·시행)

— 개인퇴직계좌를 기업형 및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로 구분

— 보고서 서식의 금액작성 기준단위를 '천원'으로 통일

20.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신용공여의 범위 (3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정함

- 다만, 법 적용 대상기업 및 주채권은행의 선정 시에는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에 집중되는 계정과목 및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금액을 산정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4~5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80조 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최근 월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

- 매반기 정기(2월말 및 7월말) 신용위험평가 기준시점 → 가장 최근의(최근 월말) 신용위험평가 기준시점

○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

(6조 1~2항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서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와 필요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7조 : 2007/10/18 개정, 11/4 시행)

— 금융관련법상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완료·중단된 날부터 2년까지)을 연장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감위에 그 승인을 신청

21.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전자자금이체한도 하향 조정 (별표 1 : 2007/9/13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

- 다만, 1회 현금 인출한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한도축소 폭은 최근거래 현황, 주요국의 사례 및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기 준	개 선
1회 인출한도	100만원	100만원
1일 인출한도	1,000만원	600만원
1회 이체한도	1,000만원	600만원
1일 이체한도	5,000만원	3,000만원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1. 정관

-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근거의 마련 (9조의3 : 2007/4/11 개정, 일반공모증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신주공모,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DR 발행 및 긴급 자금조달 경우 등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
 - 외국거래소와 제휴·협력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증권선물거래소법 21조 1항 (1인당 소유한도의 예외)

- 제3자 배정방식의 CB/BW 발행 근거의 마련 (10조의2~3 : 2007/4/11 개정, 해외 CB/BW 발행의 경우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일반공모, 해외 CB/BW 발행 및 긴급 자금조달 경우 등
 - 상장회사 표준정관 14조, 15조
 - 외국거래소와 제휴·협력을 위해 CB/BW를 발행하는 경우
 - 증권선물거래소법 21조 1항

* CB/BW 발행한도는 각 1,500억원(자기자본의 약10%), 행사가격/
신주발행가격은 주식의 액면가격 이상으로 제한

○ 우선주 발행근거의 마련 (9조의2 : 2007/4/11 개정 · 시행)

— 무의결권 주식, (배당)참가적 ·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

• 상장회사 표준정관 8조의2

* 발행한도 : 4,000만주(수권주식의 25%), 최저배당율 : 10%(액면기준)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근거의 마련

(9조의5 : 2007/4/11 개정,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부여방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 부여대상 : 회사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 기여 임직원

— 행사가격/요건 등 : 증권거래법상 제한을 그대로 수용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의3

• 증권거래법(189의4조) 및 시행령(84의6조)의 제한과 동일하게 반영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Min[3%, 60만주](이사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근거의 마련 (9조의6 : 2007/4/11 개정 · 시행)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여방법 :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 행사가격/요건 등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제한을 그대로 수용
 - 근로자복지기본법(32의2조)의 제한과 동일하게 반영
 -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20%(주주총회), 10%(이사회)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근거의 마련 (9조의8 : 2007/4/11 개정·시행)
 - 주식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
 - 상장회사 표준정관 11조
 - 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함 (상장규정 35조 1항 15호)

- 신주의 배당기산일 의제 (9조의7 : 2007/4/11 개정·시행)
 -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의제
 - 상장회사 표준정관 10조의4
 -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다른 경우 신주상장을 제한함 (상장규정 103조 1항 2호)

- 공고에 의한 주총 소집통지 생략 근거의 마련
(11조 : 2007/4/11 개정·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1% 이하 주주에게는 주총소집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 19조

- 집중투표제 적용 배제근거의 마련 (19조 : 2007/4/11 개정 ·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
 - 상장회사 표준정관 30조
 -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자동으로 적용 (상법 382조의2 1항)

- 주식양도 제한의 폐지 (58조 : 2007/4/11 개정 · 거래소발행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시행)
 - 상장전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
 - 상장전 주주구성 변경 방지를 위하여 상장전까지는 양도제한규정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둠
 - 주식양도제한이 없을 것을 상장요건으로 규정 (상장규정 32조 1항 14호)

- 수권자본금의 증액 (6조 : 2007/4/11 개정 · 시행)
 - 납입자본금 증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증액
 - 4천억원(8천만주) → 8천억원(1억6천만주)
 - * 납입자본금(2천억원, 증자후 기준)의 4배

- 구분계리의 폐지 (56조 : 2007/4/11 개정 · 시행)
 - 영업에 관한 수익과 비용의 본부별 구분계리 규정을 삭제
 - 단일 주식회사인 증권선물거래소에 적합하지 않고, 본부별 수익/비용 산출이 무의미함

○ 배당평균적립금의 신설 (54조 : 2007/4/11 개정 · 시행)

— 안정적 배당정책의 수행을 위해 배당평균적립금을 신설

- 보유자금 용도의 명확화 및 향후 순익 감소시에도 배당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타기관 사례 : KOGAS 2,193억원, 포스코 3,777억원, 한전 2,100억원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매수대금 미납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의 의무화

(89조 : 2007/1/19 개정, 5/1 시행)

—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함

-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0일간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를 의무화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징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매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의 범위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및 신용거래를 통해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강화

(89조 1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다른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증권업과 관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위탁자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 징수를 의무화함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내역에 대한 회원간 통보의무의 폐지

(99조 1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증권회사간 정보공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미수 위탁자에 대한 다른 회원으로의 통보의무를 삭제함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71조의2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딜러”라 함은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
- “소매전문딜러”라 함은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거래소의 지정에 의해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하는 소매딜러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라 함은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채권의 수량기준을 적용하여 호가수량 50억 미만인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
- “조성호가”라 함은 채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소매딜러가 제시하는 자기매매 호가
 - 양방의 조성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하는 호가

- 일방의 조성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하는 일방의 매도 또는 매수호가,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 일방의 매도호가

— “매매호가”라 함은 다음의 호가를 말함

- 위탁 호가
- 소매전문딜러의 자기매매 호가
-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의 자기매도 호가

○ 호가의 구분 (71조의3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를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로 구분

○ 호가의 방법 (71조의4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는 정규시장에서 채권종류별로 1종목 이상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양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소매전문딜러는 정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각각 5종목 이상의 매도 및 매수 일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소매딜러가 소매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종류별로 1종목 이상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2/3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일중 매매거래 가능 시간의 2/3 이상의 시간) 매도 일방의 조성호가를 하여야 함

○ 매매계약의 체결시 가격 결정방법

(71조의5 1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 가격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함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운영

(71조의6 1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는 소매전문딜러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1조의6 2항 : 2007/5/11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기타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정보체제 강화 (2007/7/20 개정, 9/3 시행)

-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 (106조)

- 시장감시규정은 기존의 '이상급등종목'을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원화

* 투자위험종목 : 기존 이상급등종목 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금액 전액을 위탁증거금(현금)으로 징수 (89조 5항)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가수요를 방지
-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대응증권 불인정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 투자위험종목 및 환금성 제한에 따라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을 대응증권에서 제외 (88조 2항)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경우로서 시장감시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가능 (107조)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근거 마련
 - (2007/7/20 개정, 2007/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다수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로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조 1항)
 - 집합주문의 공정한 배분 등을 위해 집합주문 호가에 대한 주문·매매 체결·배분 내역 등의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94조 2항)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 강화 등 (20조의2 2항, 20조의6 1항 : 2007/12/21 개정, 2008/1/2 시행)
 - 유동성공급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자격요건을 상장규정에서 주권과 동일하게 업무규정으로 이관하여, 유동성공급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자격에서 거래전문회원을 제외하여 결제회원으로 한정

구 분		기 존(상장규정)	개 정(업무규정)
주 권		자기매매 허가 결제회원	
상 장 지 수 펀 드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주권	지정판매회사	자기매매 허가 결제회 원 중 지정판매회사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지정판매회사 중 회원증권회사	
주식워런트증권		자기매매 증권거래회원	자기매매 허가 결제회 원 중 장외파생금융상 품거래 인가증권회사

-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제재, 영업정지 이상
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경과할 것
- 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유동성공급자(LP)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규정에서 업무규정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제도 정비

(26조 3항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에 코스닥상장주권이 포함됨에 따라,
동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또는 중단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 코스닥상장주권 :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30개 종목)중 시가총액 상
위 5개 종목

○ 주식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공매도 가격규제의 예외

(18조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선물의 차익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공매도의 가격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국고채전문딜러(PD)의 기능제고를 위한 Repo신고매매의 도입

(76조 : 2006/12/20 개정, 2007/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매채거래의 신고매매를 허용

- 거래기간 : 360일 이내

○ 호가의 방법 (99조의3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의 양방의 조성호가 및 소매딜러의 일방의 조성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채권의 종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기타 특수채(비금융특수채), 사채권으로 분류

- 호가 스프레드는 0.2%포인트 이내, 회사채는 0.4%포인트 이내

- 조성호가의 호가수량은 각각 종목당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거래소는 소매전문딜러 및 소매딜러가 제출한 조성호가의 호가수량중 매매체결된 경우 해당 수량만큼 당일 각각의 호가별로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간주

○ 호가의 제한 (99조의4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다음의 채권은 호가입력이 제한됨

- 주식관련사채권
- 외화표시채권
- 소액채권 (호가수량이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
- 투자적격등급(BBB-이상) 미만의 사채권
- 변동금리채권
- 옵션부채권

— 다음의 조성호가는 호가입력이 제한됨

-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 매도·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 99조의3 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99조의5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준용

○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99조의6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에 있어 호가폭주는 다음의 종목당 처리가능 호가건 수한도에 근접하여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특정 종목에 접수된 총호가건수의 경우 5,000건
 - 모든 종목에 접수된 총호가건수의 경우 10,000건
 - 기타 이에 준하는 호가건수
- 기타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채권의 매매거래의 관련규정을 준용

○ 매매수량단위 (99조의7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채권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00원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 (99조의8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소매전문딜러가 되고자 하는 소매딜러는 매년말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소매전문딜러 지정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거래소는 신청서를 제출한 소매전문딜러에 대하여 다음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재지정하며, 신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매전문딜러는 15개사 이내로 함
- 당해년도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 당해년도의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실적 (개인 및 일반법인이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매매거래실적은 제외)
- 소매전문딜러의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방법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 소매전문딜러로서 지정이 취소된 소매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해 1년 동안 소매전문딜러로서 지정하지 아니함

○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취소 (99조의9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매전문딜러의 호가 및 매매거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최근 2분기 연속 60점 이하이거나 최근 4분기 평가점수의 합이 240점 이하인 경우
- 소매전문딜러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소매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전문딜러 지정위원회의 구성 (99조의10 1항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거래소 채권담당 본부장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

- 증권 및 선물 관련 분야 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 거래소 채권담당 부서장
- 증권업협회 채권담당부서장
- 소매전문딜러 채권담당 부서장 2인

- 호가공표 방법 (126조 3항 2호 단서 : 2007/5/18 개정,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매매거래시간 이전의 호가접수기간(08:00~09:00)에는 매도·매수별 총 호가수량만 공표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기간중에 호가공표 방법과 동일

- 매매체결지연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요건의 개선
(40조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종래에는 매매체결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종목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 ①매매체결이 10분 이상 지연되고, 그 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분 이상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종목, ②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되는 종목으로 변경

- 매매거래 정지요건 변경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상향조정근거 개선
(33조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종래에는 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가 3일 이상이었으나,
 - 매매체결지연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이 3일 이상으로 변경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9조의2 : 2007/8/28 개정, 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다수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로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업 감독규정상의 외국인투자자집단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

○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규정 정비 (25조 : 2007/8/28 개정, 9/17 시행)

- 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시가가 전일종가(기준가격)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전일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전일종가가 10,000원이고 당일의 시가가 10,000원으로 결정된 경우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호가 제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사유 확대 (31조의5 : 2007/8/28 개정, 9/3 시행)

- 회원이 상장주식수 전체를 보유한 경우 매수호가 제출을 면제함
- 심외가격(deep OTM)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회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이론가격 등을 감안하여 5원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시 가격범위 보완 (31조의6 : 2007/8/28 개정, 9/3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LP호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제출

-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된 상태에서 다른 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일정범위 이내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출

○ 외국인의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의 허용

(52조~53조 : 2007/8/28 개정, 9/17 시행)

- 외국인한도 소진종목에 대한 외국인간 매매거래시 대량매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가능
- 외국인간 바스켓매매시 한도 소진종목을 포함한 매매의 허용

○ 이상급등종목의 관할규정이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33조~135조 : 2007/8/28 개정, 9/3 시행)

-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관련내용 삭제
-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종목 및 당해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외국주(외국주식예탁증서) 매매제도 보완 (별표 1 : 2007/8/28 개정, 9/3 시행)

- 신규상장시 외국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 가격이 공모가의 50% 미만인 경우 외국시장에서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

○ 소액채권전담회원 평가기준 명시 (62조 : 2007/12/18 개정, 2008/1/1 시행)

-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해 지정신청서 제출을 면제
-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한 평가항목·배점·지정방법 등을 명문화 (별표2의2)
 - 기존 소액채권전담회원은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연간 평가점수가 140점 이상인 회원을 재지정
 - 신규 신청회원은 6개 항목의 필수요건을 충족한 회원 중 연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소액채권전담회원과 결합하여 지정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평가주기를 반년으로 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취소 요건 확대 (63조 : 2007/12/18 개정, 2008/1/1 시행)

- 상반기 평가시 평가점수가 최근 2반기 합산 평가점수가 140점 미만인 경우와 소액채권전담회원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허용

○ 주가지수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 제한기간 폐지

(31조의8 3호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원활한 유동성공급을 위해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금지기간(만기일 1월 전 이후)을 폐지함

- 개별 주권 및 바스켓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준과 같이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기간을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평가기준 마련

(31조의9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성공급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공표함

- 5분내 의무 호가 이행도, 호가스프레드(Tick) 크기, 자발호가 비중, 호가수량, 관계법규 준수 여부

○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회원의 공정가격 산정기준 마련

(31조의6 6항~7항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내부절차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기준이 되는 내재변동성 산출·변경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회원이 내재변동성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행후 5거래일 내에 거래소에 통보
-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의 매도와 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일별로 그 변동현황을 공표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제도 개선 (31조의8 1호의2~3, 31조의5 3호·3호의2, 31조의7 4호 : 2007/12/27 개정, 2008/4/1 시행)

-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 유동성공급회원이 전부 보유(전부 매출)한 경우에는 매수호가(매도호가)의 제출을 제한함
- 기존 호가제출 면제에서 호가제출 금지로 강화
- 유동성공급회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일방호가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타방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 저가 종목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방법 개선

(31조의6 3항, 31조의7 3호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호가가격단위(1Tick)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예 : 2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초저가인 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 종목의 경우,
 - 1Tick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매도·매수 일방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당해 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 호가와 의 스프레드가 1Tick인 경우 양방향호가 제출의 예외로 인정됨을 명시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

(31조의10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상장지수펀드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회원을 교체해야 하는 기준을 상장규정 시행세칙 48조에서 이관하여 규정

○ 유동성공급업무 책임자 지정 (31조의3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업무 담당 직원을 정한 경우 주권의 경우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함

○ 자기주식 매매시 매매수량등의 신청기한 연장

(57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14 시행)

— 전일 16시까지 신청 → " 18시까지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관련 문구 및 표현 정비

(35조 1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주식회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함

○ 현물출자를 동반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신설 (2007/4/27 개정, 4/30 시행)

— 현물출자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권 변동시 당해 신주발행에 대한 매각을 제한함 (46조 5항)

— 현물출자로 인한 지배권 변동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을 폐지함 (80조 18호)

—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공시 등이 있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함 (95조 1항 9호·11호, 3항 4호·6호)

— 현물출자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권 변경 및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우회상장기업에 대하여 "우회상장기업"임을 공표함 (97조의2)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반영 (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에 “자본변동표”를 포함하고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함 (10조 1호, 32조 1항 5호, 33조 2항 4호, 36조 1항 4호, 36조 6항 3호, 80조 18호)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최대주주 변경제한 예외사유의 합리화
 - (32조 1항 13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최대주주변경제한 예외사유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최대주주변경을 추가함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32조 1항 5호 다목, 32조 1항 9호~12호, 34조 2항 6호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유보율 요건의 폐지
 - 양적요건의 유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질적 심사요건으로 대체
 - * 유보율=(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 폐지
 - 상장전 자본금의 50~100% 한도로 하고 있는 유·무상증자 제한을 폐지하되 기존 제3자 배정분등에 대한 매각제한은 유지
 - 상장전 합병등 제한 완화
 -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 합병한 경우 국내기업은 다음연도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신청 허용

-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Pro-forma 재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병등 제한요건 적용배제

○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15조 1항, 32조 1항 1호·7호·8호·15호·16호, 35조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원칙중심의 질적심사로 심사절차 간소화

- 현행 10개 사항, 15개 세부항목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 사항으로 단순화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

- 3개월 → 2개월

— 설립경과연수의 합리적 개선

- M&A(종속회사 편입, 자산양수)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에 의한 실질영업기간을 반영하도록 설립경과연수의 합리적 개선

— 부도 및 소송요건의 삭제

- 상장신청 1년 전에 부도사유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부도요건 및 중요한 소송계류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이 제한되는 현행 소송요건을 양적요건에서 폐지하고 질적심사요건으로 대체

—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 요건의 삭제

- 양적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 요건을 양적요건에서 삭제하고 제출서류로 대체

○ 외국기업 상장저해 요인 해소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개선 (2조 17항)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가능하도록 외국자회사 정의 조항 개정

— 외국지주회사의 재무요건 적용방법 개선 (34조 3항, 34조의2 2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관련 상장요건(매출액, 이익, 자본잠식 등)을 적용

— 외국지주회사 제출서류 간소화 (14조 3항, 14조의2 2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퇴출제도의 선진화 (75조, 80조, 95조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를 통한 즉시퇴출제 개선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을 때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장폐지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및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여 상장적격성을 판단

○ 부실기업 관리강화 (46조 6항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 제3자 배정증자 중 관리종목지정기업(자본잠식, 시가총액관련 관리종목지정사유에만 적용) 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의 증자분에 대해서 상장후 6월간 매각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확대 (41조의2 1항 2호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 및 적격외국증권시장을 추가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중 시가총액이 큰 상위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
-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중 세척에서 정하는 주가지수
- 적격외국증권시장의 범위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홍콩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 (세척 22조)
-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그 지수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체결을 상장심사요건에 추가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와 외국시장 중 거래시간이 유사한 일본의 니케이225 및 홍콩의 HSI(Hang Seng Index)를 지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 허용

(47조의2 : 2007/12/21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 중 투자 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

-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을 방지하고,
- 추가상장시에도 발행자, 기초자산, 모집·매출, 유동성공급계약체결의 요건은 신규상장시와 동일하게 적용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 예고기간 명확화

(91조 1항 5호·2항 1호·3항 : 2007/12/21 개정, 2008/1/2 시행)

— 권리행사기간 만료일의 1월 전에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30일 전 → 1월 전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현물출자에 의한 지배권 변동의 신설

(26조의2 3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결과 소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에 해당

-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일 전 1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어 온 경우는 제외

○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권면액 요건 적용예외 신설

(52조 단서 : 2007/10/24 개정, 10/25 시행)

- 외국원주 상장기업의 경우 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원화기준 권면액 적용이 곤란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인 상장주식 권면액 요건의 적용을 배제

- 국내법인의 상장주식 권면액은 6개(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로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확대 (24조의2 : 2007/12/27 개정, 2008/5/6 시행)

- 시장참가자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정함

-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예비심사청구월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추가
-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에 현행 코스피200 외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추가
- 해외시장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우선 적격외국증권시장 중 거래시간이 유사한 일본의 니케이225(Nikkei225) 및 홍콩의 항셱지수(HSI)를 추가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시 제출서류

(27조의2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신청서는 신규상장신청서(별지 29호 서식)를 준용한 서식으로 함

- 유동성 분산의 방지를 위해 추가상장 종목의 종목명(종목코드) 및 발행가액 등은 기상장 종목과 동일하게 부여

—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 신청시 제출서류는 예비심사청구 및 신규상장 신청시 제출서류로 하되,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내용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공시 강화 및 발행조건 변경

(35조의2, 별표3 : 2007/12/27 개정, 2008/2/4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신고사항에 인적분할 등 기초자산(주권)의 권리내용 변동을 초래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를 추가

- 이사회 결의 등 초기 공시사항 발생시부터 투자유의사항 등 예정사항을 공시하고 추후 확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법인의 거래소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신고 강화

- 신고업무 책임자 지정 및 변경시 거래소 통보

—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분쟁예방을 위하여 주권의 권리내용이 변경(기준가격 변경)되는 경우 등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

-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치가 동일하도록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여 상장 유지
 - 주권의 배당락 · 권리락
 - 주권의 주식(액면)분할 · 액면병합, 자본감소. 다만 만기평가일(5일)이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을 변경
-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즉시 동일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등을 변경하여 조기상환
 - 상장법인간 신설합병에 의한 주권의 재상장, 주권의 상장폐지 : 최종거래일을 주권의 거래정지 초일의 전일로 변경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 최종거래일을 상장폐지일의 전일로 변경
- 기초자산이 주권의 분할(인적분할)로 변경상장되는 경우
 -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존속 · 신설법인의 순자산분할비율에 의한 바스켓으로 변경
 - 그 밖의 경우에는 바스켓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최종거래일을 주권 거래정지 초일의 전일로 변경하여 조기상환
-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의 조정
 - 변경 행사가격 = 변경전 행사가격 × (주권 기준가격 ÷ 전일 주권종가) : 호가가격단위 최근 가격(2개인 경우 높은 가격)
 - 변경 전환비율 = 변경전 전환비율 × [(전일 주권종가 - 변경전 행사가격) ÷ (주권 기준가격 - 변경후 행사가격)] :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5자리에서 절상
- 최종거래일 및 만기평가일 등의 변경

- 주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기평가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한 15일 이전에 휴장일·정지일로 되는 경우 휴장일·정지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만기평가일을 순차적으로 앞당기고
- 만기평가 초일부터 소급한 15일 후에 휴장일·정지일로 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을 해당 일수만큼 순연함
- 만기평가일 변경시 최종거래일은 만기평가 말일로 변경
- 최종거래일을 앞당겨 조기상환하는 경우 만기평가일을 해당 일수만큼 순차적으로 앞당김
- 만기평가일·최종거래일(T) 변경시 만기일(T+2), 지급일(T+4)도 해당 일수만큼 순차적으로 변경
- 조기상환으로 인한 잔존기간 급감을 고려하여 만기평가가격 기준 지급액이 발행인 등이 산출한 최종거래일의 이론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론가격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만기평가일(초일 제외)이 권리락 등의 조치일을 포함하여 만기평가 가격 대상(5일 종가)이 주가단층 전·후의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 조치일 전의 주권 종가를 조정하여 만기평가가격 산출
 - 주권의 조정종가 = 조치일 전 각 주권종가 × (주권 기준가격 ÷ 조치일 전일의 주권종가)
- 그 밖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사전에 사업설명서 등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발행조건을 변경 (부칙 3항 단서)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특별손익 수시공시 의무의 폐지 (7조 2항 7호, 31조 1항 20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제정에 따른 '특별손익' 수시공시 의무 폐지
 - '특별손익' 수시공시 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불성실공시(금액 50% 이상 변경) 삭제

- 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2조 1항 2~3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을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개정 (2조 11항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로 정의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지침상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기업만 상장이 가능
 - 종래에는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정의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개정

(25조 1항 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개정

-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고의무사항 >

신고의무사항 자회사의 비중	부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여타 주요경영사항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	당일 공시	익일 공시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미만	익일 공시	공시의무 없음

* 기업존폐 관련사항은 개정후에도 기존과 같이 모든 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

7. 공정공시 운영기준

○ 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3조 2항~3항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제정에 따라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3조 2항~3항, 8조 3항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 용어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를 변경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매수대금 미납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의 의무화

(42조 5항~7항 : 2007/1/19 개정, 5/1 시행)

—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함

-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0일간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를 의무화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징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매도금액의 범위내에서 재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및 신용거래를 통해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 미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강화

(42조 5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다른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증권업과 관련된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위탁자에 대해서도 동결계좌로 적용하여 위탁증거금 징수를 의무화함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내역에 대한 회원간 통보의무의 폐지

(48조 2항 : 2007/4/27 개정, 5/1 시행)

- 미수금을 발생시킨 위탁자에 대한 회원간 정보 공유는 증권업과 관련된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회원간 통보의무를 삭제함

○ 추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 강화 (2007/7/20 개정, 9/3 시행)

-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
 - 시장감시규정은 이상급등종목을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원화
- 시장감시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경우에 매매거래를 정지 (25조 1항)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수시 매수금액 전액을 위탁증거금(현금)으로 징수 (42조 9항)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2007/7/20 개정, 2007/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랩계좌의 주문을 일괄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조 1항)
- 집합주문의 공정한 배분 등을 위해 집합주문의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의 기록·유지의무를 부과 (44조 2항)

○ 유동성 공급자(LP) 제도 도입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유동성공급회원 (12조의2)

- 유가증권을 발행한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정규시장에서 LP호가를 제출할 수 있음
- 자기매매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으로서,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LP평가가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할 것

— 유동성공급계약 (12조의3)

- 호가스프레드비율 및 호가수량 등을 유동성공급계약 필수사항으로 하여 회원과 상장법인간 계약 체결
- 회원은 LP계약 체결, 해지 및 중요사항 변경시 거래소에 통보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12조의4)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 이내로서 LP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5분 이내에 제출

* 호가스프레드비율 : 호가스프레드/최우선매수호가 가격 × 100(%)

* 호가스프레드 :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12조의5)

- 사전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정정 포함)하며, 호가수량은 세칙에 위임
- LP호가는 양방향 제출이 의무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시 가격(원칙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 매도호가 제출시 : 하한은 '최우선매수호가+1tick', 상한은 $\text{Min}\{\text{Max}[\text{최우선매도호가}, \text{최우선매수호가} \times (1 + \text{호가스프레드비율})], \text{상한가}\}$
 - 매수호가 제출시 : 상한은 '최우선매도호가 - 1tick', 하한은 $\text{Max}\{\text{Min}[\text{최우선매수호가}, \text{최우선매도호가} \times (1 - \text{호가스프레드비율})], \text{하한가}\}$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12조의6)

- LP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원의 유동성공급 제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표
- 유동성공급 실적 평가를 위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회원의 제출의무를 부과

○ 공매도하는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완화

(9조의3 2항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원활한 호가 제시를 위하여 LP의 공매도시 가격제한을 완화하여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 가능

- 자사주의 신청시한 확대 근거 마련 (10조 3항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기존에는 전일 장종료후부터 1시간 이내이나, 제도 일원화 차원에서 세칙으로 위임

10.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연말폐장일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근거 삭제
(4조 1항 : 2007/6/1 개정, 6/8 시행)
 - 시장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연말폐장일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근거를 삭제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변경 (6조 1항 : 2007/6/1 개정, 6/8 시행)
 - 임의종료 종목으로 인한 투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는 장종료후부터 실시
- 동시호가의 순위 적용례 변경 (19조 3항 : 2007/6/1 개정, 8/6 시행)
 - 시가 등의 결정시의 동시호가의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까지 배분받지 못한 경우 동 가격결정시에 동시호가 배분원칙에 따라 우선 배분받음

- 최초 매매개시기준가격 적용 종목의 대응증권 사정비율 조정
(48조 2항 : 2007/6/1 개정, 8/6 시행)
 - 최저호가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정비율을 차등화하여 보수적으로 운영

- 시장감시 경보체제 구축 강화 (2007/7/25 개정, 9/3 시행)
 - 이상급등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이상급등종목지정예고를 투자참고사항 공표에서 배제 (52조, 54조~55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시 매매거래정지요청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 (30조 1항)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응증권의 지정을 배제 (44조)

- 일임형 랩계좌(Wrap Account)의 집합주문 허용 (2007/7/25 개정, 9/17 시행)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일임형 랩계좌의 주문내용을 호가할 수 있도록 함 (7조의2)
 -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집합주문 허용
 - 집합주문 구분 표시의무 부과 (7조 1항)
 -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랩계좌도 구분 표시 의무 부과

○ 차입 증권의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완화

(8조의4 1항 : 2007/7/25 개정, 9/17 시행)

—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시가가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공매도호가의 제출 직전까지 시가와 다른 가격의 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의 그 직전가 개념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규정 9조의3 1항 단서 적용을 배제

* 규정 9조의3 1항 단서: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 가능

○ 외국기업 상장관련 매매거래제도 보완

(47조 1항~2항, 별표1 : 2007/7/25 개정, 7/26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기준시세·사정비율”을 “전일종가·70%”로 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시 원주가 보통주(우선주)인 경우에는 보통주(우선주)와 동일한 호가가격범위를 설정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시 평가가격을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환산가격으로 함

• 2차 상장을 고려하여 1차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환율 고려-환산가격)이 모집 또는 발행시 발행가액의 90%(또는 50%)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기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와 권리내용이 다른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는 경우, 기상장우선주와 권리내용이 다른 우선주를 상장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격을 산출

○ 외국인 취득한도 종목의 제한적 대량거래 허용

(24조 2항: 2007/7/25 개정, 9/17 시행)

- 외국인 취득한도 종목에 대하여 대량거래네트워크시스템(K-Blox)을 이용한 대량거래를 허용

○ 특정사유의 매매거래 정지기간 명시

(30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 매매거래 체결지연 종목의 체결지연 기준 단축

(30조 1항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매매거래 체결지연 기준을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 등의 공표

(31조의2 : 2007/12/27 개정, 2008/1/2 시행)

- 규정 25조·26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중단 또는 재개시 이를 공표
- 매매거래 체결지연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를 공표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신설 (2007/4/27 개정, 4/30 시행)
 -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코스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당해 코스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를 부과함
 - 경영권이 변동되는 현물출자로서, 비공개기업이 일정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코스닥기업의 상장을 폐지 (19조의3 3항)
 - * 일정요건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등
 - 비공개기업이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당해 코스닥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공표 가능 (19조의4)
 - 비공개법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보유하게 되는 코스닥기업 주식에 대해 상장후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 (22조의3 1항)
 - 경영권변동이 있는 경우 2년간, 경영권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

-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한 주식 분산요건 특례의 확대
(6조 2항 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프리보드 지정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식 분산요건에 프리보드 지정기간 중의 모집실적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도 인정함
 -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시 거래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모집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분산토록 요구

○ 성장형 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지정 유도

(21조 1항 2호·5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프리보드 지정(1년간)을 거친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Lock-up을 미적용함

-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장후 1월간 당해 투자지분의 매각을 제한했음

* 성장형 벤처기업 : 성장동력업종을 영위하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으로서 수익성요건(경상이익, ROE)을 면제받아 상장한 기업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반영 (6조 1항 5호, 7조의2 1항 4호, 17조 4항 2호,

28조 1항 2호의2·8호, 38조 1항 4호의2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상장·퇴출요건상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CB, BW 주식전환분의 보호예수대상 명시 (21조 1항 1의2호, 21조 8항, 22조

1항 1의2호, 22조의2 1항 1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한 보호예수 대상에 CB, BW 등의 주식전환분이 포함됨을 명시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최대주주 변경제한 예외사유의 합리화
(6조 1항 15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변경 제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유증에 의한 경우로서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우량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진입제도 개선 (2007/7/20 개정, 7/23 시행)
 - 해외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 2차상장시에도 외국기업 2차상장시와 동일한 상장요건 특례를 도입 (7조 7항, 21조 5항, 28조 12항)
 - 주식분산요건 완화, 상장 전 증자제한 및 상장 후 매각제한 미적용
 -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특례 마련 (6조 1항 3호·8호, 7조의2 1항 2호)
 -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완화, 유상증자한도 제한에서 해외 동시공모분은 적용 제외
 -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법으로 구주매출을 허용(6조 1항 3호·19호 마목)
 - 기업경영의 안정성 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시장 관리체계 개선 (2007/7/20 개정, 7/23 시행)
 - 종전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변경하여, 시장 관리체계를 관리종목으로 일원화 (8조, 35조, 38조, 41조)

- 추가상장 유예 근거의 마련 (18조 5항 : 2007/7/20 개정, 7/23 시행)
 - 신주발행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벤처금융 임직원의 동반투자규제 합리화
 - (6조 1항 19호 다목 : 2007/7/20 개정, 7/23 시행)
 - 벤처금융 임직원 등의 동반투자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처분이후 예비 심사청구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요건 적용예외
 - (28조 1항 12호 다목 : 2007/10/12 개정, 2008/1/14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6조 1항 8호·12호, 7조의2 1항 2호, 21조 1항 3호, 22조 1항 4호, 22조의2 1항 4호 :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무상증자 제한 규제 완화
 - 무상증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한도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무상증자제한 요건을 완화
 - 상장전 합병등 제한 완화

- 결산 전 3월 이내 합병등의 경우 심사청구 제한기간을 “차기 결산 확정시까지”에서 “차기 반기결산 확정시까지”로 단축
- Pro-forma 재무정보 제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은 합병후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 Pro-forma 재무정보 : 당해 합병 등의 재무적 효과를 검증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재무관련서류

○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질적심사기준 체계의 합리적 정비 (6조 1항 19호)
 -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질적심사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간소하게 정비
- 설립후 경과년수 요건의 합리적 개선 (6조 1항 1호)
 - “설립후 3년경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 등의 경우에 인수 등 이전의 실제 사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질적심사로 대체 가능한 요건인 “중요한 소송 없을 것” 및 “부도사유 해소 후 6월이 경과하였을 것”을 외형요건에서 삭제 (6조 1항 13호, 19조 1항 2호, 19조의2 1항 2호, 19조의3 2항~3항)
- 제출서류로 대체 가능한 요건인 “명의개서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통일규격 유가증권일 것”을 외형요건에서 삭제 (6조 1항 10호~11호)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간을 “예비심사청구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 (8조 3항)

○ 외국기업의 상장편의성 제고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외국자회사의 정의를 수정 (2조 29항)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재무요건을 적용하고 자회사 재무제표등의 제출은 생략 (4조의2, 7조의2, 41조)

○ 퇴출 및 시장관리제도 개선 (2007/12/7 개정, 2008/1/1 시행)

- 대규모손실에 의한 퇴출요건의 실효성 강화 (28조 1항 3호, 38조 1항 4호의2)

- 대규모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사유 개선
 - 2년 연속 → 3년간 2회(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인 경우는 적용제외)
- 대규모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판단기준 수정
 - 자기자본의 50%이상(&자본금의 50%이상) → " (&10억원 이상)

- 3자배정증자에 대한 관리강화 (23조)

-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변경을 유발하는 3자배정이나 일부 관리종목 지정법인의 3자배정 증자시 당해 증자분을 6월간 보호예수

- 회생절차 개시신청기업에 대한 퇴출절차 개선 (28조 1항, 14조의2, 38조 1항 6호, 41조 1항~2항)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으로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고, 회생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
- 실효성 없는 퇴출요건 폐지 (28조 1항 5호·7호, 38조 1항 12호·19호)
- 주가에 의한 퇴출요건 삭제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에 의한 퇴출요건 삭제

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코스닥상장기업 분할관련 주된 영업정지 기준의 특례 신설

(26조 2항 4호 : 2007/1/29 개정·시행)

- 코스닥상장기업 분할시 주된 영업정지 간주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에 대하여는 이의 적용을 면제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된 영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더라도 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정지의 예외로 인정함
 - 기존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주된 영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의 정지로 보아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에 지정했음

○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권 변동 개념의 설정

(19조의3 2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현물출자 관련 신주발행 공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 결과 소유하게 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 다만, 비공개법인의 5%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 관련 신주발행 공시일 1년 이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의 마련

(19조의3 7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우회상장 여부 및 비공개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하여 당해 공시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 이의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권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우회상장 절차와 관련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설정

(29조 1항 4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경영권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증자 공시일

- 다만,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확인일까지

○ 우회상장 관련 3자 배정 신주의 추가상장 신청시 제출서류의 보완

(18조 1항 5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영업(주식)양수와 연계한 3자 배정이나 현물출자에 의한 3자 배정 증자분의 추가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

- 우회상장 여부 등을 증자완료 시점에서 다시 확인

○ 외국투자자에 대한 매각제한 특례의 도입

(20조 1항 2의2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 제3자 배정으로 받은 신주에 대한 매각제한(상장후 1년간)을 적용함에 있어,

- 당해 기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후 1년간 동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각제한의 예외로 인정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의 반영 (19조의2 3항, 26조 1항 2의2호·8호 :

2007/4/27 개정, 4/30 시행)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변경

- 우선심사 범위의 명확화 (8조 2항 : 2007/4/27 개정, 4/30 시행)
 - 지방벤처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장예비심사 순서 우선권 부여와 관련하여, 심사결과통보 기한(심사청구 후 3월) 내에 결과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을 명시

- 시장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9조 1항 1호 : 2007/7/23 개정, 2008/1/1 이후에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법인부터 적용)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관리종목 지정일)”로 개선

기 존	개 정
(관리 종목) “확인일+2일” (투자유의종목) 미정지 또는 1일 정지	(관리종목) “확인일+1일”

- 해외상장 국내기업의 2차상장 및 국내외 동시공모의 대상이 되는 해외증권시장의 범위 명시(7조 1항 : 2007/7/23 개정 · 시행)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

- 외국기업의 상장폐지요건 등의 적용시 기준환율 명시
(33조의4 : 2007/7/23 개정 · 시행)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실적의 경우에는 반기말) 현재의 환율을 기준환율로 명시

- 상장요건 유연화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외형요건에서 “명의개서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통일규격 유가증권일 것”을 삭제함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의개서대행계약서와 통일규격주권 견양을 명시 (3조 2항, 14조~18조)
 - 외국지주회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명시 (2조 3항)
 - 외국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나 분기종료일 현재의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한 단축 (8조 3항)
 - 예비심사 청구 후 “3월” → ” “2월”
 - 외국자회사 정의 수정에 따라, 코스닥상장계약서상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유지의무 수정 (상장서식 8-2)
-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회생절차개시 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운영방안 마련 (32조의2)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심사방법 및 절차를 통보
 -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을 심사기준일로 하여 매 1년마다 심사. 단, 심사기준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심사

- 심사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상장위원회 개최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 결정
-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매매거래 정지 기간 설정 (29조)
 -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 다만, 경상이익 요건 및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매매거래정지 해제 가능
- 이의신청이 가능한 퇴출사유로서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를 추가 (33조의3)
- 관리종목 지정사유 개선에 따라 지정 및 해제 시기 변경 (26조)
 - 주가요건 등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삭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신설
 -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날의 익일에 관리종목 해제
- 주된 영업 정지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26조)
 -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주된영업 정지 사유로 추가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3조의2, 13조 :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하는 경우 예탁계약서 사본을 신규상장시 제출서류에서 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로 변경

○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6조 12항 4호, 38조 : 2007/12/28 개정, 2008/1/14 시행)

-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시 관리종목 지정 해제
 - 유동성공급기간 동안의 연부과금 면제 조항 신설
- 주거래은행 의견서 서식 개정 (상장서식 15 : 2007/12/28 개정, 2008/1/1 시행)
-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의 금융부실 거래처 분류가 소멸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우회상장 확인서 서식 개정 (상장서식 25~26 : 2007/12/28 개정, 2008/1/14 시행)
-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신고서제출 일 6월전 현재의 주주명부요약표를 제출하도록 명시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특별손익의 수시공시의무 폐지 (6조 1항 2호, 30조 2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특별손익 관련 수시공시의무 및 공시 변경 사항을 삭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내용 중 손익계산서 구조가 변경되어 '특별손익' 항목이 폐지됨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상손익(실)' 용어의 변경

(6조 1항 2호, 21조 1항 2호~3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를 변경

- '경상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으로, '경상손실'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로 변경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개정

(2조 24항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정의

- 대상이 되는 자회사 범위와 실제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기준상의 자회사 범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에 대비하여 개선함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

기 준	개 정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개정

(16조 1항 1호 : 2007/5/11 개정, 5/17 시행)

-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
 - 종래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기준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사항 >

공시의무사항 자회사 비중	부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여타 주요경영사항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 10% 이상	당일 공시	익일 공시
자회사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 10% 미만	익일 공시	공시의무사항 아님

<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

기 준	개 정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외국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변동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공시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변동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공시

1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상손실' 용어 변경

(11조 1항 2호 : 2007/5/14 개정, 5/17 시행)

— '경상손실' 용어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로 변경

- 경상손익 계정이 중단사업손익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회계계정 용어 변경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관련 매매거래정지 사유 개정

(11조 1항 5호 : 2007/5/14 개정, 5/17 시행)

— 자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이 외국지주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 시 매매거래를 정지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및 자회사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신고 의무 개정에 맞춰,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관련 매매거래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

○ 외국기업의 공시를 위한 환율환산 기준의 명확화

(6조의5 : 2007/8/2 개정, 8/6 시행)

— 환율환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공시금액 화폐단위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 적용환율 기준 >

구 분		적용환율* 기준
수시공시상 공시발생금액		○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직전일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공시 기준 금액	자기자본	○ 연도 중 증감분이 없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 연도 중 증감분이 있는 경우 - 최근 증감분 발생일(증자 납입일 또는 감자기준일 등 기준)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자산총액, 매출액,생산액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수시공시상 손익구조변경공시		○ 최근(직전) 사업연도 재무사항 - 최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 적용

* 외국환거래규정 1-2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율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 호가유형의 다양화 (2조 16항~20항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Ⅱ편(국채선물거래등) 상품의 호가유형을 지정가·시장가호가 이외에도 추가로 기존의 Ⅲ편(코스피200선물거래등)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정가·시장가의 성격이 복합된 호가(최유리지정가·조건부지정가)를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호가선택의 기회를 부여

○ 스프레드거래방식에 의한 포지션 이월(Roll-over) 방법의 채택

(61조~63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포지션 이월의 방법인 복합주문방식(Ⅱ편 제도)과 스프레드거래방식(Ⅲ편 제도)의 중복기능은 단일화하되, 스프레드거래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

- 복합주문방식은 청산하려는 결제월물과 새로 보유하려고 하는 결제월물에 각각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
- 스프레드거래방식은 양 결제월물간 가격차이(스프레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스프레드시장이 존재
- 포지션 이월(Roll-over)은 헤지 또는 장기투자자가 최종거래일에 만료되는 결제월물을 청산하고 다음 결제월물을 재차 보유하는 것으로 2개 결제월을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체결하여 근월물을 원월물로 이월(Roll-over)하는 것

— 원월물의 유동성이 낮은 우리시장의 특성상 대량물량이월에 따른 결제월의 가격급등락에 의한 시장충격 방지 및 전산부하의 최소화를 위해 스프레드거래방식을 선택

- 복합주문방식은 이월 대상인 근월물과 원월물이 동시 체결되어야 하나 유동성이 낮은 원월물의 체결곤란으로 포지션 이월이 원활하지 못함
- 복합주문방식은 복잡하여 투자자 이해도가 낮고 전산부하 가중으로 전산의 효율성을 저해

< 복합주문방식과 스프레드거래방식의 이용도 >

구분	일평균거래량('05년)	채택방식	전체거래량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	176,099	스프레드거래	1.9%
스타지수선물거래	2,657	스프레드거래	5%
3년국채선물거래	45,073	복합주문	4.3%
미국달러선물거래	10,711	복합주문	6.6%
Nikkei225선물거래	73,100	스프레드거래	2.2%
Nikkei300선물거래	578	스프레드거래	49.4%

- * 코스피200선물 스프레드거래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200선물 결제월 자체를 이용한 Roll-over가 많기 때문임
- * 유동성이 낮아 선물 결제월 자체를 이용하기 곤란한 스타지수선물, Nikkei300선물의 경우 스프레드거래를 많이 이용

○ 단일가매매에 의한 종가 결정 (72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Ⅱ편 및 Ⅲ편 상품의 종가를 단일가매매로 단일화하여 이를 정산가격으로 사용

- 기존에는 Ⅱ편 상품의 종가는 접속매매로 결정하고 정산가격은 장 종료전 1분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반면, Ⅲ편 상품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이를 정산가격으로 사용했음

○ 상·하한가 단일가호가의 다단계 배분

(71조 3항 2호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Ⅱ편 및 Ⅲ편 상품을 상품별 특성을 감안한 다단계(9단계) 배분으로 단일화하여 소액투자자와 대형투자자간에 배분의 공평성을 도모

- 기존에는 Ⅱ편 상품의 경우 상·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에 대해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1단계 배분하는 반면, Ⅲ편 상품은 수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다단계(9단계) 배분했음

○ 위탁자간 착오거래 정정 불허 (80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비실명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 타인의 예탁자산을 이용한 증거금의 일시 충당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간 착오매매의 정정을 단일제도에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기존에는 Ⅱ편 상품의 경우 위탁자간 착오매매 정정을 허용하는 반면, Ⅲ편 상품은 허용하지 않았음

○ 동일종목의 매도·매수 포지션의 상계

(95조 : 2007/1/19 개정,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동일종목의 매도·매수 포지션을 자동상계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함

- 기존의 Ⅱ편 상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동상계하거나 양건을 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Ⅲ편 상품은 자동상계만 허용했음
- 3월물 매도 100계약, 3월물 매수 100계약 보유를 허용(양건)하는 대신 자동으로 상계시킴(3월물: 0)

○ 10년국채선물거래의 도입 (32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Ⅲ.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5% 및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 표준물로 함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는 액면 5천만원, 거래승수는 50만으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기초자산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표준물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8%,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표준물
거래단위	5천만원	1억원
거래승수	50만	100만

— 결제월 (33조 2항)

- 10년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3개로 하고,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9개월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결제월의 수	3개	2개
거래기간	9개월	6개월

— 호가가격단위 (34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02(10,000원)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호가가격단위	0.02	0.01
호가가격단위당 금액	10,000원 (50,000,000/100×0.02)	10,000원 (100,000,000/100×0.01)

— 최종결제일 (35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T+2)로 함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최종결제일	T+2일	T+1일

— 최종결제방법 등 (36조, 36조의2)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실물인수도결제)으로 함
 - 국채수량: 액면 5,000만원×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대금: 【최종결제가격×거래승수×전환계수+경과이자】 ×최종결제수량
 - * 전환계수 : 인수도시점의 “국고채권 표준물의 가치”에 대한 “인수도적격국채의 가치”의 교환비율로, 표준물과 인도물 간의 발행조건 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계수
 - * 경과이자 : 최종결제일 기준으로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최종결제일까지 발생한 인도대상 국고채권의 경과이자금액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 인수도적격채권 : ① 원화로 표시된 국고채권, ② 기타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

구 분	10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기존)
최종결제방법	실물인수도결제	현금결제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결제수익률 기준의 현물가격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112조 1항 2호)

-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
까지의 기간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000계약
- 여타 제도는 기존 3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 (3조~4조, 32조, 34조~35조)
 - 스프레드거래제도 도입
 - 거래시간, 1계약금액, 가격의 표시, 최종거래일
- 10년국채선물의 거래개시 방법 및 거래개시일 (부칙 2조)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상장일에 세척에서 정하는 3개 결제월을 동시
에 거래 개시함

○ 주식선물거래의 도입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주식선물거래의 대상 (21조의2)
 - 주식선물거래의 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초주권으로 함
 - 기초주권은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종목(15개)으로 함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도입 (3조)
 - 기존 선물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프레드거래제도를 주식선물에도
동일하게 도입
 -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 주식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 수량
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와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
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종목수 : 최근월물과 여타 각 결제월물 간 3개로 구성
 - 가격 : 원월물가격-최근월물가격

- 체결방법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는 스프레드호가만의 경쟁으로 체결되고, 이 경우 스프레드거래의 체결수량과 동일 수량이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에 체결된 것으로 봄

— 거래승수 (21조의3)

- 주식옵션과의 연계거래 용이 및 편의성 제고하고자, 주식선물의 거래승수를 주식옵션과 동일하게 10으로 함
- 기초주권의 분할, 주식병합 등에 따라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로 주식선물의 기준가가 변경되는 경우, 선물의 매수·도자 간 체결한 계약의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거래승수 조정하고,
- 다만, 기초주권 1주가 1주의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 승수를 조정하는 대신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고, 미결제약정이 없는 결제월종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만 조정

— 호가가격단위 (21조의5)

-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현물주식에 대한 헤지의 정밀도를 높이고 세밀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호가가격단위의 1/2로 하되, 거래편의를 위하여 1만원 미만은 5원으로 단일화함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기초주권의 가격	주식선물시장	주식시장
1만원 미만	5원	5원,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5원	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0원	1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0원	500원
50만원 이상	500원	1,000원

* 5천원 미만 : 5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 10원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종목의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중 낮은 가격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가격 (21조의6~7)

- 주식선물의 최종거래일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결제일의 두 번째 목요일로 함
- 주식선물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증가로 하고, 증가가 없는 경우 세척에서 최종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함

— 가격제한폭 (69조)

- 주식선물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주권의 가격제한폭과 동일하게 기준가격의 15%로 정함

— 호가공개범위 (81조)

-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기초주권의 1/2)와 기초주권(10단계)의 호가공개범위를 감안하여 주식선물의 호가는 10단계 우선호가를 공개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112조)

- 결제불이행위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정하되, 구체적인 수량은 기초주권의 상장주식수, 거래승수 등을 감안하여 세척에서 정함

○ CD선물 및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3조~4조, 9조, 32조~42조, 100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CD선물 폐지

- 은행간 신용도 및 발행금리의 차이로 인한 표준화의 곤란으로 대표성이 없고, 유사한 단기금리시장인 통안증권선물이 존재

— 3년국채선물옵션 폐지

- 2002/5/10 상장 이후 지속적인 거래부진 및 선물옵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참여 부진으로 상장폐지

○ 투자위험종목 대응증권 제외 (88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추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응증권 제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2007/7/20)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엔·유로선물의 증거금기준가격 산출 대상환율의 변경

(별표5 : 2007/2/5 개정, 2/7 시행)

— 엔·유로선물의 증거금기준가격 산출시 이용되는 대상환율을 Reuter, Bloomberg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변경

- 기존에는 일본은행이 고시하는 15시 기준 환율(해당 환율이 없는 경우 호주준비은행이 고시하는 자국시간 16시 기준 환율)을 이용

< 환율간 차이비교 >

구 분	BOJ-RBA		BOJ-국제시세		RBA-국제시세	
	\$/¥	€/ \$	\$/¥	€/ \$	\$/¥	€/ \$
차이(평균)	0.01	0.0001	0.01	0.0001	0.01	0.0001

* 대상기간 : '06.10.1~'06.12.31 (RBA환율의 경우 '06.10.1~10.27)

- 금선물의 거래증거금률 조정 (26조 2항 3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국제금시세의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5%)을 상회하고 있어 증거금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거래증거금률을 상향 조정
 - 금선물 거래증거금률 인상 : 5% → 6%

<금선물 거래대상 가격변동성>

최근 1년	이전 1년	증감
5.32%	3.37%	1.95%

* 기준일 : 2006. 12. 31

- 금선물거래 결제회원의 통지항목 추가
 - (44조 1항 2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거래 최종거래일에 결제회원은 인도물품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무관세인지 여부도 거래소에 통지

- 무관세 금괴 인도자의 교부서류 보완
 - (51조 2항 : 2007/3/23 개정, 3/27 시행)

— 무관세 금괴의 인도의사를 통지한 자는 관세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분할증명서”)를 인수자에게 인도할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호가입력 내용 중 국적란에 국적코드를 추가 (2007/5/28 개정, 5/29 시행)

—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78, 네덜란드령 안틸레스:79, 맨섬:80, 쿡아일랜드:81, 사이프러스:82, 지브롤터:83, 몰타:84, 모리셔스:85, 세인트빈센트 그레다딘:86, 슬로베니아:87, 우즈베키스탄:88, 모나코:89, 마셜:90, 말레이시아 라부안:91

○ SK주식회사를 SK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

(별표 7의2 : 2007/7/24 개정, 7/26 시행)

—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식회사가 SK에너지주식회사와 SK주식회사로 회사분할됨에 따라 주식옵션 기초주권을 분할비율 및 주요사업을 감안하여 SK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함

- SK에너지주식회사 분할 지분 : 71%
- SK에너지주식회사 주요사업 : 석유·화학 등

○ 주식옵션 행사가격의 추가설정방법 개선

(10조 2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주식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의 간격(표준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내가격 또는 외가격의 행사가격(종목)이 4개가 되도록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

- 기존에는 추가설정 여부 확인시 기초주권의 배당락 등으로 조정된 모든 행사가격을 제외하여,
- 조정된 행사가격이 표준행사가격인 경우에는 비표준행사가격만 제외하고 내가격 또는 외가격 종목이 4개를 초과하여 추가로 설정될 수 있음

○ 협의대량거래의 공표사항 명확화 (68조 1항 2호 : 2007/8/13 개정, 8/27 시행)

— 당사자간의 상대거래인 협의대량거래의 성질상 약정수량만 표시

○ 선물정산가격에서 최종거래일의 이론가격 제외

(93조 1항 4호, 3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최종거래일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수렴하여 같아지므로 최종거래일의 선물정산가격에서 이론가격을 제외

- 최종거래일에 약정가격, 의제약정가격 및 기세가 없는 종목의 정산가격은 전일 정산가격과 이론정산가격의 괴리율과 관계없이 전일의 정산가격으로 함

* 정산가격: 최종의 약정가격 → 최종의 의제약정가격(스프레드가격) → 기세 → 전일 정산가격 → 이론가격(전일 정산가격과 이론가격의 괴리율이 거래증거금률의 50% 초과시)

○ 통화선물 이론가 산정방식 변경 (별표10 : 2007/11/16 개정, 11/26 시행)

- 1일물 콜금리 대신 외환스왑 포인트에 내재된 1개월, 3개월, 6개월 원화금리를 사용하여 CRS 금리(1년물)와 선형 보간하여 산출된 금리를 이론가 산출에 사용
 - 스왑포인트 내재금리는 로이터가 고시하는 스왑포인트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 내재금리를 사용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 상장폐지 (16조, 34조, 43조, 45조~48조, 73조, 81조~84조, 86조~87조, 93조~94조, 별표1, 별표5, 별표7, 별표9, 별표14, 별표16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 상장폐지와 관련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을 정비함

- 옵션증거금 산출방법 개선 (48조 6항, 84조 5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옵션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당해 종목의 연 내재변동성 대신 평균 내재변동성 사용

17. 선물시장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 엔·유로선물의 현물가격 산출 대상환율의 변경
(별표 : 2007/2/5 개정, 2/7 시행)

- 엔·유로선물의 이론가격 산출시 현물가격으로 이용되는 대상환율을 Reuter, Bloomberg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변경
 - 기존에는 일본은행이 고시하는 15시 기준 환율(해당 환율이 없는 경우 호주준비은행이 고시하는 자국시간 16시 기준 환율)을 이용

18.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 국채선물 등의 전용계좌에 대해 기본예탁금제도의 적용 면제
(20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하되, 국채선물 등의 전용계좌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
 - 기본예탁금제도는 상품특성과 관계가 적고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도모장치이므로 제도취지상 국채등 모든 상품에 적용함이 바람직함
 - 다만, 기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II편(국채선물거래등) 상품 투자자가 국채 등을 전용으로 거래한다는 신청을 할 경우, II편 상품 전용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동 계좌에 대해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
- 위탁증거금산출방법의 단일화 (25조~31조 : 2007/1/19 개정,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위탁증거금산출방법을 국내 개발의 코스피200증거금(COMS)으로 단일화하되, 상품별 납부수준은 기존을 유지

- 국내 개발의 COMS는 세계적 유동성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결제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
- 다만, COMS로 단일화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불리함이 없도록 상품별로 기존의 장수 수준을 그대로 유지

○ 10년국채선물거래의 도입 (17조, 19조, 36조, 45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하여 국채등 전용계좌에서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승수는 50만으로 함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함

- 국채수량 : 액면 5,000만원×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대금 : 【최종결제가격×거래승수×전환계수+경과이자】 × 최종결제수량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

—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000계약

○ 주식선물시장 개설 (36조, 45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최종결제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기초주권의 증가(기세 포함)

- 최종결제차금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선물가격)-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주식선물승수(10)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 결제불이행위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정하되, 구체적인 수량은 기초주권의 상장주식수, 거래승수 등을 감안하여 세척에서 정함
- 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는 증거금액, 명목가액, ELW 헤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함(상장주식수의 0.3% 수준)

○ CD선물 및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19조, 36조, 39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CD선물 상장폐지

- 은행간 신용도 및 발행금리의 차이로 인한 표준화가 곤란으로 대표성이 없고, 유사한 단기금리시장인 통안증권선물이 존재하여 상장폐지

— 3년국채선물옵션 상장폐지

- 2002/5/10 상장 이후 지속적인 거래부진 및 선물옵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참여 부진으로 상장폐지

○ 투자위험종목 대응증권 제외 (21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추가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응증권 제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2007/7/20)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9.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금선물의 위탁증거금률 조정 (19조 1항 3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을 조정함에 따라 그에 연동(1.5배 수준)되는 위탁증거금률도 조정

구 분	위탁증거금률		거래증거금률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금선물	7.5%	9.0%	5.0%	6.0%

- 금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조정 (20조 1항 1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의 위탁증거금률을 조정함에 따라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계약당 주문증거금 수준도 조정
 - 금선물의 계약당 주문증거금 인상 : 100만원 → 180만원
- 관세가 면제되는 금괴에 대한 인수도절차 보완
(24조 1호·8호 : 2007/3/23 개정, 3/27 시행)

— 금선물종목의 순매도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통지 사항을 추가

- 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관세가 면제되는 금괴인지 여부도 통지

— 수입물품 중 분할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하는 대상을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으로 함

- 무관세 수입물품 인도자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분할증명서 인도대상에서 제외

○ 수탁의 조건 (4조 4항 : 2007/5/3 개정, 8/27 시행)

— 동일 회원이 추가로 계좌개설시, 위탁자에 대한 약관·위험고지서의 교부를 생략 가능

- 약관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

○ 선물·옵션계좌의 구분 (5조 7호~8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사전위탁증거금계좌	사후위탁증거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매수전용계좌 • 국채등전용계좌 • 사전위탁증거금일반계좌 - 옵션매수전용계좌 및 국채등전용계좌를 제외한 사전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 할인계좌는 주식상품에만 적용

○ 주문내용 (6조 7호~8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 국채선물거래 등에도 비회원선물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거래와 자기거래를 구분
- 코스피선물거래 등에도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주문제도를 도입

○ 수탁의 거부 (9조 1항 2호~3호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예탁총액만 부족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총액증거금을 감소시키고 예탁현금의 범위내에서 현금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을 허용
- 예탁현금만 부족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증거금을 감소시키고 예탁총액의 범위내에서 총액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을 허용

○ 위탁증거금률 (24조 1항 : 2007/5/3 개정, 8/27 시행)

구 분	최저율	비 고
주식상품거래	15%	기존 동일
3년국채선물거래, 3년국채선물옵션거래	1.5%	
5년국채선물거래	1.8%	
통안증권선물거래, CD선물거래	0.3%	
미국달러선물거래, 미국달러옵션거래	3%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3.75%	3.5% → 3.75%
금선물거래	9%	기존 동일

○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25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위탁증거금 구간수치는 각 기초자산별로 31개(이상)로 함

장중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장종료후 위탁증거금 구간수치
○ 전일 현물증가를 기준으로 설정 - 전일 현물증가 : 1개 - 전일 현물증가 ± (전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2개 - 전일 현물증가 ± (전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1/15) 간격 : 28개(이상)	○ 당일 현물증가를 기준으로 설정 - 당일 현물증가 : 1개 - 당일 현물증가 ± (당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2개 - 당일 현물증가 ± (당일 현물증가 × 위탁증거금률 × 1/15) 간격 : 28개(이상)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이론가격 등 (26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구간수치별 이론가격 : 장중의 경우 전일의 장종료를 기준으로, 장종료 후의 경우에는 당일의 장종료를 기준으로 구간수치별 이론가격을 산출
- 옵션거래의 최대 위탁증거금 이론가격 : 풋옵션의 경우 최저 위탁증거금 구간수치의 이론가격, 콜옵션의 경우에는 최대 위탁증거금 구간수치의 이론가격
- 매도옵션 조정위탁증거금 이론가격 (SOA)

장중 SOA	장종료 후 SOA
$(\text{전일 현물증가} \times \text{위탁증거금률} \times \text{SOA율}) + \text{전일 옵션증가}$	$(\text{당일 현물증가} \times \text{위탁증거금률} \times \text{SOA율}) + \text{당일 옵션증가}$

- SOA의 최저율 : 25%

-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 기준가격 (27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위탁증거금 기준가격은 옵션거래의 각 종목별로 장중에는 전일의 옵션종가(당일의 기준가격), 장종료 후에는 당일의 옵션종가(당일의 거래증거금 기준가격)로 함

- 결제이행전 손익금액의 위탁증거금 반영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중)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28조)
 - 당일에 체결된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반대거래의 순손실과 옵션거래의 순매수금액의 합계를 장중 위탁증거금에 반영 (장종료 후에는 29조 2호의 수수일전 순손실금액에 반영)
 - 선물거래의 종목별 반대거래 순손실 : (거래량가중 평균매수가격 - 거래량가중 평균매도가격) × 반대거래수량 × 거래승수
 - 수수일전 순손실 결제금액 (29조)
 - 거래의 성립 및 일일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시한 전의 결제 순손실금액(인수도결제금액은 제외)을 위탁증거금에 반영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 수수일이 도래한 수수시한 전의 결제 순손실금액
 - 장종료후 수수일전 순손실금액 : 수수일 도래 전일의 결제 순손실금액

-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30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사전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음의 합계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함

- 신규주문 위탁증거금액 (선물스프레드거래는 제외)

선물거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옵션거래 매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옵션거래 매도의 신규주문시	위탁수량 × 거래승수 × (최대 이론 가격과 조정 이론가격중 높은 이론 가격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선물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신규 및 반대거래 여부를 불문) :
위탁수량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
- (현재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의 장종료 기준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 위탁증거금액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150만원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75만원
그 밖의 선물스프레드거래	50만원

* 미결제약정에 대한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과 동일 (31조 6항)

○ (전일기준)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31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중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 장종료 기준 순위험증거금은 상품군별 순위험증거금의 합계로 함
- 상품군 순위험증거금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에 대한 옵션가격증거금,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 선물스프레드증거금 및 인수도 증거금의 합계와 최소(순위험)증거금중 큰 금액으로 함

- 옵션가격증거금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의 합계 -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위탁증거금기준가격 × 거래승수)의 합계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 : 기초자산의 가격이 위탁증거금률만큼 변동할 경우에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의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중 적은 수량에 계약당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 인수도증거금 :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인수도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
- 최소(순위험)증거금
 -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액
 - * 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수량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액
 - * 옵션거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액
 - * 옵션거래의 인수도결제수량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액
 -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의 최소액 : 5만원(스타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1만원)
 -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의 최소액 : 1만원(3년국채선물옵션거래의 경우에는 5만원)

— 상품군의 구분 및 상품군별 가격상관율

상품군	기초자산	가격상관율
주가지수상품군	코스피200, 스타지수	50%
기초주권상품군	개별주식(업종별 구분)	10~30%
국채상품군	3·5년국고채권표준물	80%
금리상품군	통안증권, CD	40%
통화상품군	미국달러·엔·유로	30%

○ (상품군) 선물·옵션 가격변동 위탁증거금액

(32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상품군의 가격변동증거금은 동일 기초자산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구간수치별 증거금(이익구간은 가격상관율 적용)과 동일 상품군내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구간수치별 증거금(이익구간은 가격상관율 적용)의 합계중 최대액으로 함

- 동일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한 구간수별 증거금
 -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 구간수치와 (전일)현물증가의 차
 - *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 : (동일 구간수치) 구간수치별 이론가격과 (전일)옵션증가의 차
- 최고 구간수치에서의 콜매도 미결제약정과 최저 구간수치에서의 풋매도 미결제약정 : 최대이론가격과 조정이론가격(SOA)중 높은 가격 적용

○ 인수도 위탁증거금액 (33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상품군의 인수도결제수량(선물옵션거래는 제외)에 대한 증거금은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 후부터 인수도결제시한(T+2일 12시 이내)까지 적용

— 인수도 가격증거금

- 선물 인수도결제수량 : 최종결제가격과 (전일)현물종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옵션 인수도결제수량 : 권리행사가가격과 (전일)현물종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인수도 가격변동증거금

- 선물매수, 콜행사, 풋배정 수량 : (전일) 현물종가와 최저 구간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선물매도, 콜배정, 풋행사 수량 : (전일) 현물종가와 최대 구간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 결제불이행 위탁자에 대한 증거금 증액 (34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위탁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으로 할 수 있음

- 순위험증거금 할증 방식 : 상품군 순위험증거금 × 증거금조정률 (100% 이상)
- 총위험증거금 방식 : 다음중 큰 금액
 - * 기초자산 가격 하락시 손실 포지션(선물 매수, 풋옵션 매도, 인수도결제 선물매수, 인수도결제 콜옵션행사, 인수도결제 풋옵션배정 수량) × 계약당 증거금률(0% 이상)
 - * 기초자산 가격 상승시 손실 포지션(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인수도결제 선물매도, 인수도결제 콜옵션배정, 인수도결제 풋옵션행사 수량) × 계약당 증거금률(0% 이상)

○ 사전 현금위탁증거금액 (35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신규주문 현금위탁증거금액

선물거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 현금 위탁증거금률
옵션거래 매수의 신규주문시	위탁금액 (전액현금)
옵션거래 매도의 신규주문시	0(결제불이행 우려 위탁자의 경우 현금증거금 징수 가능)

- 현금위탁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의 1/3 ~ 위탁증거금률

— (현재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전일 장종료 기준 순위험 현금 위탁증거금액

- 인수도결제수량을 제외한 모든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과 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중 적은 금액에 선물현금비율을 곱한 금액
- 결제불이행 우려 위탁자의 경우 옵션 미결제약정에 대한 현금증거금 징수 가능
- 선물현금비율 : 1/3 ~ 100%

—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전액 현금)

— 장중 수수시한전 순손실금액 (전액 현금)

- 국채선물거래 등에도 현금 위탁증거금을 적용

○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 (2007/5/3 개정, 8/27 시행)

- 신규거래가 있는 사후증거금계좌의 경우 당일의 장종료 기준 순위험 증거금액에 수수일전순손실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함 (36조 1항~3항)

- 당일중 반대거래만 있거나 거래가 없는 사후증거금계좌의 경우에는 추가증거금 발생 여부를 확인 (40조~41조 참조)
- 주식상품거래만 적용되는 사후증거금할인계좌의 경우에는 20% 수준을 할인한 순위험증거금액에 수수일전순손실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36조 3항~4항, 37조)

— 사후 현금증거금을 국채선물거래 등에도 적용 (38조)

- 사후일반계좌 : 당일기준 순위험 현금증거금 + 장종료후 순손실금액(전액 현금)
- 사후할인계좌(주식상품에 한정) : 당일기준 순위험 할인현금 증거금 + 장종료후 순손실금액(전액 현금)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39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예탁총액초과액 또는 예탁현금초과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증거금에 충당 가능 (1항 2호~3호)

- 예탁총액초과액 : 예탁총액에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사전증거금방식(장종료후에는 사후증거금방식)으로 산출된 증거금액(지급시에는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예탁현금초과액 : 예탁현금에 대응증권 매도대금(결제일 2일 전의 대금은 제외)을 더한 금액이 현금증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지급은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을 한도로 지급 가능

- 추가 위탁증거금의 예탁 (40조~41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장종료 후의 예탁총액(예탁현금)에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증거금(유지현금증거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증거금(추가현금증거금) 예탁 (40조 1항, 41조 1항)
 - 유지증거금액 : 당일 장종료 후의 유지증거금률 수준 순위험증거금 + 수수일전 순손실 금액 (40조 2항~5항)
 - * 결제불이행 우려자에 대한 유지증거금액 증액 가능 (40조 6항~7항)
 - 유지현금증거금액 : 0 + 수수일전 순손실 금액 (41조 2항~3항)
 - * 사후증거금계좌는 당일중 반대거래만 있거나 거래가 없는 경우에 추가증거금 적용 (신규거래시에는 사후증거금 예탁)
 - *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전의 자율 반대거래 등에 의한 추가증거금 예탁 간주
 - 기초자산별 유지증거금 구간수치(21개 이상) (41조 3항)
 - 당일 현물종가 (1개)
 - 당일 현물종가 ± (당일 현물종가 × 유지증거금률) (2개)
 - (당일 현물종가 × 유지증거금률 × 10%) 간격 (18개 이상)
 - 유지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 최저율의 2/3 ~ 위탁증거금률 (41조 4항)
 - 계약당 스프레드 유지증거금의 최저금액 (41조 5항)
 - 코스피200선물 : 100만원, 스타지수선물 : 50만원, 기타 선물 : 30만원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43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 결제월종목의 가장 나중의 약정가격으로 함(선물옵션거래에 의한 가격은 배제)

- 최종 약정가격 → 최종 의제약정가격 → 기세 → 전일의 정산가격
(이론정산가격과의 괴리가 거래증거금율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론정산가격)
- * 미국달러선물 원월종목과 엔·유로선물의 종목은 상기 가격과 이론정산가격의 차가 0.3원 이상인 경우 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사용

○ 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시한 (48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권리행사 신고시한은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1시간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15:15~16:15 이내)
 - 통화옵션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 후부터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11:30~16:15 이내)

○ 옵션거래의 자동권리행사기준 (49조 : 2007/5/3 개정, 8/27 시행)

- 현금결제방식인 주식상품옵션의 권리행사신고 의제수치
 -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 0.01P
 - 주식옵션의 경우 : 5원
- 실물인수도방식의 달러옵션과 3년국채선물옵션의 경우는 종래와 같이 회원이 정하는 수치로 함

○ 스프레드주문의 위탁증거금 합리화

(30조 1항 2호 : 2007/8/13 개정, 8/27 시행)

- 위험의 증가가 없는 청산 및 결제월 이전(물오버, 롤백)을 위한 스프레드거래 주문의 경우, 회원의 자율에 따라 스프레드주문증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국채선물 등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 징수유예

(부칙 1항 : 2007/8/13 개정, 8/27 시행)

- 기존에 현금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채·통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2007년 12월까지 현금 위탁증거금의 징수를 유예
 - 제도단일화의 근간 유지, 현금증거금의 미징수 근거규정 부재 등을 고려하여 부칙 개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유예

○ 3년국채선물옵션 및 CD선물의 상장폐지

(24조, 31조, 33조, 40조, 43조, 49조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세칙 개정

○ 옵션증거금 산출방법 개선 (26조 3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옵션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당해 종목의 연 내재변동성 대신 평균 내재변동성 사용

○ 지급·충당금액 산출방법 개선 (39조 1항 : 2007/12/21 개정, 12/26 시행)

- 장종료 후 지급·충당금액 산출시 위탁증거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 유지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산출

20. 시장감시규정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 일원화

(22조 1항 : 2007/10/12 개정, 11/1 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이상의 회원제재권을 이사회에서 시장감시위원회로 이관

- 업무관련규정 위반의 회원제재사유 조항 정비

(21조 2호 : 2007/10/12 개정, 11/1 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제재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업무관련규정 위반”의 회원제재사유 조항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맞춰 정비
 - “시장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2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의 확대 및 구체화 (3조 : 2007/8/27 개정, 9/3 시행)

- 기존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요건을 구체화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급변종목 - 상한가잔량상위종목 - 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가 직전가 대비 ±5% 변동 - 상한가잔량 10만주 이상 & 잔량있는 계좌수 20개 이하 - 단일계좌 순매수·순매도 상장주식수의 2% 이상

— ‘매수관여 과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를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으로 신설함

○ 투자경고종목 등의 대상 유가증권 규정 (3조의2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는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하여 적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추가 (3조의3 : 2007/8/27 개정, 9/3 시행)

— 단기급등 외에 중장기적 주가상승 등의 경우에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최근 20일간 주가 150% 이상 상승 & 주가상승일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인 종목
- 최근 20일간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5회 이상 지정 & 주가 50% 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인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10일 후 자동해제 대신 별도의 해제요건 마련

-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신설 (3조의4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신설 (3조의5 : 2007/8/27 개정, 9/3 시행)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보다 높고 직전일 대비 3일 연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요청
 - 해당 시장은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업무규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적용 예외 (3조의6 : 2007/8/27 개정, 9/3 시행)
 -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시장상황의 급변 등이 있는 경우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의 요청을 하지 않음

- 이의신청 사유의 신설 (22조 2항 3호, 3항 : 2007/8/27 개정, 9/3 시행)
 - 종래 이의신청 각하사유에서 분리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별도로 규정
 - 징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판단누락을 이의신청 사유에 추가하여 피제재자의 구제절차를 강화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개선 (별표 2 1호 나목·다목 : 2007/8/27 개정, 9/3 시행)

- 프로그램매매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시 KOSPI200지수와 스타지수간 거래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스타지수 관련 부과기준을 변경

기 준	개 정
- 위반금액을 100억 이상, 200억~300억, 300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비율 적용	- 스타지수 관련 프로그램매매 보고의무위반의 경우, 15억 이상, 30억~45억, 45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비율 적용

○ 이사회에 대한 결정요구 삭제 (14조 1항 : 2007/10/16 개정, 11/1시행)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의 제명, 회원의 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이사회에 대한 결정요구”를 삭제

기 준	개 정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 요구	- 회원의 제명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요구	- 회원의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6월 이내의 거래정지 요구	- 회원의 6월 이내의 거래정지

IV. 증권업협회 규정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고수익간접투자기구” 용어의 정의 삭제

(2조 9항~10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고수익간접투자기구”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자산운용회사 통합청약으로 제도를 개선

○ 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2조 9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포함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의 면제범위의 확대

(3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면제대상에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포함
 - 기존에는 외국증권거래소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인정했었음

○ 인수회사의 제한적 수요예측 참여 허용 (5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회사가 주식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 주식 주관회사 자격 제한의 완화 (6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가 될 수 없음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1% → 5%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기존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자격 제한

○ 지분을 산정시 PEF를 통한 간접투자분 합산

(6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시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분을 합산

○ 증권회사 보유지분 등의 처분 제한 신설 (6조 3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 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예탁받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

○ 대량지분 보유법인에 대한 주관업무 수행시 공동주관의 의무화 신설 (6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주관
 - 다른 증권회사 : 당해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증권회사

○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자금 대출금지 신설 (8조 6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당해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용자를 할 수 없음

○ 풋백옵션의 폐지 (11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도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 규정을 삭제

○ 무보증사채 인수주관회사 자격 제한의 완화

(14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
 - 기존에는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

○ 주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의 의무화 신설

(15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

○ 인수업무조서 작성 및 보관의 의무화

(15조 3항~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관련 사항
-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조서와 관련 자료를 상당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을 이관

- 당해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상
- 기존에는 동 규칙 18조에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었음

○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사항의 협회 통보 의무화

(17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

- 공시항목은 동 서식으로 이관

- 협회의 인수실적 공시의 의무화 (17조 2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실적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기존에는 게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 불성실 수요예측 대상범위의 확대 (17조 3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에 대해서도 협회에 통보
 - 기존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일부만 청약한 자의 경우로 제한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17조 4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당해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없음
 - 기존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 등을 제한할 수 있었음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신용거래설명서의 변경 (별표5 : 2007/1/26 개정, 2/1 시행)
 - 신용거래설명서 중 신용거래 대상종목 및 추가담보 요구방법 관련 부문을 개정된 증권업 감독규정(5-8조) 및 동 시행세칙(5-1조)과 일치하도록 변경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의 범위 확대 (5-3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여성의 세금우대생계형저축의 가입연령을 인하
 - 만60세 이상 → 만55세 이상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
 - 만 20세 이상인 자
 -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복지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기존에는 만 2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 저축자별 저축한도 조정 (5-5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저축자별 저축한도를 조정

- 만 20세 이상인 자 : 2,000만원 이하
- 5-3조 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6,000만원 이하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감경 (3-6조 : 2007/7/25 개정 · 시행)

— 영업보고서 제출의무를 감경하는 「증권업 감독규정」의 개정내용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

-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감독규정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4호 : 2007/7/25 개정 · 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변경된 재무제표 항목을 영업보고서 서식에 반영

—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에 동일하게 기재되는 항목 중 보고서간 작성기준이나 서식이 다른 항목을 통일

○ 신탁 경영공시의 분리 (3-5조의2 : 2007/7/25 개정 · 시행)

— 영업보고서에서 '신탁 경영공시' 사항을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분리하여 공시

- 사업보고서에는 고유부분에 대해서만 항목을 정하고 있어 영업보고서와 공시내용에 통일성이 없고,
- 신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12개사)의 대부분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임에 따라 신탁관련 공시항목을 영업보고서에 포함시킬 경우 개정된 증권업 감독규정과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신용거래약관의 변경 (별표5 : 2007/1/26 개정, 2/1 시행)

— 신용거래약관 중 신용거래 계좌설정정보증금 용도제한 폐지,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신용거래 상황시한 자율화 및 신용거래계좌에서의 연속재매매 허용 조항을 증권업 감독규정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 세금우대증권저축 가입자의 범위 확대

(별표4 3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여성의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의 가입연령을 인하

- 만60세 이상 → 만55세 이상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

- 만 20세 이상인 자
 -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복지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기존에는 만 2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 저축자별 저축한도 조정 (별표4 4조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세금융대종합저축의 저축자별 저축한도를 조정

- 만 20세 이상인 자 : 2,000만원 이하
- 5-3조 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6,000만원 이하

○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명시 (34조 1항, 40조 1항 : 2007/6/18 개정, 6/19 시행)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2조의2 시행 후부터 2008/12/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함

-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내용 반영 (별표 8 : 2007/8/29 개정, 8/30 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의 대고객 RP거래의 정의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서 ‘환매조건부매매’로 변경됨에 따라,
 -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관」을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으로 변경

- 수정약관의 보고기한 연장 (3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표준약관 수정사용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 보고의무를 시행일 즉시 보고로 완화

- 고객통지 사항 확대 (별표5 12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는 항목에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추가

- 조건부매매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명시 (별표7 3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조건부매매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요건을 지정

- 조건부매매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록법인의 모집·매출된 사채권과 보증사채권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의 모집·매출된 채권
 - ABS, MBS 등으로서 모집·매출된 증권
- 신용등급요건 (국채 등은 제외)
 - Moody's의 Baa3 이상, S&P의 BBB- 이상, 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BBB 이상) 판정을 받은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보증한 채권

○ 개방형거래의 환매가격 명시 (별표7 6조 2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의 산정방식을 마련

-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 × {1+경과일수/365×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이율}

○ 조건부매매시 매매이율의 고객고지 의무화 (별표7 7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또는 변경전)에 고지하여야 함

○ 조건부 매매거래의 성립내용 통지 의무화

(별표7 8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 통지방법은 사전에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
-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으로 통지

○ 보관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유지 의무화

(별표7 9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의 조건부 매도 유가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시장가액이 105% 미달시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시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음

○ 매도유가증권 종목의 대체시 고객사전동의 의무화

(별표7 10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보관·관리중인 매도유가증권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대체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고객의 환매청구권 명시 (별표7 11조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일정한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환매수 또는 증권회사가 보관·관리중인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

4.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 호가집중 도입 등에 따른 위임근거 명시 (1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증권업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 공시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
 - 위임근거 규정 : 장외거래정보의 공시등(5-31조), 현황보고등(5-40조), 세부사항(5-55조)

- 호가정보 등의 보고 (3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 호가정보에 대한 증권업협회에로의 거래내역 집중근거를 명시
 -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 증권회사 이외의 겸영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보고로 같음
 - 증권업협회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 보고방법 및 시간 변경 가능
 - 호가정보 등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증권업협회에 위임

- 호가정보 등의 공시 (4조 : 2007/12/4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등의 공시방법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권업협회의 호가정보 조회권을 신설
- 호가정보 등 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증권업협회에 위임

○ 거래정보 공시범위 확대 등 사후 투명성 공시 강화

(5조 : 2007/12/4 개정 · 시행)

- 15분 Rule 공시 대상기관에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를 추가
- 실거래내역 공시 강화를 위해 보고 유예규정을 삭제

5.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호가정보 등의 보고 (2조 : 2007/12/4 개정 · 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신고근거를 마련
 - 회사별 채권중개팀이 다수인 경우 팀별 신고
- 호가집중제도가 시장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회 구성

○ 호가정보 보고사항 명시 (3조 : 2007/12/4 개정 · 시행)

- 증권회사등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가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호가정보 및 이에 따른 매매 · 중개거래내역을 명시

- 제출회사명 및 보고자 고유 식별부호, 호가 제시시간 등
- 호가정보 보고대상 채권 범위 명시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기관투자자결제에의 결제대상에 주식예탁증서 추가
(23조의5 1호 : 2007/6/18 개정·시행)
 - 기관투자자결제에의 결제대상에 주식예탁증서를 추가

- 주식예탁증서의 의결권행사절차 정비 (44조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행사를 신청
 - 의결권행사를 신청받은 예탁원은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신청

- 주식예탁증서의 해지절차 정비 (46조 1항 : 2007/6/18 개정·시행)
 - 원주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해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예탁원이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도록 함
 - 해지신청이 접수된 주식예탁증서의 유통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주식예탁증서의 거래안정성을 강화

○ 외국통화 표시 유가증권에 대한 액면금액 산정기준 마련

(별표 1 : 2007/7/20 개정 · 시행)

— 예탁수수료의 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 표시 채권에 한하여 마련한 액면금액 산정기준을 주식 등으로 확대

- 액면금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직전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펀드결제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

(별표 4 : 2007/7/20 개정 · 시행)

—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자산 매일의 원본액의 연 0.0625/10,000을 펀드결제수수료로 징수

— 징수대상은 수탁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일임고객 ·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중 예탁원에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고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 근거 마련

(12조의3 : 2007/2/13 개정 ·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등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로부터 고객 인수채권의 예탁청구 통지업무를 위임받아 예탁자에게 예탁을 청구

— 증권회사(예탁자)는 동 통지내역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계좌부에 채권을 예탁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

○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 기한 명시

(43조의2 : 2007/6/21 개정, 6/2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당해 주식예탁증서 청약 마감일의 오후 4시까지” 예탁원에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

○ 주식예탁증서의 해지청구 기한 명시 (43조의3 : 2007/6/21 개정, 6/2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해지하고 해외에서 원주식을 반환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원 소정의 주식예탁증서 해지신청서에 의하여 “해지신청일 오후 4시까지” 예탁원에 신청

○ 채권자 신청에 의한 등록기관으로부터의 예탁처리 근거 마련

(12조의2 3항 : 2007/11/19 개정, 12/1 시행)

—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원이 유가증권을 예탁자의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 당해 예탁자(채권자)가 예탁 청구한 것으로 봄

3.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주식예탁증서 보호예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20조 1항 2호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로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1증서당 0.01원을 징수

- 외국통화 표시 유가증권에 대한 액면금액 산정기준 마련

(20조 1항 : 2007/7/20 개정·시행)

-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직전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예수수료를 징수

4.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탁계약 근거 마련 등

(16조 2항 3호, 3항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외국법인을 위탁회사로 하는 수탁계약 체결시 대행업무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계약시 수탁대상법인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2조 3호, 7호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유가증권의 종류에 외국증권을 추가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동조 7호의 “외국채권”을 “외국증권”으로 변경하고, “외국증권”은 증권거래법 2조 1항 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정의

- 외국법인 용어정의 신설 (2조 8호 : 2007/8/22 개정, 8/23 시행)
 - “외국법인”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증권의 발행인으로 정의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시 발행원인 증빙서류의 명시
(16조 5호 : 2007/7/4 개정 · 시행)
 - 유가증권의 신규발행사유 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시 증권예탁결제원이 위탁회사에 징구하는 발행원인 증빙서류를 명시

- 외국법인의 발행원인 증빙서류 명시 (16조 3호 : 2007/8/23 개정 · 시행)
 - 외국법인의 경우 발행원인 증빙서류로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에 준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6.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주식예탁증서 추가
(3조 6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주식예탁증서를 추가

- 주식예탁증서의 대차거래기간 (4조 1항 5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대차거래기간을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정함

- 주식예탁증서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
(15조 1항 5호 : 2007/6/18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증서”로 정함

- 대차증권 익일인도 거래제 도입 (21조 1항 : 2007/11/22 개정, 2008/1/1 시행)
 - 대차증권을 대차거래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 대차증권의 인도시한은 인도일의 16시까지로 함

7.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1조의2 : 2007/6/25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 (8조의2 : 2007/6/25 개정, 7/2 시행)
 - 호가단위는 “0.1%”로 함

- 담보대상 범위의 확대 (별표1 : 2007/6/25 개정, 7/2 시행)
 - “주식예탁증서”를 담보대상에 추가

8.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명시 (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 업무 : 09:00~16:00
 - 그 밖의 예탁기관업무 : 09:00~17:00

- 실질소유자 등에 대한 예탁계약의 구속시기
(5조 4항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의 소유자 및 실질소유자는 당해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 해당 예탁계약의 내용에 구속

○ 주식예탁증서 발행신고서의 제출의무 폐지

(기존 11조 삭제 : 2007/6/18 개정·시행)

—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에의 발행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의 제한 (1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해지를 제한할 수 있음

○ 불행사에 따른 신주인수권 처리방법 (22조 2항 : 2007/6/18 개정·시행)

— 행사기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탁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 마련 (23조의2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기관업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23조의3 : 2007/6/18 개정·시행)
 - 예탁원은 예탁기관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제비용을 발행회사 또는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정의 추가 (2조 3항 : 2007/6/18 개정·시행)
 - 실질소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 근거 마련
(8조 : 2007/2/13 개정·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등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로부터 고객 인수채권의 예탁청구 통지업무를 위임받아 예탁자에게 예탁을 청구
 - 증권회사(예탁자)는 동 통지내역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계좌부에 채권을 예탁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별표 : 2007/2/13 개정·시행)
 - 채권등록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용실적에 따라 “예탁자에의 예탁청구 대행” 수수료를 징수

○ 변동금리부채권의 적용금리 결정방법 및 통지시점의 명확화

(별지 : 2007/2/13 개정 · 시행)

- 일괄예탁되는 변동금리부 채권인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원리금 확정
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금리가 확정되도록 발행조건을 정함
- 발행자는 변동금리가 확정되는 이를 즉시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함
 -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제한이 원리금지급일(D) 2영업일전부터이고,
원리금 청구가 교환청구(D-1) 방식이므로 채권금리는 사전에 확정
되어야 함

○ 신청에 의한 채권자의 지정계좌 예탁처리 근거 마련

(11조의2 : 2007/11/19 개정, 12/1 시행)

- 채권자가 이전등록 또는 질(담보)권 말소 등의 사유로 채권등록부에
등록을 청구한 경우 예탁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당해 채권을
예탁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채권자에게 등록필증 및 본인 계좌가 표시된 증표 또는 서
면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

10.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 담보콜거래의 거래기간 중 중도상환제도 신설

(11조의2 1항~3항 : 2007/11/22 개정, 12/1 시행)

- 담보콜거래의 거래기간 중 상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를 중도상환으로 정의하고, 중도상환결제를 위한 방법 및 효력을 명시
 - 결제자료 확정 후 납부가 완료된 중도상환할 금액과 담보를 동시결제의 방법으로 결제
 - 상환금액의 일부를 중도상환 결제한 경우는 기존의 담보콜거래는 소멸하고, 새로운 담보콜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담보콜거래의 결제근거 신설

(11조의2 4항~5항 : 2007/11/22 개정, 12/1 시행)

- 거래금액·이자와 담보를 동시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중도상환결제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

11.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 중도상환자료의 통지시한 및 기재사항 명시

(7조의2 1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참가자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중개회사는 해당 담보콜거래, 중도상환일, 중도상환할 금액 등을 기재한 중도상환자료를 중도상환일 오후 2시까지 예탁원에 통지

○ 수탁기관 변경시 변경자료의 통지시한 및 기재사항 명시

(7조의2 2항 : 2007/11/29 개정, 12/1 시행)

- 참가자가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중개회사는 해당 담보콜거래, 수탁기관 변경일, 새로운 수탁기관내역 등을 기재한 자료를 변경일 오후 2시까지 예탁원에 통지

1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업무의 구분 명확화

(2조 1항 1호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를 “조건부매매결제등”으로 새롭게 용어정의하고,
 - “조건부매매결제등”을 “기관간 조건부 매매결제” 및 “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로 명확히 구분
 - 규정의 명칭 및 용어를 변경

기 존	개 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업무 규정	환매조건부매매결제등에 관한 규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조건부매매
환매채권예탁계좌 환매채권예탁자계좌부	환매예탁계좌 환매예탁자계좌부
매입채권, 매도채권	매입증권, 매도증권

○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확대

(3조 1~2항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기관간 RP의 거래대상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등 채권 ▪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 기업어음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대고객RP의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업무 대상 유가증권을 감독규정상의 매매대상과 일치시킴

기 존	개 정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공모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시가평가가 가능한 증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상장법인·등록법인이 공모한 사채권 / 보증사채권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공모한 채권 ▪ 공모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회사채 BBB) 이상으로 제한

- 매도증권 대체 이후 매도증권의 적정담보 유지비율 인상
(20조의2 1항 : 2007/10/30 개정, 12/1 시행)
 - 매도채권 대체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5-37조의3~4)

1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중개회사수수료 폐지 (19조 및 별표 : 2007/10/2 개정 · 시행)
 - 수수료에서 중개회사수수료를 삭제하고,
 - 수수료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결제수수료”, “대고객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관리수수료”로 구분
-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 규정 삭제
(3조 : 2007/11/09 개정, 12/1 시행)
 - 대고객 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이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매도증권 적정담보 유지비율의 상향 조정
(18조 : 2007/11/09 개정, 12/1 시행)
 - 100% → 105%

- 매도증권의 일일정산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와 환매가의 105%를 비교하여 부족분 및 초과액을 산정

○ 시행세칙 명칭 및 관련 용어 변경 (2007/11/09 개정, 12/1 시행)

기 존	개 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업무 규정	환매조건부매매결제등에 관한 규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조건부매매 또는 기관간조건부매매
환매채권예탁계좌	환매예탁계좌
매입채권, 매도채권	매입증권, 매도증권